발간등록번호
11-1290000-000501-01

국방부
연구용역보고서

국방협력과 국익증진 지원을 위한 파병의 법적 타당성 연구

2013. 6. 11.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 출 문

국방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국방협력과 국익증진 지원을 위한 파병의 법적 타당성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 6. 11.

한국법제연구원

원 장 대 행 전 재 경

<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 :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소병천(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 약 문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교류협력 해외파견의 법률적 근거 부재
- UN PKO 파견을 제외하고 헌법상 일반원칙 이외에는 국군을 해외에 파견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제약으로 작용

○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요청의 증대
- 최근의 국제적 분쟁의 다원화 경향은 물론 국제적 역할에 따른 요청 등으로 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군의 해외파견을 위한 기준과 원칙 필요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여 무분별한 해외파병 금지와 제도화 기반구축 필요

○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파견부대는 물론 참여요원에 대한 법적 지위의 확립과 안전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입법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PKO 파견과 별도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위한 법제 기반 구축이 필요

□ 해외파견활동의 현황

○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 현황
- 총 15개국 1,157명(13년04월01일 현재)
  · UN PKO : 2개 부대, 8개 개인(총 630명)
  · 다국적군 평화활동 : 2개 부대, 4개 개인(총 378명)
  · 국방협력 : 1개 부대(총 150명)

<평화유지활동지역(부대파견)>

□ 해외파병 관련 헌법적 논의

○ 파병의 헌법적 근거

- 헌법 제5조
  - · 자기 방위를 위한 전쟁이나 무력행사가 아닌 한 침략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무력행사는 금지
  - ·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전쟁 또는 무력행사를 위한 파병은 합헌
- 헌법 제60조제2항
  - ·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는 필수적 국회 동의사항
  - ·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면서 필수적 절차

※ 해외파병활동을 위한 국군의 파견은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서는 합헌적 활동임

□ 현행 UN PKO 법의 한계

○ UN PKO 활동이라는 제한적 범위만을 인정

-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군의 해외파병활동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파견절차 중심의 입법 규율에 따른 파견의 기준과 원칙 등의 부재

- 포괄적 기본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국군 파견에 대한 정당성과 한계 등을 규율하는 내용적 측면의 입법적 규율의 보완이 필요

○ 파견 주체의 불명확한 규율

- 파견의 주체를 정부라는 포괄적 주체로 규정하여 파견에 따른 명확한 책임과 관할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관할권의 명확화 및 일원화를 통한 입법 체계성의 확보가 필요

□ 해외파병활동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국제법적 검토

- UN 헌장상 무력사용이 가능한 경우 : PKO, UN 헌장상의 자위권, 강제조치, 구 적국조치
- 국제관습법상 무력사용이 가능한 경우 : 국제관습법상 자위권, 인도적 개입을 위한 무력조치, 자국민 또는 해외 자국공관 보호,
- 국제평화활동(PO, Peace Operation)
  - · UN 회원국 2/3에 해당하는 120여개국 국가가 참여
  - · 우리나라도 1991년 이후 33곳의 분쟁지역에 파견하여 활동

○ 미 국

- 미 연방헌법 제1조제8항 : 의회의 전쟁선포권(2차 대전이후 미발효)
- 1973년 전쟁권한결의 : 의회 동의 없는 파병 통제법
  - · 파병시 48시간 이내 통보, 60일 초과시 전쟁선포 또는 의회 허가
-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25(PDD-25, 1994)
  - · PKO 등을 포함한 해외 군사활동에 관한 파병원칙

· 엄격기준 제시

· 파병에 따른 이익형량, 필요성, 여론과 의회동의, 지휘권 등의 문제 검토

○ 일 본

- 일본 평화헌법 제9조와 해외파병 금지(군사소극주의)

· 1980년대 이후 군사대국화 정책과 해외파병 지원으로 전환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PKO법, 1992)

· 배경 :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 구성 : 전문, 5장, 27개조

· 내용 : 파병 5대원칙, 국회 승인과 연장승인, 실시계획 수립 등

- 주변사태법(1999년) : 일본국 주변의 긴급사태시 파병기준과 절차

- 테러특별조치법(2001년) : 대테러 지원활동 근거법

- 이라크 부흥을 위한 특별조치법(2003년) : 인도적 지원과 안전확보지원활동

○ 독 일

- 독일기본법 : 침략전쟁 부인, 무기거래 허가제, 파병에 의회승인

- 공동안보를 위한 무장병력은 해외파병은 합헌(연방헌법재판소 1994년 판결), 단 의회의 승인을 요구

- 독일의 해외파병은 국제원조, 재해상황 지원, 평화유지의 경우

○ 프랑스

- 프랑스 헌법 : 전쟁선포는 사전 의회승인, 해외파견결정은 행정부의 권한, 파병 후 3일 이내에 통지-4개월 초과시 연장 승인

- 군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

□ UAE 파병에 관한 비교연구

○ 파병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독일, 스웨덴(총 10개국)

- 우리나라 : 현재 150명 파견

○ 파병 형식

- 국회 동의 후 파견 : 우리나라, 독일

- 행정협정을 통한 파견 : 미국, 프랑스 등

- 행정부 단독 결정 파견 :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 현재 파견된 국군의 파병연장 요청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차원에서 계속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 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헌법적 논의

○ 군사활동

<table>
<tr><td colspan="5">군사활동</td><td colspan="2">非군사활동</td></tr>
<tr><td colspan="2">전 쟁</td><td colspan="3">전쟁이외의 군사활동</td><td colspan="2" rowspan="2">무관 · 군사전문가 · 교육파견, 연합훈련, 외국군 훈련참관, 교육훈련, 재난구조 등</td></tr>
<tr><td>침략 전쟁</td><td>자위 전쟁</td><td>진압 작전</td><td>평화유지 작전</td><td>민사 작전</td></tr>
<tr><td rowspan="2">위헌 여부</td><td>합헌</td><td colspan="3">합헌(국제평화에 기여)</td><td colspan="2">합헌</td></tr>
<tr><td colspan="4">국회동의 필수</td><td>국회동의 필요활동</td><td>국회동의 불필요활동</td></tr>
</table>

○ 군의 해외파견의 형식의 다양화와 국가안전보장 개념의 다변화

○ 헌법 일반이론

- 헌법 제5조 : 침략전쟁 부인, 국제평화기여, 국가안보와 국토방위

- 헌법 제60조제2항 :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국회 동의

⇒ 국회의 동의는 국군의 해외파견의 헌법적 근거로 작용

- 헌재에서의 본안 판결은 없었지만, 사법소극주의의 태도를 취함

○ UAE 파견과 헌법적 논의

- 이 파견은 국제평화에의 기여와 국가안전보장 활동이며, 국방교류협력 활동임(헌법 제5조에 부합하는 파견활동)

- 국회의 동의는 파견에 관한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헌법 제60조제2항의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하는 파견활동)

○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설문조사

- 조사개요

모집단	· 공법학관련 교수 및 전문가
표본구성	· 교수 및 전문가 76명
조사방법	·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
조사기간	· 2013년 5월 28일 ~ 6월 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응답률	· 15.2%(전체 메일 발송 기준-500명 대비) · 71.0%(설문 접속자 기준-107명 대비)

- 조사내용

구 분	세 부 항 목
국군의 해외파견 관련 법률에 대한 인지	· 국군의 해외파견 형태에 대한 인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인지
UN PKO 이외의 국군의 해외파견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관한 절차 규정 법률의 필요성 여부
다양한 파견활동의 절차 등에 관한 의견	· 다국적군 파견활동에 관한 절차 ·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관한 절차 · 해외거주 자국민 보호를 위한 파견활동의 절차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필요성	· 국회의 동의 절차를 포함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의 필요성

- 조사결과분석

· 국군의 해외파견 형태에 관계없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견하는 경우 다국적군 파견활동에 대해서는 94.7%,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대해서는 77.6%(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 17.1%), 자국민 보호를 위한 파견활동에 대해서는 60.5%(일시적이고 긴급한 경우에 가능 34.2%)로 응답

·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음

·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응답 전문가 81.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국회의 동의절차를 포함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89.5%가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 결 론

- 개별적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의 목적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규율하는 입법을 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부합하는 활동임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위한 법률의 제정방안을 검토

□ 법률제정의 방향

○ 소폭 개정방안, 통합입법방안, 분리입법 방안

- 소폭 개정방안 : 현행 PKO법의 정의 규정 개정을 통한 확대방안

- 통합입법방안 : PKO를 포괄하는 해외파견활동법을 제정하는 방안

- 분리입법방안 : PKO를 제외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 입법형식면에서는 통합입법이 적절, 현실적인 입법환경은 분리입법이 적절 : 분리입법은 원칙입법안으로 하고 통합입법안을 함께 제시

□ 분리 입법방안의 주요 내용

○ 법률명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해외파견활동의 범위

- 다국적군 파견활동

-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국방교류협력파견활동)

○ 법률의 구성
- 기본원칙 · 절차 · 지원 · 정책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

□ 목 적

○ 국군의 해외 파견 및 철수에 관한 사항

○ 국군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기 여
-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 국가의 안전보장
- 국방교류협력

□ 정 의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따른 입법적 개념의 명확화

○ '해외파견활동' :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파견활동'
- 통합법의 경우에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포함

○ '개별 파견요원', '재해' 등에 관하여 정의
- 통합법은 '파견부대' 등에 관한 추가적 사항을 정의

□ 기본원칙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이에 대한 행동요령 등을 법제화함

○ 침략적 전쟁의 부인, 국제법 준수의 원칙, 국가안전보장 의무준수, 국회동의의 원칙 등 헌법원칙의 천명

○ 정부의 의무 : 협력과 활동을 위한 제도정비, 법적 지위보장에 관한 제반조치 등의 의무부과

- 통합법은 투명성 · 공개성, 협약준수 등 다양한 일반원칙을 입법안에 반영하도록 함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분리입법은 UN PKO 법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과 법적 지위 전환에 따른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율

□ 해외파견활동을 위한 절차

○ 해외파견활동 참여결정→국회동의→국군부대의 파견→연장→종료(종료요구)→국회 보고(현행 UN PKO 법 절차 규정 참조)
- 상비부대 설치 · 운영은 통합법에 규정

○ 이 절차에 따라 국군을 해외에 파견

□ 불이익 처분의 금지

○ 참여군인과 참여하였던 군인에 대한 불이익 처분금지에 관한 사항
- 통합법은 법적 지위와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교육 및 훈련

○ 파견부대와 개인 파견요원의 교육과 훈련 실시(국방부장관)
- 통합법은 교육과 훈련을 포함한 협력체계와 지원활동을 규정

□ 수당 등의 지급

○ 파견지역에 맞는 수당 지급(별도의 지급기준 제시)
- 통합법은 근무환경과 복지의 측면에서 관련 규정을 둠

□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 종합대책과 재해방지대책 마련에 관한 규정

- 통합법은 활동에 관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정책협의회와 실무추진단의 설치

○ 국군의 해외파병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 산하에 정책협의회를 설치

○ 정책협의회 아래에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실무적인 효율성을 갖춤

- 통합법은 조직에 관한 동일 규정을 둠

- 통합법은 별도로 포괄적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목 차

요 약 문 ····· i

제 1 장 서 론 ····· 21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1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2

제 2 장 해외파견활동의 현황과 법제화 논의 ····· 25

Ⅰ. 해외파견활동의 현황 ····· 25

1. 현 황 ····· 25

2.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분석 ····· 28

Ⅱ. 법제화 논의 ····· 30

제 3 장 해외파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33

Ⅰ. 서 론 ····· 33

Ⅱ. 국제법적 검토 ····· 35

1. 국제법적 검토 필요성 및 대상 ····· 35

2. UN 헌장상 해외파병 등 무력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37

3. 국제관습법상 해외파병 등 무력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 41

Ⅲ. 미 국 ····· 46

1. 전쟁권한결의 ····· 46

2. 전쟁권한결의 관련 헌법적 쟁점 ····· 48

3.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s 25 ····· 49

Ⅳ. 일 본 ····· 50

1. 해외파병 관련 논의의 배경 및 법제화 연혁 ····· 50
2.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연혁 ····· 55
3. 해외파병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 56
4. 일본 PKO법, 주변사태법,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이라크 지원법 비교 ··· 65

Ⅴ. 독 일 ····· 66
1. 해외 파병 관련 실정법 ····· 66
2. 1994년 독일헌법재판소의 해외파병 합헌 판결 ····· 68
3. 독일의 파병현황 ····· 69

Ⅵ. 프랑스 ····· 71
1. 헌법적 근거 ····· 71
2. 프랑스 군의 아랍에미레이트 파병에 관한 사항 ····· 72

Ⅶ. UAE 파병에 관한 비교연구 ····· 73
1. 해외 주요국 UAE 파병의 근거 ····· 73
2. UAE 파견 연장에 관한 국회 동의여부에 관한 논의 ····· 75

제 4 장 입법안에 대한 검토 ····· 81
Ⅰ. 헌법적 논의 ····· 81
1. 논의의 출발점 ····· 81
2. 해외파견을 위한 헌법적 논의 ····· 87
3. UAE 해외파견과 헌법적 논의 ····· 90
4. 소 결 ····· 96

Ⅱ.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설문조사 ····· 96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96
2. 조사의 개요 ····· 97
3. 조사 결과 분석 ····· 99
4. 요약 및 결론 ····· 107

Ⅲ. 입법방향 ····· 108
1. 해외파견활동의 법적 근거 ····· 108
2. 입법방안별 주요 방향 ····· 109
3. 분리입법방안의 주요 내용 ····· 110

Ⅳ. 제정안에 대한 검토 ····· 112
1. 목 적 ····· 112
2. 정 의 ····· 116
3. 기본원칙 ····· 122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26
5. 해외파견활동 참여의 결정 ····· 129
6. 국회의 동의 ····· 132
7. 국군부대의 파견 ····· 136
8. 파견기간 등 ····· 138
9. 파견의 종료 ····· 140
10. 파견의 종료요구 ····· 142
11. 국회 보고 ····· 144
12.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보장 ····· 147
13. 교육 및 훈련 ····· 149
14. 수당 등의 지급 ····· 152
15.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 154
16. 정책협의회 ····· 157
17. 파견업무의 지원 및 관리 ····· 159
18. 부 칙 ····· 161

[부록 1 : 분리법률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63

[부록 2 : 통합법률안]

「국군등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169

[부록 3 : 일본 파병 관련 법률]

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2002년 6월 18일 법률 제79호) ····· 177

Ⅱ. 주변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1999년) ····· 198

Ⅲ.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 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유엔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외국 국가들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및 관련된 유엔의 결의 등에 기초한 인도적 조치에 관한 특별법 ····· 205

Ⅳ. 이라크에서의 인도적 부흥지원활동 및 안전확보지원 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 ····· 214

[부록 4 : 독일의 해외파병 의회절차법]

해외파병에 관한 결정시 의회의 관여사항에 관한 법률 ····· 225

[부록 5 : 설문조사]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설문조사 ····· 229

제 1 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오늘날의 국제환경은 국경·인종·영토 등 다양한 분쟁으로 안보적 관점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일면에서는 평화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평화적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을 외교적 관점에서 기울이고 있지만, 다른 일면에서는 이러한 분쟁을 군사적 힘에 의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일환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른 집단안보 수행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늘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군사적 분쟁관계의 해결을 위한 평화활동은 물론 재난이나 군사적 교류 및 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파견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평화활동의 일환으로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통한 국제적 평화활동에의 기여를 위한 국내적 대응은 정책적 일관성과 법제도적 보완을 통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유엔 평화유지활동뿐만 아니라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방교류협력·재난대비, 인도적 지원 등과 같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정책적·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에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하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이외의 활동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헌법상의 국회동의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불비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을 파견 당시의 정치적·국제적 상황이라는 주관성을 기초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가의 대외적 주요활동의 하나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제시하여 정책결정의 객관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는 제정입법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동의권

을 행사하는 국회는 물론, 파견활동의 당사자인 군의 당연한 요청이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청이기도 하다. 즉, 군의 해외파견활동은 침략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위헌·위법한 활동이 아니라 국제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당하고 적절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정비의 필요성과 더불어 최근의 국제적 분쟁의 다원화 경향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증대에 따른 적절한 역할요구의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유엔은 물론 각종 안보기구와 개별국가에서 우리 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요청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군의 해외파견활동의 합법성과 합헌성을 담보하는 원칙이자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즉, 요청의 다양성에 대한 판단기준과 원칙의 명확성을 법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해외파견활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파견요청에 대한 거부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파견의 정당성을 일반국민이 판단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외파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현장에서 파견활동을 수행하는 군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법적 지위의 확립과 지원 등 파견활동에 필요한 제반 법제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파견활동 전반에 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보고서는 위에서 살펴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추어 관련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현황과 이러한 활동에 관한 그 동안의 입법적 논의 등을 검토하고, 현재 법제도적으로 부족한 사항이 무엇이며, 이를 보완할 대안을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해외파견활동의 헌법적 논의를 별도로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그 동안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위헌론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헌법이론적으로 검토하여 헌법적합성을 갖춘 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입법적 논의는 현행 입법체계를 검토함은 물론 새로운 입법의 방향성을 함께 검토하여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입법대안을 각 사안별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해외파견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와 해외의 입법적 논의를 병행하여 해외파견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를 검토하고, 각 국가의 입법적 태도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군사적 활동의 기준과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파견의 기준과 원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기초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유럽국가의 입법화 논의와 방향성 및 시사점을 검토하고, 세계 각국의 해외파견에 관한 입법적 태도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셋째, 이러한 현황과 비교법적 연구를 기반으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대안에 대한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행 유엔 PKO법과 관련하여 이를 포함한 새로운 입법을 제정하는 것과 병렬적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목적, 활용방안, 비교법적 접근, 유사 입법례 등을 제시하여 입법해설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국내외 자료의 활용을 통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각종 해외 입법에 관한 자료와 연구성과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계와 군사전문가, 실무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내부 워크샵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제 2 장 해외파견활동의 현황과 법제화 논의

Ⅰ. 해외파견활동의 현황

1. 현 황

2013년 4월 1일 현재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공식적인 국군의 해외파견 현황은 개인파병의 경우를 포함하여 총 15개국 1,157명(부대단위 1,117명, 개인단위 40명)이다. 이 중 UN PKO 관련 파병은 부대단위로 2개 부대(레바논 동명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599명이며, 개인단위는 8개 지역 31명의 규모이다. 현재 부대단위는 6개월 단위로 교대하고 있으며, 개인파병의 경우에는 1년을 주기로 교대하고 있다. 다국적군 평화활동은 2개 부대 368명이며, 개인단위는 4개 지역 10명의 규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협력을 목적으로 1개 부대(UAE 아크부대) 150명이 파병되어 있다.

('13. 4. 1. 현재)

구 분			현재 인원	지 역	최초 파병	교대 주기
UN PKO	부대 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317	티르	'07. 7월	6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282	보르	'13. 3월	
	개인 단위	인·파 정전감시단(UNMOGIP)	7	스리나가	'94. 11월	1년
		라이베리아 임무단(UNMIL)	2	몬로비아	'03. 10월	
		남수단 임무단(UNMISS)	8	주바	'11. 7월	
		수단 다푸르 임무단(UNAMID)	2	다푸르	'09. 6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07. 1월	
		코트디부아르 임무단(UNOCI)	2	아비장	'09. 7월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4	라윤	'09. 7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	2	포루토프랭스	'09. 11월	
	소 계		**630**			

구 분				현재 인원	지 역	최초 파병	교대 주기
다국적군 평화활동	부대 단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307	소말리아해역	'09. 3월	6개월
		아프간 오쉬노부대		61	바그람	'10. 7월	
	개인 단위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3	마나마	'08. 1월	1년
		지부티 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1	지부티	'09. 3월	
		아프간 치안전환사령부 (CSTC-A)	참모장교	2	카불	'09. 9월	6개월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2	플로리다	'01. 11월	1년
			참 모	1			
	소 계			**377**			
국방협력	부대 단위	UAE 아크부대		150	알 아인	'11. 1월	6개월
	소 계			**150**			
총 계				**1,157**			

현대식 군대가 창설된 후 우리나라의 최초 해외 파병은 1964년 9월 본격적으로 월남전에 개입한 미국과 베트남의 공식 요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의료진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 등 전투근무지원 부대로 편성하여 현지로 보낸 것이 시작이었다. 한국 정부는 다시 1965년 1월 2일 1개 공병대대, 1개 경비대대, 1개 수송중대, 1개 해병중대로 구성된 비둘기 부대를 추가로 파병하였다. 대한민국 건국 후 전투부대가 처음으로 파병한 것이다. 1965년 6월 14일 월남 정부는 수상의 명의로 한국 정부에 1개 사단 규모의 전투부대 파병을 공식 요청하였고 한국 정부는 다시 맹호부대를 파병하였다. 전쟁이 장기화 되면

서 65년도에 미국은 한국에 추가 파병을 요청해 왔고 박정희 정부는 야당 등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66년까지 청룡, 맹호, 백마부대 등 3개 사단을 잇달아 파병했다. 73년 종전 때까지 연인원 32만 여명이 참전했으며 참전이 정점에 올랐던 68년에는 한국군이 5만 여명을 파병하여 미군(총 55만 여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해외파병에 투입했다. 또한 파병 부대도 최초 비둘기부대부터 시작하여 주월사가 창설되고 이어 맹호, 백마, 청룡, 십자성, 백구, 은마부대 총 8개부대가 파병되었으며 대부대 작전 1,174회를 포함하여 총 577,476회의 작전을 수행하였다.

월남전 파병 당시 정부의 파병 명분은 '자유세계수호'였다. 월남 등 아시아 의공산화를 막고 한국전쟁 때 미국 등 자유세계에 진 빚을 갚는다는 것이었다. 이후 해외파병은 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걸프전이 터지면서 재개되었다. UN의 결의로 다국적군이 구성되었고, 이를 근거로 사우다아라비아 지역에 154명의 의료지원단을 보내고, 아랍에미레이트 지역에 수송기 5대를 포함한 공군수송단 160명을 각각 전투근무지원부대 성격의 부대를 파병했다. 이후 파병은 UN 결의로 구성된 다국적군이나 UN이 직접 지휘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전투지원이나 전투근무지원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유엔 주도로 이루어진 다국적군과는 별도로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주도로 수행되고 있는 '항구적 자유작전'에 참여하여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하였으며, 이라크 자유작전에 이라크에 파병하여 국제적 군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의 평화유지활동 변화 추세는 냉전체제 종료에 따라 분쟁 횟수가 증가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임무가 증대되었고, 지역적 무력분쟁의 소방관 역할에서 평화유지, 평화조성 및 평화재건 등 복합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평화유지활동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에 더하여 강제성이 있는 제재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하는 것이며, UN 상비체제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지역(부대파견)>

출처 : 2012 국방백서 p.276

<역대정부별 파병현황>

구 분	주요 내용
김영삼 정부 ('93~'98년)	• '93년 소말리아 상록수부대 파견 • '94년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 파견 • '95년 앙골라 공병부대 파견
김대중 정부 ('98~'03년)	• '99년 동티모르 상록수부대 파견 • '01년 아프가니스탄 해성/청마부대 파견 • '02년 아프가니스탄 동의부대 파견
노무현 정부 ('03~'08년)	• '03년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파견 • '03년 이라크 서희/제마부대 파견 • '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견 • '04년 이라크 다이만부대 파견 • '07년 레바논 동명부대 파견 • 유엔 PKO 임무단 참여 : 라이베리아('03년), 부룬디('04년), 수단('05년), 네팔('07년), 수단 다푸르('07년)
이명박 정부 ('08~)	• '09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파견 • '10년 아이티 단비부대 파견 • '10년 아프가니스탄 오쉬노부대 파견 • '10년 해외파병 전담부대 '온누리부대' 창설 • '11년 UAE 아크부대 파견 • 유엔 PKO 임무단 참여 : 코트디부아르('09년), 서부사하라('09년), 아이티('09년), 남수단('11년)

출처 : 2012 국방백서 p.276

2.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분석

베트남전 파병을 제외하면,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부대단위 파견의 형태는 유엔 총회와 안보리 결의안 의결 여부와 지휘통제 형태를 고려하여 유엔 평화

유지군, 유엔 다국적군, 주도국 다국적군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 군의 해외파견활동의 특징은 군위주의 해외파견활동과 공병·의무 및 군감시단 활동 위주의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적인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군인뿐만 아니라 경찰 및 민간요원 등 그 참여인원이 다양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소규모의 경찰만이 평화유지 임부에 참여하거나, 민간인의 참여는 선거감시를 위한 외교부와 선관위 소속의 인원이 참여하는 등 군인을 제외한 경찰·민간인의 참여는 소수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투병과의 부대파병보다는 공병 등 건설과 의료·군감시단 중심의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전투병과의 파견을 역대 정부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외파견활동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정책적 원칙과 확립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적 지위에 맞는 국제적 평화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세계적인 활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감 등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월남전 파병과 같은 군의 파병에 관한 부정적 정서를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역시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파견활동은 국가의 이익추구를 위한 활동이며 매우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인류애적 활동임을 인식시키는 것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익과 평화라는 현실과 명분은 물론 유엔회원국으로서의 국가적 지위에 따른 의무의 일부임도 함께 인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해외파견활동은 단순한 평화와 전쟁이라는 이분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에 따른 국가적 정책활동의 중요한 부분임을 공유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으로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연합이나 다국적군의 요청과 같은 수동적 관점에서의 해외파견활동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사적·외교적 대외정책적 관점에 따른 적극적인 해외파견활동 계획의 마련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구축과 정책적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다양한 해외파견활동으로 파견상비부대인 '국제평화지원단'(온누리부대)가 창설되어 있으며, 유엔 PKO활동에 관하여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파병을 위한 법제적·정책적 기반의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엔 PKO 활동을 제외하고는 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하여 사회적·정치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다국적군 파견활동을 위한 상비부대의 활용에 대한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적·정책적 기반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해외파견활동은 군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군만이 참여하는 파견활동은 아니라는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해외파견활동은 단순한 군사적 안정이나 감독이 필요한 지역도 있지만, 지역재건 등 지역전반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극심한 분쟁지역인 경우에도 교육·의료 등 민간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매우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다양한 지역지원을 위한 활동을 군이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후에는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평화활동이라는 범위에서 벗어나 군의 다양한 지원활동 등이 필요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하여 해외파견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Ⅱ. 법제화 논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의 법제도적 기반구축의 필요성은 90년대 이후 군의 해외파견이 본격화되면서 군사전문가는 물론 외교전문가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주장되었다. 이는 헌법 제60조제2항의 국회 동의규정만을 근거로 절차와 파병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 논쟁이며, 군의 해외파견이라는 효율성과 신속성이 요청되는 정책적 방향의 논의와의 불균형성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이행이라는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국회에 제출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

률”(안)(08년 12월 1일,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 절차법”(안)(09년 4월 8일 송민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의 형식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로 2009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0년 1월 25일 공포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유엔 PKO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과 철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엔 PKO는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군적적 평화활동과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파병활동 등 다양한 해외파견활동의 영역은 제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규정을 제외하고는 결정-동의-파견-연장-종료(종료요구)-보고-교육·훈련 등 일반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에 관한 규정은 국회의 동의절차에 대한 보완적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규정을 제외하면, 파견되는 참여요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즉, 절차와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만을 두고,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과 정당성의 판단기준은 유엔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 PKO에 한정된 사항만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군적군 평화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사항을 법제도적 규율의 바깥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이 법률의 시행으로 유엔 PKO를 제외한 해외파견활동이 중단되거나, 제한적인 요건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법률의 제정의 의의가 있지만, 오히려 국제적 위상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현황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그 인원과 대상 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유형의 해외파견활동의 영역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방향을 법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입

법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 PKO 활동과 마찬가지로 군의 다양한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오히려 입법적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확립함으로써 향후 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정당한 해외파견활동에 관하여는 국가적 지원과 관리를 통한 활동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해외파견활동에 나타난 정책적·제도적 문제점을 입법적으로 보완하여 조직과 예산 등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조문 목차>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2. “파견부대”
3. “참여요원”
4. “재해”
제 3 조 (상비부대의 설치·운영)
제 4 조 (임무수행의 기본원칙)
제 5 조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제 6 조 (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제 7 조 (국군부대의 파견)
제 8 조 (파견기간의 연장)
제 9 조 (파견의 종료)
제10조 (파견의 종료 요구)
제11조 (국회에의 활동보고)
제12조 (교육 및 훈련)
제13조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제15조 (사고예방 및 재해 방지)
제16조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부 칙

제 3 장 해외파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Ⅰ. 서 론

일반 국제법상 모든 국가는 자국민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자국의 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군대를 양성하고 군사력을 사용할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권의 행사는 비록 자위권이라 할지라도 국제관습법 및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 헌장 상 필요성의 원칙 및 비례성의 원칙 등의 제한되는 등, 국제사회는 자위권의 행사를 포함한 무력사용 자체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습법 및 UN 헌장은 모든 국가에게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무력행사를 자제할 소극적인 의무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비인도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군사적・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무 역시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UN회원국은 자국 능력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하여야 한다.

UN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 이하 PKO)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분쟁지역의 평화회복과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서 대표적 국제협력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UN의 회원국이자 평화국가의 원리와 국제평화주의를 헌법상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이상, 응당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PKO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3년 이후 많은 PKO 파견에 동참해 왔으나, 헌법상 국군의 해외파병 시 국회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있어, 전후 평화복구를 위해 신속한 파병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항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로 인해 파병이 지연되는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하였다.

PKO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에 따라 UN이 대한민국에게 파병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파병의 실체적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큰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PKO 이외의 파병의 경우 예컨대 상호방위조

약에 따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한 해외파병, 예방적 및 선제적 자위권, 인도적 개입, 테러행위 및 해외 주재 자국민 보호를 위한 파병 등은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PKO법은 UN의 요청에 따라 외교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전담하여 국내절차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주무부서가 외교부인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있으나, 그 외의 경우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하에 국방부가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므로 제정되어야 할 법안 역시 그 주무부서는 국방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PKO 외의 해외 파병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상정하여 국제법적 연구를 통해 파견 요소 및 그 실체적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그리고 미국, 독일 일본 등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국내법상 절차적 요건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

<정치체제의 유형과 해외파견 결정[1]>

의회동의 여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필 요	스페인, 독일, 터키,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불필요	방글라데시, 인도, 요르단, 뉴질랜드, 네팔, 네델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태국	세네갈,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국, 콜롬비아

<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주요국의 의회감독권의 범위[2]>

국 가	파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	수행 임무동의권	군사력 운용 동의권	파병기간 결정권
벨기에	X	X	X	X
캐나다	X	X	X	X
체 코	O	O	X	O
덴마크	O	O	O	O
프랑스	X	X	X	X

1) 민병원 외, 해외파병관련 법・제도의 국제비교, 국회입법조사처, 2008, 64면 표 3-7)에서 인용
2) 고성윤, 국제평화유지활동의 미래구상, 한국국방연구원, 2009., 58면 표-6)에서 인용

국 가	파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	수행 임무동의권	군사력 운용 동의권	파병기간 결정권
독 일	O	O	O	O
헝가리	O	-	-	-
이태리	O	-	-	-
네덜란드	O	O	O	O
노르웨이	O	X	X	X
폴란드	X	X	X	X
포르투갈	X	X	X	X
스페인	X	X	X	X
스웨덴	O	O	X	X
영 국	X	O	X	O
미 국	X	X	X	X

X : 의회의 권한 없음, O : 의회의 권한 있음, - : 확인불가

Ⅱ. 국제법적 검토

1. 국제법적 검토 필요성 및 대상

해외평화활동을 위한 대한민국 군대 또는 군 관련 인력 해외 파견 문제 검토를 위해서는 헌법 등 국내법상의 실체적·절차적 근거법 검토 외에 국제법적 검토가 요망된다. 원칙적으로 국제법상 자국 군대의 자국 관할권 외에 이동은 국제법 기본원칙인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제거 그리고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은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3]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국 군대의 해외 파병은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threat or use of force)에 해당되며, 이는 무력사용금지원칙을 회원국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로 규정한 UN헌장 위반이자 국제관습법 위반이다.

3) UN헌장 제1조 1항 및 제2조 4항 참조.

일반적으로 무력 사용은 무력공격(armed attack)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1986년 미국과 니카라과 간 군사적 준군사적 활동에 관한 판결에서 무력사용을 “가장 심각한 형태의 무력사용”(the most grave forms of the use of force)과 그에 미치지 않는 “덜 심각한 형태의 무력사용”으로 구분하고 전자만이 자위권의 발동요건인 무력공격으로 간주하였음.[4]

현행 국제법에 의하면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전투병 파병의 경우 그 자체가 가장 심각한 형태의 무력사용에 해당하며, 군인 외의 경찰 및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의 경우는 전투병과의 유기적인 관계 등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자체가 심각한 형태의 무력사용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무력 사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무력사용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법상 허용되는 예외는 UN헌장상의 예외와 국제관습법상의 예외로 구분된다.

UN헌장상 무력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① UN헌장 제51조의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 ② UN헌장 제42조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사용결정에 따른 조치, ③ UN헌장 제53조의 구 적국(Old Enemy)의 침략정책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따른 조치 등이다.

국제관습법상 무력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① UN헌장 제51조 자위권 외의 자위권(예방적 자위권 및 선제적 자위권), ② 보호책임(R2P) 등을 포함한 인도적 개입을 위한 무력조치, ③ 자국민 또는 해외 자국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조치 등이다. 현재 국내 현행법상 국제법상 허용되는 무력사용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은 PKO활동 외에는 없으나 국가이익의 수호를 위해 상기 예외들의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근거법 역시 마련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상기 예외 중 UN헌장 제42조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사용결정에 따른 조치 등은 안보리 결의 후 UN의 요청에 의해 파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안의 구속력 및 해당 약정의 국내법적 구속력을 감안할 때 별도의 실체법적 근거법은 요구하지 않으나 절차법은 여전히 요구된다. 항을 나누어 각각의

4)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Merit), Nicaragua v. U.S.A., 1986 ICJ Reports 1986, p. 14, paras.191.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되 우선 PKO의 활동과의 차이를 나타나기 위해 PKO를 먼저 다루고 상기 예외의 순서대로 그 내용을 검토함으로서 실체법적인 요건을 다루기로 한다.

2. UN 헌장상 해외파병 등 무력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1) PKO

해외 평화 활동을 위한 군대 파병의 경우, 광의의 의미에서는 상기 모든 예외의 경우에 모두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평화유지활동으로 PKO를 의미하는 경우 이는 UN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평화유지활동을 지칭한다. PKO는 분쟁 당사국간의 휴전 합의 후 UN 안보리 또는 총회의 결의에 근거,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병력을 통하여 UN의 지휘하에 휴전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그 형태는 군사감시단(Military Observer)과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으로 구분된다.

군사감시단은 1947년 발칸반도의 휴전감시를 위해 설치되었던 UN발칸특별위원회(United Nations Special Committee on the Balkans: UNSCOB), 그리고 평화유지군으로는 1956년 수에즈사태로 촉발된 제2차 중동전 이후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설치된 UN비상군(UN Emergency Forces)이 최초로 기록된다. PKO 활동의 법적 성격 또는 근거 즉, PKO가 상기 UN헌장 상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세 가지 예외 중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바, 이는 PKO 활동이 제7장에 근거한 안보리가 아닌 총회에 의해 설치됨으로서 제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국제사법재판소(ICJ) 역시 Certain Expenses of the UN사건을 통해 총회와 안보리의 권한 배분문제를 다룰 당시 총회도 PKO의 설치를 결정 할 수 있다고 하여 논란을 가중시켰다.

PKO는 냉전 당시 서방과 동구권의 갈등 구조 속에서 안보리의 기능약화에 따라 초기 총회에 의해 설치된 경우도 두 차례 있었으나 이후의 PKO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암묵적 합의를 통해 모두 안보리 결의에 의해 설치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에는 PKO의 임무가 확대되어 단순한 평화유지에서 평화의 강제 및 평화구축임무도 부여되었는데 소말리아와 구 유고에서의 PKO는 광범위

한 강제력행사를 수행하는 등 헌장 제7장 강제조치와 구별이 어려운 점도 있다. PKO와 헌장 제7장 강제조치와의 가장 큰 차이는 파병 대상국의 동의 여부로서 강제조치는 파병대상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파병이 가능하지만, PKO는 파병대상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PKO는 중립의무가 있으며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역시 강제조치와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이제 PKO는 안보리의 권한 속에서 참여 가능한 회원국의 수 등 제 상황을 안보리가 고려하여 직접적인 무력행사를 포함하는 강제조치와 해당 무력행사 이후의 중립 또는 전후 복구를 위한 PKO활동 또는 그 중간적인 지위로서의 PKO설치를 적절히 판단 및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UN 헌장 상의 자위권

UN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규정함에 있어서 자위권이 국가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1)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행사할 수 있으며, 2)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3) 그 조치 내용은 안보리에 즉각 보고되어야 한다는 등 엄격한 요건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UN헌장은 자위권을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상호방위조약 등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에 상호 합의한 국가 중 한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 그리고 무력공격을 받은 국가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타 조약 당사국이 해당 무력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동 해외파병을 위한 법적 타당성 및 근거법 마련이라는 동 연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개별적 자위권은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즉,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무력행사를 받았을 경우 자위권 행사를 위해 국군을 파병하는 문제는 즉각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요한다는 데 정치적 이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개별적 자위권과 달리 집단적 자위권의 경우, 우리나라에 침입이 있는 경우가 아닌 집단적 자위권을 약속한 국가에게 침입이 있는 경우 시간적으로 즉각적 무력 사용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타 정치적 고려와 절차적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한 조약을 체결한 예로는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한데, 동 조약 제2조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만일 미국에 외부에서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의하에 우리나라 군대를 해당 무력공격에 응전하기 위해 파병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9월 11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로부터 비호를 받아 아프가니스탄에 훈련기지 등을 둔 알카에다의 공격을 받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단체를 소탕하기 위해 취한 전투는 비록 UN안보리로부터 적법한 자위권행사라는 결의안을 득하였지만, 만일 이와는 달리 안보리의 자위권 인정 전 또는 안보리 내부 사정에 의해 자위권행사가 보고되었으나 안보리의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만일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집단적 자위권 규정을 근거로 파병을 요청하는 것을 상정한다면 이는 국회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논의될 실체적 요건을 대비하여 현재 준비 중인 법안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준비 중인 법안에는 제2조 정의조항의 해외파견활동의 개념을 통해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개념 조항에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하던지 또는 국군의 해외파병의 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UN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

UN헌장 제42조의 안전보장이사회의 무력사용결정에 따른 조치는 소위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로서, 안보리는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 및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사태의 존재 유무에 대해 결정하고 국제편화와 안전유지 또는 복구를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할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 침략 및 평화에 대한 파괴는 복수국가간의 군사력 사용 또는 군사적 적대행위임에 반해 평화에 대한 위협은 한 국가 내에서 극단적인 폭력사태로 인해서도 발생 가능함, 예컨대 1991년 이라크의 쿠르드족 탄압사태, 1992년 소말리아 사태 및 1993년 라이베리아 사태 및 아이티 사태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안보리는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3년 북한의 핵무기 실험도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바 있다(안보리결의 제1718호, 제1874호 제2087호 그리고 제2094호). UN헌장상 안보리가 군사조치를 결정하면 안보리가 사전에 회원국들과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안보리 요청 시 회원국이 제공할 병력 등의 내용을 정하고 이들 병력은 5개 상임이사국 대표로 구성된 군사참모위원회가 지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5] 냉전 구조 속에 유엔 안보리의 기능이 무력화됨에 따라 해당 체계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보리는 그 대안으로 안보리 결정 후 회원국에게 군사적 원조 제공을 권고하거나(1950년 한국전 안보리 결의 제84호), 특별이해관계국에게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방식(1966년 로디지아 일방적 독립선언사태 시 석유금수조치를 위해 연고국인 영국에게 무력사용을 허가)을 취하였다. 1990년 이라크전에서는 안보리가 제7장 강제조치를 전제로 회원국에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 무력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되 이들은 UN군이 아닌 다국적군이라 지칭되었으며 이는 이후 1993년 소말리아사태, 1995년 유고사태, 1999년 동티모르사태에서 UN의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5) UN헌장 제43조 및 제47조 참조.

(4) 구 적국 조치

구 적국 조항은 UN헌장 설계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의 주축국인 독일, 이태리 및 일본 등 소위 구 적국(Old Enemy)들이 승전국인 연합군에 다시 침략전을 재개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고안하여 규정한 조항이다.[6] UN은 안보리 외에 나토와 같은 지역적 기구에게 강제적 조치를 위임하는 것을 상정하였지만 이는 안보리의 명확한 위임 즉 허가가 있어야 하며 지역적 기구가 독자적으로 안보리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무력사용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 적국에 대한 조치이거나, 전쟁책임 등 UN헌장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정책의 재현에 대비하여 지역적 협약에 규정된 것은 안보리의 사전 허가나 결정 없이도 무력행사를 포함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상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어떠한 지역적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없음으로 동 구 적국 조치를 위한 해외파병 역시 가능성이 없으므로 동 법안에 포함될 현실적 이유가 없다.

3. 국제관습법상 해외파병 등 무력사용이 허용되는 경우

(1) UN헌장 제51조 자위권 외의 자위권

일반 국제법상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모두 국제법의 연원으로 양자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임. 따라서 UN헌장 상의 자위권 외에 기존의 국가의 고유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온 자위권 또는 UN헌장 체제 이후에 새로이 형성, 발전 확립된 자위권 역시 UN 헌장의 자위권의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가들에게

6) 제53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허용된 무력사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UN 헌장 체제 이후 논의되고 있는 유형의 대표적 자위권으로는 예방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과 소위 부시 독트린으로 대변되는 선제적자위권(preemptive self-defense) 등이 있다.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이 현실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이후에만 발동이 가능한 것과 달리 예방적 자위권 및 선제적 자위권은 무력공격 발생 이전에 해당 무력행사를 봉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핵무기 등 현대 무기의 발달에 따라 그 파괴력도 커져 무력공격을 받은 이후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면, UN헌장상의 자위권조항은 비현실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영미권을 중심으로는 국가는 헌장 제51조 자위권 외에 관습국제법상의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에는 임박한 상대방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자위권도 포함된다.

예방적 자위권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자위권은 관습국제법상 그 필요성이 급박하고 압도적으로 다른 수단을 택할 여지나 숙고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 인정되며 그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과도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 소위 '임박성과 비례성'이 요구된다.

1837년 미국과 영국 간의 Caroline호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동 원칙은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가 건설 중인 핵발전소가 종국에는 핵무기생산을 위한 우라늄 농축을 제공할 것이라는 근거로 오시라크 핵발전소를 공습한 근거로 예방적 자위권을 주장한데 대해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임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난결의를 채택한 것에 비추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아가 이란과 미국 간 Oil Platform 사건에서도 ICJ는 미국이 사망자가 없던 기뢰에 의한 함정피해에 대해 미국이 2척의 이란 순양함과 여러 해군함정 및 비행기를 공격한 행위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7] 선제적 자위권은 기존의 예방적 자위권을 넘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국가가 핵, 생화학무기 및 대량살상무기 등을 보유하고 동시에 테러단체를 지원함으

7) Oil Platform, Iran v. U.S.A., 2003 ICJ Reports para.77.

로 인해 자국에게 테러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테러행위 등의 무력공격이 임박하지 않아도 미래의 테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게 자위권을 발동 할 수 있다.

무력사용자제라는 국제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의 양상에 비추어 볼 때, 예방적 자위권 및 선제적 자위권의 인정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핵 위협에 노출되어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현실적인 논의일 수밖에 없다.

(2) 보호책임(R2P) 등을 포함한 인도적 개입을 위한 무력조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는 과연 기존의 주권평등원칙에 터 잡은 국내문제불간섭원칙이 인권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근대 주권국가의 태동을 여는 1648년 웨스트팔리아체제로부터 시작한 국제법은 태생적으로 주권이론과 함께 하였으며 당연히 주권평등 및 내정불간섭원칙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여 왔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등장한 인권보호의 개념은 더 이상 인권의 문제를 국내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국제법의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인권의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이 이를 수습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타국 또는 국제기구가 무력을 동원하여 해당 사태를 종식하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것을 인도적 개입이라 한다. 1999년 코소보에서의 인종청소 등의 잔혹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NATO에 의해 감행된 세르비아 폭격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된 대표적인 인도적 개입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행 및 법적 확신이 부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며 인도적 개입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도 국가들의 일관되고 통일된 관행조차 없다는 점에서 인도적 개입이 헌장 제2조 4항의 무력행사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이라는 장벽 뒤에서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자신의 정권 유지에 급급해하는 독재자들을 국제사회에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간의 존엄이 지켜지는 경우에만 국가주권의 존중되어야 하며, 해당 국가가 주권국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외부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소위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이 등장하였다. R2P는 2010년 튀니지 재스민 혁명에서 시작한 아랍권의 민주화운동, 특히 2011년 리비아 사태 및 시리아 사태에서 자국민에게 총포를 가하는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양심은 R2P를 통해 인도적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제관습법이라 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후술할 미국의 Directive 25 역시 인도적 개입을 이유로 한 미국 군대의 파병에 대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나, 인도적 개입이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라는 비난으로 인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도적 개입을 이유로 단독으로 국군을 파병하는 경우는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예외적으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긴급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국민을 보호 목적의 필요성이 당연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인도적 개입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다음에서 다루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해외 주재 자국민 보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3) 자국민 또는 해외 자국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조치

과거 해외 자국민 또는 자국공관 피해를 명분으로 무력사용을 취하는 소위 무력복구(armed reprisal)경우는 허용되었으나, 원칙적으로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UN체제하에서는 무력을 사용하는 복구는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UN 총회 역시 1970년 무력행사를 포함한 복구를 삼가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다.[8] 그러나 이는 UN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UN체제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며, 만일 국제사회의 위법행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인질범 및 테

8) 총회 결의 제2625호(XXV)(1970).

러단체 또는 해적 등에 의해 자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UN에 호소하여야 하는 가는 의문이다.

예컨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행위는 소말리아 정부에 의해 근절될 소지가 없어 해당 지역의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한 안보리에 의해 결의된 결의안(제1816호 및 제1838호)에 의해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해 각 국가에게 소말리아 영해 및 근해 지역에서의 무력사용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만일 안보리가 어떠한 결의도 채택하지 않은 유사 타 지역에서 해적행위가 빈발하며 우리 선박이 인질로 잡힌 경우에도 또 다른 아덴만 여명 작전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우리나라 헌법의 자국민 보호 및 해외 자국민 보호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전술한 바와 같이 인도적 개입 중 해외에서 급박한 위험에 처한 자국민 구출 등 보호는 국제사회에서도 해외에 있는 자국 재산 보호와는 달리 취급되는 등 어느 정도 용인되고 있다. 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팔레스타인 게릴라에 의해 억류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이스라엘 특공대가 투입된 예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급박한 위험에 처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군대 파병 등 무력사용은 타국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영토적 단일성 등 주권에 해를 가하는 무력행사가 아니므로 헌장 제2조 4항의 무력사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국내문제간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 현지국이 자국 내 우리 국민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으며, 2) 자국민이 현지에서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상화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3) 무력사용이 자국민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며, 4) 무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합리적으로 사용되며 사태해결과 함께 신속히 철수하는 등의 요건을 준수한다면 자국민 보호와 타국의 주권존중이라는 양자의 이익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재외국민보호법이 없는 현실상 법적 미비를 이유로 자국민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이미 2011년 리비아 반정부 시위로 인해 아덴만에서 임무수행 중인 최영함이 안전한 교민 철수를 돕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점을 고려

하면, 오히려 명문으로 자국민 보호를 위한 해외 파병의 근거조항을 설치함으로 인해 그 남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재외 자국 공관 보호를 위한 무력행사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1998년 8월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 대사관 폭탄테러로 인해 2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2주후 아프가니스탄과 수단 내의 빈 라덴이 운영하는 기지에 미사일 공격 감행 후 자위권행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 자국 공관의 보호책임은 공관 체류지국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해당 행위가 서술한 선제적 자위권이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Ⅲ. 미 국

1. 전쟁권한결의

1973년 전쟁권한결의(War Powers Resolution of 1973)라고 지칭되는 동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참전하는 대통령 권한을 통제할 목적에 제정된 연방법이다.[9)]

> 동 결의는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일반적으로 첫 전쟁권한법(First War Powers Act)으로 알려진 1941년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of 1941)과의 내용적 차별성을 띠기 위해 전쟁권한결의라고 지칭됨. 전쟁권한 결의가 개전권과 관련이 있지만 전쟁권한법은 전시 연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1941년 전쟁권한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 연방정부 권한강화를 위해 긴급히 마련된 법으로,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어 일본의 진주만 공습 2주 후인 1941년 12월 18일 발효한 법임.
> 동법은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이전 대통령의 행정부 권한을 강화시킨 1917년 정부재조직법(Departmental Reorganization Act of 1917)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

1973년 11월 7일 상하원 동시 결의의 형태로 채택된 동 전쟁권한결의는 미 대통령이 미국 영토, 준주 또는 해외 주둔 미군에 가해진 공격에 의해 국가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미군을 의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파병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결의는 총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이 외국에 군대를 파병하는 경우 48시간 내에 그 사실을 의회에 통보하

9) 50 U.S.C. §§1541-1548.

고, 파병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거나 대통령이 군대사용의 허가를 의회로부터 받도록 하고 있다(다만, 군대사용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군대를 철수하여야 한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엘살바도르 군대 파병 및 니카라과 콘트라 시 그리고 1999년 클린턴 대통령의 코소보 폭격시 의회는 해당 파병에 모두 반대하였고 대통령들은 동 결의안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그 준수를 거부하였다.

미 연방헌법에 의하면 전쟁권(war powers)는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해 분점되어 있는 바, 의회는 1) 전쟁을 선언할 권리, 군대를 양성하고 육성할 권리 및 전쟁자금을 통제할 권한,[10] 2) 전쟁 수행에 필요한 미 정부 또는 어떠한 부 또는 공무원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모든 법을 제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보유하는데,[11]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적을 격퇴하고 군대를 통솔할 권한이 있으며 동시에 전쟁선언과 같은 의회의 행위를 인준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실제로 의회에서 전쟁 선언을 한 사례는 1812년 영국과의 전쟁, 멕시코-미국전, 스페인-미국전, 제1차 세계대전 및 제2차 세계대전 등이 있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한국전 및 베트남전 등 수년 동안 진행된 전쟁을 치르면서도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개전권이 발동되지 않은 사실에 의회의 우려가 시작되었다. 전쟁권한결의에 따라 의회가 승인한 무력행사로서는 1982년 레바논사태시의 해병파병(P.L. 98-119)과 1991년 이라크 전 당시 다국적군에 미군의 합류를 인정한 것(P.L. 107-243)이 대표적이다.

1993년 11월 9일 하원은 미군이 소말리아에서 1994년 3월 31일까지 철수할 것을 요청하면서 전쟁권한결의를 사용하였으며 클린턴 미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여 소말리아에서 철수를 결정하였다. 코소보 사태의 경우 의회는 60일이 초과된 군사활동이므로 폭격 등에 관하여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클린턴 정부는 이미 폭격 등을 위한 예산을 승인한 의회의 행위는 전쟁개시에 대한 동의와 같다고 하여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 이슈는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Campbell v. Clinton 케이스로 법원

10) 연방헌법 Article I, Section 8.
11) 동 법 Article II, Section 2.

(D.C. Circuit)에 까지 갔으나 법원이 정치적 이슈라는 이유로 사법심사를 거부하는 사법소극주의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전히 정치적 논란의 장에 남아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여전히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미국이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리비아에 전투병을 파병한 이후 60일이 되는 2011년 5월 20일에 오바마 대통령은 동 결의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대신 미군 지휘권을 NATO로 이전시키고 미대통령의 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이 제한되어 의회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2011년 6월 3일 하원은 오바마의 이러한 통지는 동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임을 밝히고 정치적으로 질책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 전쟁권한결의 관련 헌법적 쟁점

동 결의는 제정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대통령인 닉슨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의 재결의로 인해 통과되었다. 헌법적인 쟁점은 의회의 경우 동 결의안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여 3권 분립에 반한다는 것으로 의회의 주장은 소위 필요·적합조항(Necessary and Proper Clause)에 따라 입법부의 활동 뿐 아니라 헌법상 행정부의 모든 권한 집행에 필요하고 적합한 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여 대통령이 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 외에 그 집행에 필요하고 적합한 법 역시 제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행정부의 주장은 의회의 전쟁선포권(declaration of war)은 대통령의 군통수권자로서 전쟁 개시(commence of war)권과는 다른 것으로 총체적 전쟁이 아닌 단순 무력사용에 해당하는 해외 파병에 기간적 제한을 두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해당 대통령의 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정부 당시 국무부 국제법자문관으로 활동한 Phillip Bobbitt에 따르면, 미 헌법의 제정자 역시 전쟁선포는 총체적 의미로서의 전쟁을 의도한 것으로 1798년부터 1800년까지 수행된 프랑스와의 준전쟁(Quasi-War with France)

에서도 전쟁선포 없이 대통령의 개시권만으로도 전쟁 수행이 가능했음을 근거로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12)]

미국 전쟁권한결의를 둘러싼 논쟁은 미국 헌법이 전쟁선포권은 의회에 부여하고 전쟁수행권은 대통령에게 부여하였으며, 총체적 전쟁에는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군대의 해외파병 역시 전쟁선포를 하여야만 가능하냐는 다소 정치적인 논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 시피 우리나라의 헌법의 경우 국회에게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여 선전포고가 필요 없는 군대의 해외 파병에도 명시적으로 국회의 동의가 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13)]

3.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s 25

미국은 소말리아 사태 이후 PKO 등을 포함한 해외 군사 활동을 위한 미군 파병에 정책적 재검토를 하고 이를 대통령결정지침 제25호를 통해 수정을 가하였다. 대통령결정지침(PDD) 또는 대통령 지침(Presidential Directives)은 미국 국가안보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의 조언과 동의 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제정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국가안보정책 관련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 명칭은 역대 정부에 따라 다르며 2009년 현 오바마 정부에서는 대통령 정책 지침(Presidential Policy Directives)이라는 명칭 하에 사안별로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s 25(이하 PDD-25)는 명백한 국가이익이론(vital national interests test)을 통해 PKO 파병을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파병을 자제토록 하고 있는데, 동 정책에 의하면 PKO는 국내 여론에 부합하고, 미정부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는 임무에만 파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PKO활동에 미국의 재정적 약정을 1994년 31.7%에서 1996년까지 약 25%로 감축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PDD-25는 PKO이외에도 다양한 해외 파병 활동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예컨대 미국 주도의 활동보다

12) Phillip Bobbitt, "War Powers: An Essay on John Hart Ely's War and Responsibility: Constitutional Lessons of Vietnam and Its Aftermath", Michigan Law Quarterly 92, no. 6 (May 1994), pp. 1364 - 1400.
13) 헌법 제60조 2항 참조.

는 NATO 등과 같은 지역적 기구를 통한 국제 평화 안전유지에 주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UN헌장 제7장에 근거한 새로운 무력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컨대 해당 조치 발동으로 인한 미국의 본질적인 이익 증진과 파병으로 인한 미국인의 위험의 이익형량 등이 있다.

이외에도 미군의 참여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 국내 여론 및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데 있어서의 난이성 여부 그리고 다국적 군 내에서 미군 지휘권에 대한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도 미군 파병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다.

Ⅳ. 일 본

1. 해외파병 관련 논의의 배경 및 법제화 연혁

(1) 일본 평화헌법 제9조와 해외파병 금지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에 의거 군대의 해외파병을 금지하고 있었다. 일본 평화헌법 제9조는 전쟁포기 및 교전권 부인에 대하여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초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14)]하고 있다.

(가)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의미

1950년대부터 확립된 일본 헌법학계의 다수설은 일본국 헌법 제9조가 완전한 전쟁포기・전력보유 금지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는 전쟁을 부인하며 침략적 전쟁뿐만 아니라 자위전쟁도 포기한다는 의미이고, 무력의 행사나 위협도 포기하며, 군비를 없앤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

14) 참고로 일본 헌법 전문은 '평화적 생존권'과 관련하여서 "일본 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애호하는 각국 국민들의 공정성과 신의에 기초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고자 결의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專制)와 예속 압박과 편견을 지상으로부터 영원히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평등하게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탈피하여 평화로운 가운데 생존할 권리를 갖는다고 확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군사소극주의 기조의 유지

일본국 헌법 제9조는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1950년대부터 1990년 이전까지는 해외파병 금지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1957년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1958년부터 1976년까지 자위대의 방위력 증강이 시작되었다. 이 당시 일본은 한국전쟁에서의 전쟁특수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력에 부응하는 최소한도의 방위력 정비를 이유로 내세우면서 방위력 증강을 위한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일본은 국제정세에 대하여 냉전체제 하에서의 동서대립의 격화가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소련의 존재가 일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에 따라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방위력도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대항형의 '소요방위력'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7만5천명의 경찰예비대를 설치하고 이를 글자 그대로 경찰의 예비부대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952년 보안대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1954년 이후 자위대라 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위대법"에서는 명문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해 직접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주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1972년 카나카 카쿠에이(田中角榮)내각은 자위대는 일본국헌법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력'이 아닌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력'에 불과하다는 공식견해를 발표하였다. 이때 자위대는 자위를 위한 활동밖에 할 수 없으며, 이를 넘어서 군사적 동맹을 맺거나 타국의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 군사대국화 및 해외파병

1976년 '방위계획의 대강'이 결정되어, 1977년부터 1995년까지 방위력 증강계획의 근간이 되었으며, 이는 동서간의 무력충돌이나 대규모 분쟁 가능성은 적고, 한정적 무력분쟁의 가능성은 있으나 미·소·중의 균형적 관계와 미일 안보체제는 국제관계의 안정유지와 일본의 안전보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일본 주변지역에서 불안정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국

으로서의 필요 최소한도의 기반적인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구상으로서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근간으로 하는 방위계획으로 전환하였다.

1976년의 '방위계획의 대강'에 따르면 한정적이고 소규모의 침략에 대해서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처하고 그 이상의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의 협력을 기다려 이를 배제한다는 정도의 방위력 정비를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이후 1980년대 미국에 의한 일본의 안보비용 분담요구 증대로 자위권행사의 억제는 퇴색하고, 냉전의 붕괴와 걸프전으로 상징되는 세계적인 규모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국적군에게 13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을 했음에도 인적 공헌이 없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자 1991년 4월 소해정 6척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하고, 1992년 초 걸프전 당시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PKO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1992년 9월 캄보디아, 1993년 5월 모잠비크, 1994년 9월 르완다에 자위대 파견 등 적극적인 파병활동을 통해 전범국가 이미지 탈피를 위해 노력하였다.

(2) 일본의 해외파병 관련 법제 연혁

(가) PKO법 제정

일본의 PKO법 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미국을 중심으로 동맹군이 대항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 정부는 동맹군에 대한 130억 달러의 자금협력과 수송에 관현 협력(지원)을 하였다. UN의 지역분쟁해결에 관한 역할이 증대되면서 일본에 대한 UN의 평화유지활동 공헌요구가 지속되어 왔고, 이에 따라 1990년 각료회의에서 '유엔평화협력법안'이 결정됨. 동 법안에서 평화협력업무는 후방지원과 그 밖의 평화협력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무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무장하는 '해외파병'과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 '유엔평화협력법안'의 폐기되었고, 이후 1992년 6월 15일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PKO 법)'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PKO법은 정전 후에 자위대를 통한 평화유지 참여 및 후방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 '신방위대강' 결정

'신방위대강'은 1995년 11월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신방위대강'에서 일본정부의 대외인식은 세계적인 규모의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종교나 민족문제 등에 의한 지역분쟁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미일 안보체제의 존재가 일본의 안전과 지역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서 국내적으로는 국민들의 자위대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어, 각종 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원활동이 요구되었으며, 자위대의 국제공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 상당히 높아지게 된 것도 변화의 요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일안보체제의 견지, 비핵3원칙 등 '방위대강'의 기반적 방위력 구성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동시에 일본의 방위정책은 좁은 의미의 자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좀 더 능동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하여 자위대를 활용할 것을 명기하게 된다.

'신방위대강'에서는 일본에 대한 침략 유무에 관계없이 주변국의 평화와 안전 및 미국의 아시아·세계전략을 위한 미일 공동작전을 행한다고 하면서, 한정적이고 소규모의 침략에 대해서만 일본이 독자적으로 대처하고 그 이상의 사태는 미국의 협력을 기다려 배제한다고 하였던 '방위대강'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다) '신가이드라인'과 주변사태법

1997년의 신가이드라인은 일본에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와 일본 주변에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규정한 것이며, 구가이드라인이 일본에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중점을 두었던 것에 반하여 신가이드라인은 주변에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이 취해야 할 역할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가이드라인에서 주변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일본이 취해야할 역할로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물자수송, 수급, 민간의 공항·항만시설의 이용이라는 후방지역 지원 및 일본 자위대의 작전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파병관련 '신가이드라인'의 법제화를 통하여 1999년 주변사태법을 제정하게 된다.

주변사태법은 일본의 해외파병 관련 역할의 재규명,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응하여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변사태법은 일본 주변지역에서의 일본의 평화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일본이 미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후방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전 후가 아니라도 전투행위가 일어나면 미국을 돕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 2001년 테러특별조치법의 제정

2001년 미국 뉴욕 9·11테러 이후 일본정부는 테러대응책으로 ① 미군 등의 보복공격에 자위대가 후방지원을 하며, ② 주일미군시설경비를 강화, ③ 정보수집을 위한 자위함 파견, ④ 출입국관리에 관한 국제협력의 강화, ⑤ 주변국에 대한 경제지원, ⑥ 난민지원, ⑦ 경제의 혼란회피를 위한 국제제적인 협력 등을 발표하였다. 미일안보조약의 경우 일본국헌법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조약의 적용구역과 발동조건을 일본에서의 무력공격으로 한정하고 있었고, 주변사태법에서 예정한 극동의 범위에 아프카니스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위대의 아프카니스탄 파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테러특별조치법의 정식 법률 명칭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 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유엔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외국 국가들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및 관련된 유엔의 결의 등에 기초한 인도적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다. 테러특별조치법은 테러에 대응하는 외국군에 대한 물자보급 및 수송과 같은 지원협력활동, 수색구조활동, 피해민 구조활동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마)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 제정(2003년)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은 대 이라크 무력행사를 단행하여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에 의한 이라크 무력행사에 계속하는 사태를 이라크 특별 사태라고 평가해 일본의 「주체적」인 판단으로부터, 이라크에서의 인도 부흥지원 활동 및 안전 확보 지원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라크 인도 부흥 지원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고, 국회를 통과하여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은 일본헌법 제9조의 제약하에서도 해외파병관련 법제 정비로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파병활동을 제도화하였던 것이다. 아래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연혁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연혁

1991년 제1차 걸프전쟁 당시 파병된 이래 현재까지 해외에 자위대가 상주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연혁 및 국제평화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연혁>

파병장소	일 시	내 용
페르시아만 해상작전	1991년 4월-10월	기뢰제거
캄보디아 PKO	1992년 9월-1993년 10월	정전감시, 도로수복
모잠비크 PKO	1993년 5월-1995년 2월	인원과 물자수송
르완다 난민구조	1994년 9월-12월	의료, 급수
골란고원 PKO	1996년 2월-2012년 12월	물자수송
온두라스 국제긴급원조	1998년 11월-12월	의료, 방역
온두라스 국제긴급원조	1999년 11월-12월	인원, 물자수송
터키 국제긴급원조	1999년 9월-11월	물자수송
동티모르 피난민구조	1999년 11월-2000년 2월	물자수송
인도 국제긴급원조	2001년 2월	인원, 물자수송
아프카니스탄 난민구조	2001년 10월	물자수송
인도양 협력지원	2001년 11월	연료보급, 물자수송
동티모르 PKO	2002년 2월-2012년	도로수복, 운송
이라크	2003년 3월-2003년 4월	난민구제
이 란	2003년 1월-2004년 1월	지진구호활동

<일본의 국제평화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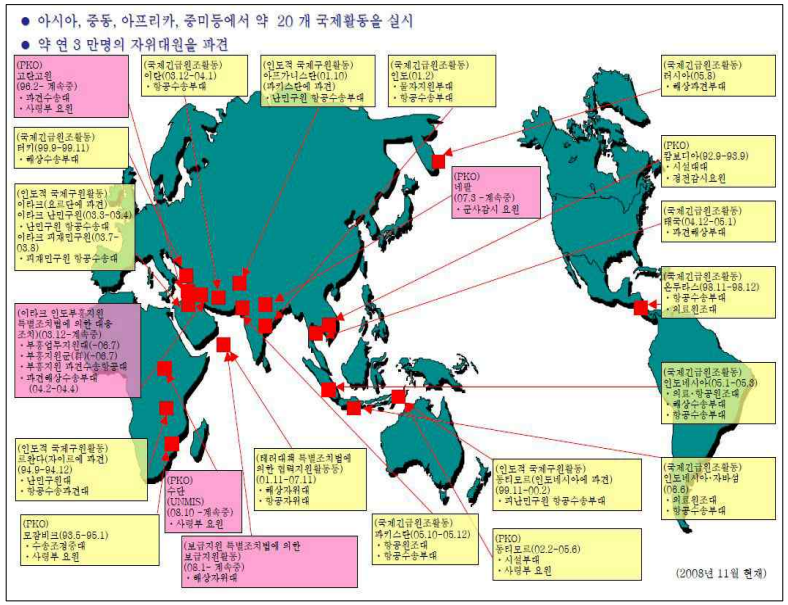

3. 해외파병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PKO법)(1992년)

(가) PKO법률 입법배경

1990년 1월 ~ 1990년 2월 걸프전(Gulf War) 때 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금전적 지원에만 그쳤던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1990년 8월에 자위대 해외파견을 위한 '유엔 평화협력법'의 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걸프전 당시 130억 달러의 재정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 공헌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1991년 9월 민간 중심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기구 창설 방침을 바

꾸어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군(PKF, Peace Keeping Force) 참여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확정하였다.

(나) PKO 법률의 구성 및 주요내용

① PKO 법률의 구성

전문 5장 27조로 구성된 동법은 절차적인 요건으로는 참의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동법은 우리나라의 PKO법과 마찬가지로 UN PKO를 위한 목적으로 한 파병만을 그 적용 범위로 하고 있으며, 상기의 5개 요건이 엄격하다는 내부 불만과 함께 PKO 외에 다른 요인을 원인으로 한 파병에 대한 근거법 마련에 노력하여 왔다.

② PKO 법률의 주요내용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인 국제구원활동 및 국제적인 선거감시 활동에 적절하고 신속한 협력을 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일본이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PKO 파견의 5대 원칙으로 ① 분쟁당사자간의 정전합의가 존재할 것, ② 일본이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가 합의하여 줄 것, ③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중립적 일 것, ④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자위대를 철수할 것, ⑤ 무기의 사용은 자위를 위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을 들고 있다.

국제평화 협력본부장은 내각 총리대신이 맡으며, 본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위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연합 평화유지대에 참가할 경우 다섯 가지 기본원칙 및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6조제7항).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없이 국제평화 협력 업무를 종료해야 한다(제6조제9항).

국제평화 협력 업무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을 경과한 이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해당일의 30일 전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에 국제평화협력 업무를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다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 또는 중의원이 해산되어 있는 경우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6조제10항).

내각총리대신은 실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국제평화협력 업무가 종료한 경우 해당 국제평화 협력 업무 실시의 결과, 실시계획에 정하는 국제평화 협력 업무를 실시하는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변경이 있을 때 해당 변경 전의 기간에 있어서의 국제평화 협력업무 실시의 상황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또한 실시계획에 따라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실시요령을 작성하여야 한다(제8조).

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을 협력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하여 파견되는 직원 중 자위대원 이외의 자는 종전의 직을 보유한 채 정한 기간 동안 대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한다(제12조). 대원은 국제평화협력업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연수를 받아야 한다(제15조).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하는 파견국의 근무환경 및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특징에 비추어 국제평화 협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16조). 그리고 국제평화 협력업무 종사자의 총 수는 2천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제18조), 정원은 실시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정원으로 개개의 협력대마다 정령으로 정한다(제19조).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해상보안청 장관 또는 방위대신에게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를 위한 선박 혹은 항공기에 의한 재해민 수송 및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를 위한 선박 혹은 항공기에 의한 물품 수송을 위탁할 수 있다(제20조).

본부는 대원의 안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소형 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제22조). 소형무기를 대여 받아 파견국에서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해상보안관・해상보안관보와 자위관은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사람 또는 신체를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판단에 한정하여 소형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제23조).

정부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인 국제 구원 활동 또는 국제적인 선거감시 활동에 협력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각회의의 결정을 거쳐 물자 협력을 실시할 수 있다(제25조).

(2) 주변사태법(1999년)

주변사태법은 '주변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가) 입법배경

1997년 미・일의 신가이드라인의 중요 내용이 종래 미일안보조약을 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종래의 안보조약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운용지침이라는 견해도 있다. 신가이드라인 중에서 안보조약의 범위 이외의 부분은 단순한 미일 양국정부간의 사실상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법규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변사태법을 제정하고자 한 것이다.[15]

주변사태법은 기존의 '신방위대강'과 97년 '신가이드라인' 등을 근간으로 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의 확대 및 강화 작업에 대한 법률적 실효성을 발동시키고자 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성안되게 된 것이다. 또한 주변사태법은 미・일 방위협력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을 한반도 등 주변지역 사태에 대해서도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되어 법률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16]

주변사태법에 따라 자위대가 미군 후방지역지원시 정당방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과 원칙적 사전승인・예외적 긴급시 사후승인으로 국회 승인관련 사항을 정리하고, 후방지역지원과 수색구조활동 등 자위대활동에 국한하여 승인받는 것으로 일본의 3당이 합당하여 법률안에 구체화되었다.

(나) 주변사태법의 주요내용

주변사태법은 그대로 둘 경우 일본에 대한 직접적 무력공격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일본국 주변지역에서의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응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그 실시의 절차와 기타 필요

15) 이창위, 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국제법학회논총 제53권, 2008년, 155면.
16) 한겨레신문, "일본자위권 확대 주변사태에도 발동", 1999년 4월 27일자 참조.

한 사항들을 정하고 일본과 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의 효과적인 운용에 기여하며 일본의 평화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정부는 주변사태 시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후방지역 지원,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 기타 주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대응조치의 실시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제2조).

내각총리대신은 주변사태시에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 중의 어느 하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해 조치의 실시 및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계획 안에 따라 각의의 결정을 구하여, 후방지역지원, 관계 행정기관이 후방지역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조치로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을 행한다(제4조).

기본계획에 정해진 자위대의 부대 등이 실시하는 후방지역 지원 또는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은 이러한 대응조치의 실시 전에 그의 실시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당해 후방지역지원 또는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제5조).

기본계획에 따라 후방지역지원으로서 자위대에 속하는 물품의 제공을 실시하며, 후방지역지원으로서의 자위대에 의한 용역제공에 관한 실시요령에 따라 용역제공을 실시한다(제6조).

방위청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에 관하여 실시요령을 정하고 이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의 부대 등에 그 실시를 명하도록 하고, 이때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제7조제1항~제2항).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투참가자 이외의 조난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조하며,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시구역에 인접하는 외국의 영해에 있는 조난자를 인정한 때에는 당해 외국이 동의를 얻어 당해 조난자를 구조할 수 있다(제7조제3항~제4항).

후방지역 지원으로서의 자위대의 용역제공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의 부대 등의 지휘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자기 또는 자기와 함께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태에 맞게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제11조).

(3) 테러특별조치법(2001년)

(가) 입법배경 및 특징

일본은 테러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대테러 지원 급유활동을 수행하는 등 테러 관련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근거법을 마련하였다. 동법의 특이사항으로는 주변사태법과 달리 파병지역이 제한되지 않아 세계의 테러로 인한 분쟁 지역에 파병이 가능하며 또한 PKO법과 달리 정전 후 활동이 아닌 전투 시에서도 후방 파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절차법적으로도 PKO법과 주변사태법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데 반해 자위대의 해외파병 결정 후 2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도 가능하도록 사후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테러특별조치법은 정전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1992년 PKO법에서는 정전합의가 성립된 곳에만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캄보디아, 모잠비크, 르완다, 골란고원, 동티모르 등 과 같이 정전합의가 성립된 지역에만 파견하였다. 또한 테러특별조치법은 전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후방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정전합의 후가 아닌 전투행위 시에도 파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주변사태법이 자위대를 파병하여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일본주변을 극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 제한하고 있었던데 반하여 테러조치특별법은 인도양과 파키스탄과 같은 지역 등 세계의 어느 곳이든 파병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파병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테러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동법은 UN결의에 의거하여 테러에 대응하는 외국군에 대한 물자보급 및 수송등 지원협력활동, 수색·구조활동, 이재민 구조활동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의 목적은 안보리결의 제1368호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된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협력활동, 수색구조활동, 이재민 구호활동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히 실시하는 것이다.

동법은 제3조 기본원칙에서 대응조치의 실시는 무력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본인 및 아군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는데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주변사태법에서는 '자신과 동료대원의 신체를 지키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기사용을 허용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테러조치특별법은 난민과 미군 등의 부상병을 방호하기 위하여서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테러특별조치법은 사전승인 없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국회의 사후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규정하였다.

또한 육상수송을 제외하고 외국영역에서 전투행위시 무기와 탄약의 수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시행일로부터 4년 후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기한을 정해 연장 할 수 있으며 또한 재연장 역시 가능하다.

(4) 이라크부흥지원 특별조치법(2003년)

(가) 입법배경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영국은 대 이라크 무력행사를 단행하여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였다. 2003년 일본정부는 개전과 동시에 미국과 영국군의 이라크 공격에 지지를 표명하고, 이라크에 있어서의 대량파괴 무기 등의 처리와 복구·부흥 지원 및 인도지원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대처 방침을 결정하여 미군의 후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2003년 5월 초순에 부시대통령에 의한 주요 전투행위 종결 선언으로 미군과 영국군에 의한 점령통치가 개시되었다. 2003년 5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라크 전쟁 후의 이라크 부흥 지원에 공헌하는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는 결의 제1483호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에 의한

이라크 무력행사에 계속하는 사태를 이라크 특별 사태라고 평가해 일본의 「주체적」인 판단으로부터, 이라크에서의 인도 부흥지원 활동 및 안전 확보 지원 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라크 인도 부흥 지원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야당은 이라크전쟁의 정당성, 점령행정에의 협력과 교전권, 자위대 파견에 대한 현지 요구, 비전투 지역 여부의 판단 곤란, 안전 확보와 무기 사용 기준, 무기・탄약의 육상운송, 국회의 관여의 한정성 등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였다.

(나) 이라크 파병 현황

이라크에 있어서의 인도 부흥지원 활동 및 안전확보지원 활동의 실시에 관한특별 조치법(이하 이라크 특조법이라 한다)에 근거하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법률이 제정・시행된 2003년 8월로부터 약 반년이 지난 후 2004년 1월에 육상 자위대 본대의 파견으로 본격화 된다. 2004년 6월에는 미국과 영국군에 의한 점령 통치로부터 잠정 정부에의 주권 이양이 이루어져 자위대가 실질적으로 다국적군아래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파견의 전제 조건이 변화하였으나 그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적권한의 부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의 결의에 근거해 이라크에 인도적 부흥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 공헌」에 해당한다고 할 자위대의 파견은 입법 단계에서는 야당의 협력을 얻지 못하고,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하였으며, 집행단계에서는 이라크 전국토에서 무장 세력에 의한 공격이 반복되어 자위대의 활동 지역이 비전투 지역에서만 이루진다는 전제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파견 부대의 활동에 대해 여러가지 제약이 생겨 그것이 부흥지원 활동의 유효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다)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이라크 특별 사태에 있어서 국가의 조속한 재건을 위해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 민주적인 수단에 의한 통치 조직의 설립 등을 위한 이라크 국민에 의한 자주적인 노력을 지원 및 촉진하려는 국제 사회의 대응에 관해 우리나라가 이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국

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1,483호를 바탕으로 인도적 복구 지원 활동 및 안전 확보 지원 활동을 하고, 이라크의 국가 재건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정부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도적 복구 지원 활동 또는 안전 확보 지원 활동을 적절하고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에 우리나라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이라크의 국가의 재건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평화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제2조제1항). 또한 동법에 따른 대응조치의 실시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제2조제2항).

내각총리대신은 대응조치로 어떤 것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대응조치를 실시하는 것 및 해당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계획의 안에 대하여 각의의 결정을 요구해야 한다(제4조). 내각총리대신은 기본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내용,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조치가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제5조).

내각총리대신은 기본계획에 규정된 자위대 부대 등이 실시하는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대응조치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에 부의하여 해당 대응조치의 실시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 또는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후 처음 소집되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그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제6조).

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로 실시되는 업무로서 물품을 제공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로 실시되는 업무의 역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로 실시되는 업무로서 물품의 제공을 하며, 방위청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로 실시되는 업무의 역무의 제공에 대해 실시 요강을 정하고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의 부대 등에 그 실시를 명한다(제8조).

일본 이외의 영역(공해를 포함)에서 대응조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대응조치가 이뤄지는 지역의 근무 환경 및 대응조치의 특질에 비추어 이라크 인도적 복구 지원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4조).

대응조치의 실시를 명받은 자위대 부대 등의 자위관은 자신 또는 자신과 함께 현장에 소재하는 다른 자위대원(자위대법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대원을 말함.), 이라크 부흥 지원 직원 또는 그 직무에 수반하여 자신의 관리 하에 들어온 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기본계획에 정하는 장비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물품의 양도 또는 무상대부와 관련하여 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본부 또는 자위대에 속한 물품(무기를 제외)에 대해 국제연합 등에서 그 활동에 사용되는 차원에서 해당 물품의 양도 또는 무상 대부를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관 사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해당 신청에 관련된 물품을 해당 국제연합 등에 대한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 또는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

4. 일본 PKO법, 주변사태법,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이라크 지원법 비교

일본 자위대의 주요한 해외파병 근거법률인 PKO법, 주변사태법, 테러특별조치법을 자위대 활동의 전제, 파병지역, 무기사용, 국회 승인 및 무기 수송 여부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일본의 해외파병 관련 주요 법률 비교17)>

	PKO법	주변사태법	테러특별법	이라크 지원법
자위대 활동의 전제	- 분쟁 당사자간의 정전합의(사례: 캄보디아, 모잠비크, 르완다, 골란고원, 동티모르)	- 일본 열도 주변 불안정시 활동	- 정전합의의 전제 불필요: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후방 파병 가능	-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후방 파병 가능

17) 이 표는 민병원 외 1인, 해외파병관련 법제도의 국제비교, 국회입법조사처, 2008, 55면을 재구성한 것임.

	PKO법	주변사태법	테러특별법	이라크 지원법
파병지역	- 명시하지 않음	- 자위대를 파견하여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 - 일본 주변의 동아시아로 한정	- 명시하지 않음(세계 분쟁지역에 파병가능)	- 이라크 재건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외국의 영역, 공해 및 그 상공 중 전투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지역
무기사용의 기준	- 최소한의 방위 수준	- 방어적 사용(자신과 동료대원의 신체를 지키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무기사용)	- 방어적 사용 및 난민과 미군 등의 부상병을 방호하기 위한 무기사용 허용	- 방어적 사용(자신과 동료대원의 신체를 지키기 위한 경우) - 상관이 있는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사용
국회동의/승인	- 사전 승인	- 사전 승인	- 사후승인(자위대의 해외파병 결정 후 20일 이내에 국회의 승인)	- 사후승인(대응조치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에 승인 요청)
무기 및 탄약 수송여부	- 최소	- 작전임무에 따라 다름	- 육상수송 제외(무기 및 탄약 공수 가능)	- 자위대 부대 등이 대응조치로 실시하는 업무에는 무기의 제공은 포함하지 않음

Ⅴ. 독 일

1. 해외 파병 관련 실정법

제1차 세계대전 뿐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의 해외파병은 주변국의 주 관심 사항일 수밖에 없기에 독일 역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통독 이후 독일의 해외 파병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국

역시 이에 제지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독일이 파병시 취하고 있는 국제평화와 안보유지라는 치안유지정책에 기인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은 독일 법제도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

독일 연방국의 헌법인 기본법은 세계국가의 평화적 공존을 방해하는 데, 특히 침략전쟁 수행을 준비하는 데 적합한 행위 및 그러한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는 위헌이며, 이러한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하여 전범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침략전쟁이 헌법에 반함을 천명하고 있다.[18] 나아가 독일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전쟁수행용으로 지정된 무기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제조·수송·거래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군비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독일기본법은 군대의 지휘명령권 등은 평시에는 연방 국방장관 그리고 비상시에는 연방수상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군사조치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의회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군의 해외 파병에도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제87a조는 "(1) 연방은 방위를 위한 군대를 편성한다. 군대의 병력수와 조직의 대강은 예산안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2) 방위를 위한 경우 외에는, 기본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 라고 하려 군대 파병시 의회의 입법권을 통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방 의회에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고 이를 위해 국방전권위원을 보조기관으로 두어 법률로 그 통제를 명문화하고 있다.[19] 기본법에서 독일 연방이 자위권 행사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무력공격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위협상태에 있다는 존재확인 자체를 행정부가 아닌 연방의회 의원 재적 2/3의 투표로서 확인하고 해당 확인은 대통령이 연방 법률로서 공포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무력사용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두고 있다.[20]

그리고 상호집단안전보장체제 가입에 대하여 연방은, 가입시 유럽 내 및 세계 각국 간에 평화적이고 항구적인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권제한에 동의한다고 하여 국제평화를 위해서만 상호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21]

18) 독일기본법 제26조 1항.
19) 동법 제45a조 및 제45b조 참조.
20) 동법 제115a조 참조
21) 동법 제24조.

2. 1994년 독일헌법재판소의 해외파병 합헌 판결

실정법 외에 독일 연방사법부는 행정부의 군사조치를 통제하고 있는 바, 예컨대 소말리아와 유고에 UN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데 있어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판결을 통해 독일 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상 자위권 발동 및 집단적 안보조치를 위한 파병 외에 군대 파병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독일이 침략전쟁을 재현하는 것에 대한 법적 판결을 통해 재확인하고 있다.

동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은 평화수호를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유럽 내 및 세계 각국간 평화적이고 항구적인 질서를 초래하고 보장할 자신의 고권제한에 동의한다"는 기본법 제24조 2항이 집단안전보장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방군의 파병의 헌법상의 근거조항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방위를 위한 경우 외에는, 기본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군대가 투입될 수 있다"는 제87a조의 제2항이 안전보장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장전투병력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동 판결문은 독일 기본법이 연방 정부에게 전투병의 해외 파병시 원칙적으로 선결적으로 연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투병의 해외 파병 형태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집단적 방위동맹 역시 엄격하게 평화유지의무로 간주되는 경우 기본법 제24조 2항에 따라 상호집단안보체제의 하나로 간주된다고 하였으며, 나아가 입법부가 상호 집단안전보장체제에의 편입에 동의한 경우 해당 동의는 집단안전보장체제 하 군사령부의 지휘하에서 이루어지는 군사작전에 대한 참여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됨을 설시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 연방군의 해외 파병을 가능토록 한 동 판결문을 기점으로 연방의회의 과반수 찬성과 함께 구 유고연방지역에서 NATO의 평화임무와 지원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96년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UN PKO에도 참여하였다. 동 판결문을 근거로 독일은 PKO 뿐 아니라 다른 파병 요인에 대한 대응 역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3. 독일의 파병현황

독일에서 국방(Verteidigung)개념은 자국민의 안전과 국경방위라는 국내적 개념에 한정되지 않고, 동맹국 지원 또는 다국적 협력 등으로 인한 파병(Truppenabzung) 등으로 그 범위가 국제적 병력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독일연방군의 국제적 투입에 대한 합의(Vereinbarkeit)는 집단안정보장체제(System kollektiver Sicherheit)의 범위 내에서 이행될 수 있으며, 연방군 파병의 합헌성은 파병동의권을 갖는 독일연방의회 그리고 파병이 기본법상 허용되는 사항인지에 관한 법해석기관인 연방헌법재판소를 통해 논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독일연방군의 해외파병은 유엔헌장에 따른 분쟁방지 및 전쟁극복 또는 동맹국과 협력이란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연방군의 파병형태는 크게 국제원조(Internationale Hilfe), 재해상황 지원(Katastrophenfront), 평화유지(Friedensschaffende Einsätze)으로 분류되어 있다.

<2013년 현재 수행중인 독일연방군의 해외파병 현황>

부 대	작전지역	파병인원
ISAF[22)] (International Security Assistance Force)	아프가니스탄(Mazar-e Sharif 외 2곳) 우드베키스탄(Termez)	4,925
KFOR[23)] (NATO-Sicherheitstruppe Kosovo Force)	코소보	1,535
Atalanta	아프리카 북동부 소말리아 해역 (Horn of Africa)	295
UNIFIL[24)]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레바논	235

22) 아프카니스탄 파병군 참조사이트: http://www.isaf.nato.int/
23) 코소보 파병군 참조사이트: http://www.aco.nato.int/kfor.aspx
24) 레바논 파병군 참조사이트: http://www.un.org/en/peacekeeping/missions/unifil/

부 대	작전지역	파병인원
AF TUR[25)] (Aktiv Fence Turkey)	터키	400
UNAMA[26)] (United Nation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	1
EUFOR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10
UNMISS[27)] (United Nations Mission in the Republic of South Sudan)	수단	30
UNAMID[28)] (United Nations-African Union Hybrid Mission in Darfur)	수단	10
EUSEC[29)] (Europäische Union (EU) im Rahmen der Reform des Sicherheitssektors in der Demokratischen Republik Kongo)	콩고	3
Active Endeavour[30)]	지중해	185
EUTM[31)] (European Training Mission for Somalia)	소말리아	6
합 계		7735

25) 터키 파병군 참조사이트: http://www.nato.int/
26) 아프카니스탄 파병군 사이트: http://unama.unmissions.org/
27) 수단 UNAMA 참조사이트: http://www.un.org/en/peacekeeping/missions/unmiss/
28) 수단 UNAMID 참조사이트: http://www.un.org/en/peacekeeping/missions/unamid/index.shtml
29) 콩고 파병군 참조사이트: http://www.auswaertiges-amt.de/DE/Europa/Aussenpolitik/GSVP/Missionen/EUSEC-RD-Congo.html?nn=363308
30) 지중해 파병군 참조사이트: http://www.bundeswehr.de/portal/a/bwde/!ut/p/c4/DcoxDoAgDEbhs3gBurt5C3Ur8Mc0QjFQIfH0krd8w6OTZspdLjYpyol2OoKsfjg_IhxEG8M-uCytzQM6ZYaUgeo4mHRAI7iXt9Jzb8sPI1a-yA!!/
31) 소말리아 파병군 참조사이트: http://www.eutmsomalia.eu/

Ⅵ. 프랑스[32)]

1. 헌법적 근거

군과 관련된 프랑스 헌법의 규정을 살펴보자면, 프랑스 헌법 제15조는 “공화국 대통령은 군의 통수권자이다. 대통령은 국방최고회의 및 국방최고위원회를 주재한다.”고, 프랑스 헌법 제20조는 “정부는 군대를 통솔한다.”고, 프랑스 헌법 제21조 제1항은 “수상은 정부의 활동을 지휘한다. 수상은 국방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수상은 법의 집행을 보장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상은 행정입법 제정권을 행사하며, 일반공무원 및 군공무원을 임명한다.”고, 프랑스 헌법 제35조는 “① 전쟁선포는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한다. ② 정부는 해외에서 군대를 개입시키는 결정을 늦어도 개입개시 후 3일 내에 의회에 통지한다. 정부는 군대개입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정부의 통지는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표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③ 군대개입의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할 때, 정부는 의회에 군대개입연장의 승인을 구한다. 정부는 하원에 최종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만약 4개월의 기한의 만료시에 의회가 회기중이 아닐 경우, 결정은 다음 회기에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은 규범상으로는 군대에 대한 권한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수상의 권한간에 어느 정도 충돌가능성 또는 모순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적 관행은 동거정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대의 전체적인 조직 및 전략적 사용의 면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우선하는 것으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 제15조에 따라 프랑스 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요구나 프랑스의 국익과 관계된 협력을 위해서 프랑스 군대를 해외로 파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다른 여러 민주주의 국가 - 독일, 영국, 미국 - 와 달리 프랑스의 경우 군대의 해외 파병의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적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 즉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제35조에서 전쟁의 선포의 경우에만

32) http://www.defense.gouv.fr/(프랑스 국방부); Jean Gicquel/Jean-Éric Gicquel,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Montchrestien, 2009.; Bernard Chantebout, Droit constitutionnel, Sirey, 2009.

국회의 사전통제를 규정할 뿐이며, 오늘날 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이 규정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즉, 프랑스의 경우 제35조에 따라 해외에 군대를 파병한 후 3일 내에 의회에 군대개입의 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그 기간이 4개월을 초과할 경우에 하원에 연장을 요구할 뿐이다.

2. 프랑스 군의 아랍에미레이트 파병에 관한 사항

2008년 1월 15일 프랑스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였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프랑스 군대를 상설적으로 배치하는 데 대한 정부간 합의(accord intergouvernemental)를 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아랍에미레이트에는 프랑스군의 육·해·공군 연합참모본부 및 700명의 육해공군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50명은 상설배치부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의 주요임무는 ⅰ) 양국간의 군사적 협력을 증진시키며, ⅱ) 아랍에미레이트에 방어의 범주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보장하며, ⅲ) 걸프만 및 인도양 북부에서 전개되는 군사적 능력을 뒷받침하며, ⅳ) 걸프만 및 인도양 북부 지역의 통행선박을 뒷받침하는 것 등이다.

프랑스 군대의 아랍에미레이트 파병의 직접적인 근거는 양국간의 협정 즉, “2009년 5월 26일에 아부다비에서 조인된 프랑스 정부와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간의 국내 안전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서”(Accord de coopération en matière de sécurité intérieure entre le Gouvernement de la République française et le Gouvernement de l'Etat des Emirats arabes unis, signé à Abou Dabi le 26 mai 2009)이다. 그러나 이 협정서는 아직 프랑스 상원과 하원의 1독회만을 거친 상태로, 아직 최종적 프랑스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다. 다만, 2009년 프랑스의 아랍에미레이트로의 군대파견은 그 당시 대통령인 Nicolas Sarcozy에 의하여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이루어졌다.

Ⅶ. UAE 파병에 관한 비교연구

1. 해외 주요국 UAE 파병의 근거

UAE는 중동의 분쟁지역인 이라크나 이란 또는 북아프리카 분쟁지역과는 달리 국내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테러 혹은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UAE에 파병하는 국가는 없으며, 지역안보 차원의 국방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파병이거나,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 분쟁지역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지역안보의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적 관점의 파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UAE 지역 주둔 목적의 파병이 이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국가의 파병은 UAE가 가지는 중동지역의 국가적 위상과 자연자원 등의 경제적 협력방안의 강화 등의 일환으로 국방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UAE내 외국군 주둔 사례>

국 가 명	인원(2011년 기준)/명	비 고
미 국	1,700	5,000명(2013년 현재)
캐나다	250	700명(2013년 현재)
호 주	390	
프랑스	500	
이탈리아	100	
네덜란드	50	
뉴질랜드	약간명	
영 국	약간명	
독 일	약간명	
스웨덴	약간명	
계	약 3,000	

2013년 현재 UAE에 군을 파병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이며,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

다. 미국은 약 5,000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33], 현재에는 주로 페르시아만 및 아프가니스탄의 미군작전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라크전 당시에는 UAE 주둔군이 이라크전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미군의 UAE 주둔의 법적 근거는 미국과 UAE간 체결한 방위협력협정(94.07.25. 체결, 비공개)이다. 이 협정은 행정협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미 연방의회의 동의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대통령이 직접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포함하여, 미국이 현지 시설을 사용할 권한과 사용조건, 해당 시설의 운영 관리 및 유지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즉, 주둔군 지위협정(SOFA)은 협정 당사국 간에 일국의 영토 내에 일 당사국의 군대가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군사파병 근거협약이다. 국제법에 의하면 자국 군대의 타국 내 체류 자체는 국제법위반사항이나, 상대국 동의 국제법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어, 상대국의 동의하에 군대를 체류토록 하는 SOFA는 가장 확실한 자국 군대의 해외파병의 근거가 된다. 문제는 해당 SOFA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나, 이는 국가별 헌법 및 법률 체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SOFA는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행정부의 재량 범위내에서 체결할 수 있는 소위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군의 해외 파병 및 외군 군대의 국내 주둔 역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SOFA 체결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미국의 경우 전쟁선포 외에 외국의 군대파병에 대해 별다른 헌법상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상 개전권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는 미국은 1) 전쟁 개시와 함께 해외에 군대를 파병하는 경우 명백히 의회의 개전권을 요하며, 2) 전쟁 목적의 전투병 파병의 경우 War Power Resolution에 의거 파병이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요하며, 3) UAE와 같이 전쟁 지역이 아닌 곳에 SOFA협정 체결을 통해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요약컨대, 미국은 전쟁지역이 아닌

33) Kenneth Katzman, “The United Arab Emirates (UAE):Issues for U.S.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March 18, 2013

34) Sami Hajjar, “U.S. Military Presence in the Gulf: Challenges and Prospects”, U.S. Army War Colleg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arch 2002, p. 41.

UAE에 군대를 파병하였을 당시, 별도의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1994년에 기 체결되어 있었던 SOFA를 통해 군대를 파병하였다.

프랑스 역시 2013년 현재 UAE에 약 700명 정도의 육해공군이 배치되어 있다. 프랑스의 UAE 파병의 법적 근거는 양 정부간에 2009년에 체결한 협정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UAE에 있어서 프랑스군의 주요임무는 1) 양국간의 군사적 협력을 증진시키며, 2) 아랍에미레이트에 방어의 범주 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보장하며, 3) 걸프만 및 인도양 북부에서 전개되는 군사적 능력을 뒷받침하며, 4) 걸프만 및 인도양 북부 지역의 통행선박을 뒷받침하는 것 등이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파병은 의회의 동의 없이 협정을 근거로 대통령령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협정이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협정인지에 관한 정치적 논쟁이 있다.

그 밖에 캐나다, 호주, 영국 등도 법제적 차이가 있지만, UAE 파병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동의 없이 정부 간의 협정을 근거로 행정부의 단독결정으로 파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UAE에 군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내법적 절차를 보면, UAE가 비분쟁지역이며 파병의 주된 목적이 전투나 분쟁해결이 아니라 지역안보 지원 또는 군사적 협력증진이라는 점에서 양국 정부 간의 행정협정을 통하여 UAE의 요청을 받아 상호간에 협의된 범위에서의 군사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군사적 활동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라는 것은 군사 활동에 있어서 전쟁 또는 전투가 이루어지는 분쟁지역의 안정화 등을 위한 파병에 한정된 예외적 절차이며,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군의 활동에 관하여는 의회가 간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2. UAE 파견 연장에 관한 국회 동의여부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가 UAE의 요청에 따라 UAE 군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활동은 전투나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 활동이 아니라 통상적인 국방외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즉, 우리나라와 UAE 정부간의 정부간 양해각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군

의 UAE 파견활동이 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특정한 경제적 교류과정에 논의된 것이라 할지라도 군의 해외파견 자체는 정부간의 확대된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외교활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국방외교는 일시적이고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평화유지활동과는 달리 양국 정부간의 국가협약 또는 양해각서 등으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이라는 점이다.

현재 군의 해외파견에 대하여 헌법이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통상적 국방외교를 목적으로 하는 군의 해외파견 역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정활동의 일환이다. 다만,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회가 동의시에 재동의 기간에 관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적인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필요하며 파견 당시 국회의 동의에 갈음하여 계속 파견이 가능할 것이다.

만약 국회가 계속 이러한 국방외교활동에 관한 감독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유엔 PKO 법과 같이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구체적인 승인 또는 동의절차와 동의 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정 법률에서 동의기간을 원칙 1년 예외 2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을 입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동의여부 역시 1차 동의가 이루어진 해외파견의 경우, 조건으로 붙여진 동의기간의 도래에 따라 행정부에서 재동의의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동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국방외교라는 통상적 국방활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방외교 차원의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군의 해외파견활동은 계속파견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 조건부 동의 역시 본질적인 요소의 변화에 따라 파견의 종료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파견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동의여부도 이러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동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국회가 명확하게 행정부에 제시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 명확한 이유

와 내용을 제시하여야 상대국에 파견종료에 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국가별 비교>

국가명	파견근거 및 절차	비 고
국제법	- UN 헌장 ·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제51조) · 안보리 결정에 따른 무력사용 조치(제42조) · 구 적국 침략대비 조치(제53조) - 국제관습법 · 예방적 또는 선제적 자위권 · 인도적 개입 · 자국민 또는 해외 자국공관 보호를 위한 무력조치	
미 국	- 미연방헌법 · 의회의 전쟁선포권(제1조제8항) · 대통령의 군통수권(제2조제2항) - 전쟁권한결의(War Power Resolution of 1973) : 의회동의 없는 파병 통제법 · 대통령의 의회동의 없는 긴급파병결정을 인정 · 48시간 이내 의회 통보 · 60일 초과시 의회의 전쟁선포 또는 의회의 군 사용허가가 필요 -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s 25(대통령 결정 지침, 1994) · PKO 등을 포함한 해외군사활동에 관한 파병원칙 · 파병에 관한 엄격기준과 원칙을 제시 · 파병에 따른 이익형량, 필요성, 여론과 의회동의, 지휘권 등의 문제 검토	
일 본	- 일본헌법 : 제9조(평화헌법), 해외파병금지 · 80년 이후 군사대국화와 해외파병 지원 - 해외파병관련 법률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1992) : 파병 5대 원칙, 국회 승인과 연장승인, 실시계획의 수립 등 · 주변사태법(1999) : 주변국 긴급사태시 파병기준과 절차 · 테러특별조치법(2001) : 대테러 활동지원 법률 · 이라크 부흥을 위한 특별조치법(2003) : 인도적 지원과 안전확보 지원 활동	

국가명	파견근거 및 절차	비 고
독 일	- 독일기본법 · 침략전쟁 부인(제26조제1항) · 무기거래 허가제(제26조제2항) · 파병에 관한 의회승인 - 연방헌재 판결(1994) · 의회의 승인을 받은 해외파병은 합헌 결정 - 해외파병에 관한 결정시 의회의 관여사항에 관한 법률(Parlamentsbeteiligungs-gesetz, 2005) · 해외파병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위한 의회절차법	
프랑스	- 프랑스 헌법 · 대통령의 군통수권(제15조), 정부의 군통솔권(제20조) · 전쟁선포 의회 사전 승인(제35조제1항) · 파병 결정 후 3일 이내에 의회 통지(같은 조 제2항), 4개월 초과시 군대 개입연장 승인(제3항) - 군의 해외파병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지 않음	
영 국	- 불문헌법 국가로 별도의 헌법규정 없음(의원내각제) - 정치적 사안으로 필요시 의회 의결로 결정 - 파병 결정은 내각에서 결정 : 의회 또는 야당과 협의 또는 통보 - 파병시 필요한 경우 정부간 군사협정 체결	

<국가별 비교 UAE 파견현황 및 법적 근거>

□ 파견현황 : 5개국 3,300여명

국가명	파병인원	주둔 근거/절차
미 국	1,700여명	- 주둔 근거 : 방위협력협정(94.07) - 절차 : 대통령의 파견결정(국회동의 불필요)
영 국	150여명	- 주둔 근거 : 국가간 행정협정(미공개) - 절차 : 내각의 파견결정(국회동의 불필요)

국가명	파병인원	주둔 근거/절차
프랑스	650여명	- 주둔 근거 ・프랑스-UAE간 전략적 동반자 협정(1995) ・양국간 국내 안전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서(2009.5.26.) - 절차 : 행정부의 파견결정(국회동의 불필요) * 협정서 국회 동의에 관한 정치적 논쟁은 있음
호 주	800여명	- 주둔 근거 : 호주-UAE간 방위조약(2008.6.4.) - 절차 : 내각의 파견결정(국회동의 불필요)
뉴질랜드	수십명	- 주둔 근거 : 국가간 행정협정(미공개) - 절차 : 내각의 파견결정(국회동의 불필요)

※ 캐나다 : 01~10년 까지 파병(250여명), 11년 철수(외교적 불화)

※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병은 행정부의 전속적 권한으로 국회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근거로 파병결정 및 주둔

제 4 장 입법안에 대한 검토

Ⅰ. 헌법적 논의

1. 논의의 출발점

(1) 군사활동의 개념

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그 사명으로 무장활동을 하는 국가조직이다. 군의 활동은 전쟁과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및 비군사적 활동으로 구분된다. 전쟁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에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상대의 의지를 강제하려고 하는 행위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 종래에는 무력행사를 수반하는 국가간의 투쟁을 전쟁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쟁은 비단 국가간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한 국가집단 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내란에 있어서도 내란을 일으킨 정치단체가 정당한 교전단체로 인정되면 국제법상으로 정식적인 전쟁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와 달리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Military Operration War)은 전쟁과 구분되는 분쟁시나 평시에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즉, 평시는 물론 분쟁시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지역안전을 증진시키는 제반 군사활동으로서 소요진압작전, 무력시위, 민간지원작전, 평화유지작전 등 군사적 작전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군사활동은 장소적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적극적 전투행위는 물론 소극적 방어행위와 작전 등 비전투행위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군사활동과는 별도로 군이 평시에 군사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비군사적 행정활동이 있다. 이러한 비군사적 행정활동은 일반적인 민원적 성격의 행정활동이나 대민지원활동, 교육활동, 외교활동 및 국제적 교류협력활동 등이 있다. 이러한 비군사적 행정활동은 군이 수행하는 활동이지만, 본질적으로 행정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과 법령의 근거에 따라 행정계획의 수

립, 행정집행행위 등 국방부장관의 지휘아래 수행하는 제반 군의 행정활동을 의미한다.

군사활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위한 것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견제와 절차가 요청된다. 이에 반하여 비군사적 활동은 법령의 범위안에 있는 일반적 행정활동의 영역으로서 군사활동 보다 자율적이고 재량적인 영역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라고 할 것이다.

<table>
<tr><th colspan="5">군사활동</th><th colspan="2">非군사활동</th></tr>
<tr><td colspan="2">전 쟁</td><td colspan="3">전쟁이외의 군사활동</td><td colspan="2" rowspan="2">무관 · 군사전문가 · 교육파견,
연합훈련, 외국군 훈련참관,
교육훈련, 재난구조 등</td></tr>
<tr><td>침략
전쟁</td><td>자위
전쟁</td><td>진압
작전</td><td>평화유지
작전</td><td>민사
작전</td></tr>
<tr><td rowspan="2">위헌
여부</td><td>합헌</td><td colspan="3">합헌(국제평화에 기여)</td><td colspan="2">합헌</td></tr>
<tr><td colspan="4">국회동의 필수</td><td>국회동의
필요활동</td><td>국회동의
불필요활동</td></tr>
</table>

* 인도적 지원행위는 활동의 성격이 아니라 활동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사활동 · 비군사활동 모두 가능한 영역임.

(2) 군의 해외파견

군은 국토방위를 위한 국내에서의 군사활동은 물론 국가안전보장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해외파견활동도 당연히 군사활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헌법도 제5조와 제60조제2항에서 해외에서의 파견활동을 당연한 군의 활동영역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군의 해외에서의 활동은 무력을 보유한 조직의 특수성과 각국의 주권적 성격으로 국내에서의 활동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군의 해외에서의 활동은 크게 나누어 전쟁을 위한 파견활동, 전쟁 이외의 파견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전쟁을 위한 파견활동은 해외에서 전쟁수행을 위한 파견활동으로서 자위적 전쟁이 아닌 침략적 전쟁은 헌법위반으로 위헌적 군사활동으로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활동이다. 즉, 이러한 전쟁을 위한 파견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자위적 전쟁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합헌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쟁 이외의 파견활동은 그 범위와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양한 외교적 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의 적절한 역할의 요구로 평화유지활동, 인도적 지원활동, 개별국가간의 군사적 교류협력에 관한 요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군의 해외파견활동은 유엔 등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요청하는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등 집단안보체제에 기반한 군사활동 및 군의 국제교류협력에 따른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활동은 군사활동의 의미하지만, 국제교류협력활동의 경우에는 군사활동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군사활동을 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 · 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다국적군평화활동은 UN 안보리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조제7호). 이 활동은 국제적 분쟁지역의 안정화를 위한 군사활동으로서 전투 · 공병 · 의료 ·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제교류협력활동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 파견과 개별국가의 요청에 따른 외교적 군사교류협력을 위한 군의 제반활동을 포괄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제교류협력활동은 주체가 군이라는 특수성을 가지지만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국가간 교류협력의 성격을 가지는 외교활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그 활동에 있어서 유엔 등 국제기구와 개별국가 외교활동을 위한 군사전

문가 및 무관의 파견, 군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파견, 외국에서의 군사훈련 참관과 공동훈련, 해외방위사업 등 일상적인 해외교류협력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미 연합 연습(출처 : 2012 국방백서 p.327)>

구 분	형 태	목 적	내 용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군사지휘소 및 정부연습	· 현재 또는 미래의 연합방위체제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 절차 연습 ·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대비 한국 합참·주한미군사령부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 능력 배양 · 충무계획 및 전쟁수행예규 수행절차 숙달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주요 지휘관 세미나 · 군사협조기구 운영 연습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 (KR/FE)	지휘소 연습 및 야외기동훈련	· 현재의 연합방위체제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절차 연습 · 미 증원전력 한반도 전개 보장 및 한국군 전쟁지속 능력 유지	· 위기관리 절차 연습 · 전시전환 절차 연습 ·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 연합작전지역 내 수용, 대기, 전방이동 및 통합절차 숙달 · 주요 지휘관 세미나

<한국군 합동 연습 및 훈련(출처 : 2012 국방백서 p.327)>

구 분	형 태	목 적	내 용
태극연습	전구급 지휘소 연습	· 합참의 전구작전 수행 능력 구비	· 합참의 위기관리, 전시전환, 작전수행절차 연습 · 합동임무필수과제 및 관련 참모부 지원과제 연습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작전수행 체계 구축 및 능력 향상
호국훈련	전구 및 작전사급 대부대 합동훈련	· 합동성 중심의 작전 수행 능력 제고	· 전구작전계획 개념하 지·해·공 동시 통합훈련 · 작전사별 합동성이 요구되는 핵심훈련과업 숙달 · 합동작전 수행 능력 숙달
화랑훈련	후방지역 종합훈련	· 전·평시 후방 지역에 대한 작전 수행 능력 제고	· 전·평시 연계된 작계시행 절차 숙달 ·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인

<연합훈련(출처 : 2012 국방백서 p.328)>

구 분	시 기	참가국	내 용
연합상륙전훈련	연 1회	한국, 미국	· 탑재 / 선견부대 작전, 입체적 상륙 돌격 · 해상기동, 해상 화력지원훈련 · 육상작전(해안교두보 확보 / 방어) · 통합화력운용
연합대잠전훈련 (ASWEX)	연 2회	한국, 미국	· 잠수함 추적, 공격훈련, 어뢰발사 모의훈련 · 대잠자유공방전훈련
코브라골드훈련 (Cobra Gold)	연 1회	한국, 미국, 태국	· 연합 상륙작전, 지휘소훈련 · 전술기동훈련, 해상공수 · 안정화 작전
환태평양훈련 (RIMPAC)	격년제 (짝수년도 6~8월)	한국, 미국, 호주, 칠레, 영국, 일본, 캐나다, 페루 등	· 해상공방전, 해상교통로 보호 · 해상 차단 및 항공강습, 함포사격훈련 · 유도탄 및 어뢰발사훈련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 (Pacific Reach)	3년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 잠수함 승조원 탈출 및 구조훈련
한미 잠수함전훈련 (GUAMEX)	격년제 (홀수년도)	한국, 미국	· 잠수함대 잠수함훈련 · 공격기뢰 부설
연합 대잠해양탐색훈련 (SHAREM)	연 1회	한국, 미국	· 대잠환경자료 수집 및 탐지장비 성능 측정 · 대잠자유공방전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 (SAREX)	격년제 (홀수년도)	한국, 일본	· 기본전술훈련 · 조난 항공기, 선박 수색 및 구조훈련
한반도 작전준비태세 연습 (PENORE)	연 2회	한국, 미국	· 긴급 항공차단작전 / 근접항공지원작전 · 대화력전훈련
연합 공격편대군훈련 (CLFE)	연 2회	한국, 미국	· 공격편대군 전력 중고도 침투훈련 · 침투 간 생존 및 임무 수행 능력 향상 · 유사목표를 임의 선정, 타격 절차 숙달
대규모 항공전역종합훈련 (Max Thunder)	연 2회	한국, 미국	· 공격편대군 전력 중고도 침투 및 요격훈련 · 유사목표를 임의 선정, 실전적 공격 절차 숙달
쌍매훈련 (Buddy Wing)	연 7회	한국, 미국	· 한미 공군 전투비행대대 간 상호 교환방문훈련 · 신(新) 전술 습득, 연합작전능력 향상
태평양 공군 연합전술훈련 (RED FLAG–Alaska)	격년제	한국, 일본, 싱가포르, 태국, 호주, 영국, 프랑스 등	· 저고도 침투 및 화물투하훈련 · 비포장 활주로 전술 강습훈련 · 조종사 및 승무원의 공중침투훈련
연합대테러훈련 (Vector Knife)	연 1회	한국, 미국, 러시아	· 레펠 / 등반훈련, 대테러 특공사격 · 내부소탕훈련(건물, 열차, 항공기 등) · 사제폭발물 처리, 종합모의훈련
연합 비정규전훈련 (Balance Knife)	연 1회	한국, 미국	· 한미 비정규전 작전 수행 능력 배양 · 비정규전 교리 발전

(3) 국가안전보장의 개념

헌법적 관점에서의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등과 같은 국가적 안전의 유지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목적으로서의 개념으로서 국내적용을 위한 개념에 한정된다. 하지만 군사적 관점에서의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동원해서 국가존립에 대한 취약성과 위협을 방지 및 제거하고, 국가존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강화 및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군사적 관점의 국가안보는 국내적 지역안보는 물론 국제적·세계적 안보의 개념을 의미한다. 즉, 현대에 있어서 국가안보는 일국가안보의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 국가안보의 개념으로 확대되는 것이며, 이러한 포괄적 안보는 군사적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국내외 전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NATO, ANZUS, NPT, PSI, MTCR, PKO, 다국적군 등 다양한 안보체계가 등장하여 지역안보, 핵, 환경, 경제위기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그 내용이 국가안보의 새로운 내용으로 구축되고 있다. 국가안보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영역·분야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국가안보의 대상별 분류는 개인(Individual)안보·국가(National)안보·세계(Global)안보·정권(Regime)안보·지역(Regional)안보로 나눌 수 있으며, 영역별 분류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인간·환경·과학기술안보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안보분야별 분류는 양자(Bilateral)·다자(Multilateral)·집단(Collective)·협력(Cooperative)·동맹(Alliance)·공동(Common)안보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국내적 안전유지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는 적절한 접근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지역안보와 국제안보는 물론 다양한 외교적·국제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포괄적 안보개념에 비추어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단순한 경제적 지원과 같은 민간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국

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군에 요구하는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활동은 직접적인 군사적 활동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과학기술과 같은 비군사적 활동분야에 있어서 군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해외파견을 위한 헌법적 논의

(1) 헌법 일반이론

우리나라 헌법 제5조는 국군에게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부여하면서,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전쟁은 금지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침략이란 일국에 의한 타국의 주권·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한 무력행사 또는 유엔헌장과 모순되는 방법에 의한 무력행사를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전쟁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제60조제2항에서는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하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정부 내부의 절차로서 대통령의 최종결전 이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군사활동과 관련한 헌법원칙에 비추어 군은 국가원수이며, 최고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침략전쟁이 아닌 자위적 전쟁을 위한 선전포고와 해외파견 및 외국군 주둔의 문제에 관하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와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를 거쳐서 군의 활동에 관한 군외부의 감시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선전포고와 강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사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은 명백하다. 이는 전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대국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회에 선전포고에 대한 승인권 또는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군의 해외파견이나 외국군의 주둔허가에 관하여는 어떤 경우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사

항은 헌법규정의 문언적 해석의 범위에 한정한 견해만이 주장되고 있으나, 이것은 헌법해석의 개방성과 추상성에 비추어 그 범위를 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즉,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이라는 의미는 국회의 동의와 관련한 조문에서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선전포고와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은 군사활동에 있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해석이 될 수 있다. 파견과 주둔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은 군사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군의 해외파견과 외국군 주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군사활동의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비군사적 활동이나 외교활동을 전제로 하는 국군의 해외파견의 경우에는 국회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엔 등 국제기구에 현역군인인 군사전문가의 파견, 재외공관에의 무관파견, 외국에의 교육파견,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작성, 해외방위사업을 위한 무기와 병력의 파견, 외국군대의 훈련참관을 위한 파견, 외국에서의 외국군대와의 합동훈련을 위한 파견, 교류 및 교육과 훈련을 위한 해군함정의 해외 영해와 항만에의 출입 등 일반적인 군사행정상의 필요에 따른 활동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등의 부수적 절차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비군사절 행정활동 사항은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계기관과의 협조아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군의 군사활동과 관련하여 위헌 등의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침략전쟁과 침략전쟁 유사의 군사활동의 경우에 한하여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 침략전쟁과 자위전쟁을 구분하여 위헌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별전쟁의 성격을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전쟁의 성격이 판단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판단되겠지만, 국회의 동의과정과 국민여론 등에 따라 그 정당성이 판단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최후적인 법리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정당의 위헌주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당사자 적

격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안을 각하하였다. 즉, 해외파병에 관한 본안판단은 유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엔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 활동과 같은 해외파병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위헌성의 판단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교류협력활동의 경우에는 집행의 정당성의 근거로서의 법령의 존재 유무가 문제될 수 있지만, 활동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위헌성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군의 국제교류협력활동에 관하여는 법령의 미비에 관하여 비판할 수 있으나, 위헌성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라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 판례와 위헌논쟁

독일은 독일기본법의 해석원칙과 기준에 비추어 군의 해외파병활동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규범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국회 동의를 위한 절차법을 법률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와 의회의 해외파병활동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합헌적 활동임을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라크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2003헌마225), 일반사병이라크파병 위헌확인(2003헌마814), 국군부대 이라크주둔 위헌확인(2004헌마508) 등의 헌법소원청구소송이 있었다.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2003헌마223)결정의 경우 법정의견은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였으며,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2003헌마814)결정의 경우 법정의견은 통치행위이론을, 별개의견은 자기관련성 없음을 이유로 각하를 하였으며, 국군부대 이라크주둔 위헌확인(2004헌마508)의 경우는 파견된

국군을 주둔시키는 행위는 독자적인 공권력 작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개별적인 청구요건과 답변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헌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라크 파병이 미국의 대이라크 침략전쟁임을 전제로 침략전쟁이 이루어지는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에 피청구인은 이라크전쟁은 유엔안보리 결정에 따른 군사적 조치이며,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적 군사활동으로서 다국적군 활동이며, 국제평화를 위한 자위적 군사활동이므로 합헌임을 주장하고 있다.

즉, 헌법논쟁은 전쟁의 성격이 침략적인가의 여부에 관한 논쟁이며, 침략전쟁인 경우에는 위헌이며, 자위적 국제평화를 위한 활동이면 합헌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해외파병의 정당성을 위한 판단은 정책결정권자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때, 해외파병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면서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위적 군사활동을 위한 재량적 활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 될 것이다. 즉, 고도의 정치적·외교적·군사적 결단이 요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사법기관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사법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사법소극주의의 입장).

3. UAE 해외파견과 헌법적 논의

(1) UAE 해외파견의 법적 근거

먼저 헌법 제5조의 국제평화에의 기여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임을 그 법적 근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군사적 전투행위를 전제로 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국방외교와 협력은 우리나라의 군사적 역량을 대외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활동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UAE 국내적 안정은 물론 중동지역의 군사적 억지력을 통한 평화정착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헌법상의 원칙에 맞는 군의 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UAE 해외파견은 우리나라와 UAE간의 군사협력협정에 따라 UAE 군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약 150여명의 군인을 UAE 현지에 파견하였다.

이 경우 논의될 수 있는 법리적 문제는 군사협력협정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며, 교육과 훈련을 위한 군의 해외파견이 기존의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활동 및 국제교류협력활동과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군사협력협정은 정부간 행정협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양 국가의 국방 관련 교류협력에 상호 협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요하지 않는 국가간 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 협정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들어 위헌 또는 절차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주장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헌법 제60조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등에 관한 사항은 국제협정의 성격을 불문하고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군사협력협정의 내용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거쳐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군사협력협정의 내용과는 별도로 군사교류와 협력의 범위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국회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2) UAE 해외파견의 법적 성질

UAE 파병은 본질적으로 상호간 교육과 훈련을 위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의 교류협력활동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냐 하면, 일반적인 국제교류협력활동의 경우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경우에는 법령에 정해진 소수의 인력만을 파견하는 개인파병이거나, 일반적인 참관이나 훈련의 경우 대규모인 경우에도 일시적이고 기간이 정해진 잠정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군사적 행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UAE 파견의 경우에는 파견의 성격은 국제교류협력활동이지만, 규모와 기간 및 무장의 정도 등을 볼 때는 일반적인 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 활동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새로운 유형의 군의 해외파견 형태임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UAE 파견을 위하여 국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한 것은 해외파견의 규모와 기간 등 통상적인 국제교류협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논란을 사전적으로 불식시키고 법적 효력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하고 올바른 조치라고 할 것이다. 즉, 정부에서는 파견의 성격만으로 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파견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견을 들어 파견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것이다.

(3) UAE 해외파견의 목적

(가) 국제교류협력에 기여

UAE 파견의 제1차적 목적은 우리나라와 UAE간의 군사적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국간의 군사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군사적 우호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UAE에서 우리나라에 국방외교협력의 일환으로서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군의 다양한 활동 중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수한 우리 군의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수출하고 우리 군의 작전수행 등에 관한 경험을 해외에 보여줌으로써 군의 국방능력을 대외적 발휘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UAE의 요청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증가와 경제적·문화적 효과와 함께 군사외교적 위상 증대에 따른 현상이며,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그동안 선진 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가에 지원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는 국가적 현상이 군사부문에서도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이러한 국제교류협력은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한류로 통칭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바, 군사부문 역시 이러한 역할의 확대를 국내외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국방외교·협력의 외연확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력적 군사관계를 증진하여 한반도 안보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하고, 그 외연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국방부의 미래지향적 국방정책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자간 교류협력에서 벗어나 다자안보협의체와 국제협력기구에 적극 참여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국제사회로부터 요청받고 있는 것이다.

UAE 해외파견 역시 국방외교·협력의 일환으로서 중동지역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동의 요르단과의 국방협력협정의 체결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리비아, 카타르 등 다른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다양한 형식으로 확대하고 있다. 즉, UAE 해외파견은 이러한 국방협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규모와 기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사적 활동을 동반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 활동과는 차별화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국방외교적 관점의 국방교류협력활동은 세계화에 따른 국가적 역할증대의 한 모습이며, 안보의 국제적 다양성 확보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개별국가의 요청은 경제적·문화적·사회적 부문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군사적 영역에 있어서 다양한 요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적 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나) 국가안전보장에 기여

국가안전보장은 국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같은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외교활동을 통한 안전보장의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존속을 위한 필수적 활동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은 국가의 대외적 협력과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현대 국가의 존속은 국가내 자급자족적 경제활동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자원·경제 등 대외적 활동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자원과 에너지 확보 등과 같은 경제적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의 군사력의 활용하는 것은 군의 중요한 활동영역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안보는 군사적 관점에 있어서 영토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지구적 안보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의 군사적 안정화

정책은 곧 개별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평시의 외교적·군사적 협력관계의 구축은 활용가능한 다양한 대외적 군사협력의 기반이 되며, 유사시 대외적 군사지원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사력 증대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즉, 현대 국가의 국토방위와 국가안전보장은 일국의 자위적 방위수단만으로 그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각 국가간의 군사동맹을 통한 다자안보체계를 통한 지역과 개별국가의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군사전략의 일환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를 국가 내부적 영역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전통적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즉, 국제협력기구에의 참여, 다자안보협의체의 구성과 개별 국가와의 국방외교·협력의 강화는 국가안전보장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것이다.

국제교류협력활동 역시 이러한 국방외교·협력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이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우호적인 군사적 관계의 형성은 우리나라의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공조를 확립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발생할 경우 든든한 우방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는 바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UAE 해외파견은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외교적 역량 등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협력과 교류는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교류협력활동이 될 것이다.

기존의 인적 교류와 개인자격의 참여와 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교류협력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류협력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군의 국제적 위상제고는 물론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세계평화에 기여

UAE에서는 이미 9개 국가의 외국군이 다양한 목적으로 주둔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군의 주둔은 중동지역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UAE 자체의 국가안보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국 군대가 직

접 방위를 위한 주둔정책을 취하는 것보다는 UAE 군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직접적인 주둔을 통한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보다는 군의 내부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여 국가의 주권적 역량에 기초한 국가안보가 더욱 강한 군사적 안정과 평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군의 UAE 해외파견을 통한 직접 교육과 훈련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안정화 전략은 아니지만, 장기적이고 주권적인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독립적인 평화기여 방안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UAE에서의 국제교류협력활동은 세계적 화약고인 중동지역에서 우리의 프로그램과 역량으로 행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상대국의 증대된 국방능력은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지역의 군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동지역의 군사적 안정은 곧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즉, 단순한 양국간의 교류와 협력활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계평화와 군사적 안정에 기여하는 활동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UAE 해외파견활동이 헌법 제5조에서 요청하고 있는 국제평화에의 기여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한 국군의 사명에 맞는 군의 대외적 활동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제평화에의 기여활동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형화된 국제평화유지활동이나 인도적 활동 등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며, 평화를 추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UAE 해외파견의 법제적 대응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증가, 해외에서의 다양한 활동영역의 확대, 국지적 분쟁지역의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과 기술발달에 따른 위기상황 등 매우 다양한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군의 해외파견활동을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은 군의 해외파견의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군의 해외파견의 구체적 기준과 원칙을

국민에게 제시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군의 해외파견에 적극적으로 간여할 수 있는 절차적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여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군의 해외파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군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군의 군사활동은 물론 국제교류협력활동 등 다양한 군의 활동에 대하여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4. 소 결

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위한 입법화는 헌법규정의 미비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해외파견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무분별한 해외파견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적인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군의 활동의 정당성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활동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사안별 해외파견의 정당성 논쟁으로 국가적 혼란과 논쟁을 야기하기 보다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이 참여하여 결정하고 감독하고 감시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인 군의 해외파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관하여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그 법률적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접근방법은 군과 국민이 상호신뢰의 바탕을 갖추는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설문조사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본 조사는 기존에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활동 이외의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서 다국적군 파견 및 국방협력차원의 파견 등에 있어서 절차 진행상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국회의 동의 및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위하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련과 관련하여 공법학자를 대상으로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법률(안) 마련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공법학 전문가들이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련된 법률의 현황에 대하여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회의 동의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법률 현황에 대한 인지 확인 및 법률(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파악하여 향후 법률(안) 마련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조사를 기획하였다.

본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확인하여 보다 나은 정책 수립 및 법률(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2. 조사의 개요

(1) 조사 설계

본 조사는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4일 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본 조사와 관련성이 높은 공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한국입법학회, 유럽헌법학회, 입법정책학회 등 유관 학회의 협조를 받아 전체 500명에게 메일을 발송하였다. 유관 학회의 회원간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메일 주소 등을 통하여 중복을 체크하였다.

메일 발송 결과, 107명이 온라인 설문을 오픈하였으며, 이중 31명은 응답중단 및 비대상자(박사학위 미소지)로 설문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최종 76명의 교수 및 전문가가 응답을 완료하였다.

조사 설계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모집단	• 공법학관련 교수 및 전문가
표본구성	• 교수 및 전문가 76명
조사방법	• CAWI(Computer Aided Web Interview)
조사기간	• 2013년 5월 28일 ~ 6월 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응답률	• 15.2%(전체 메일 발송 기준) • 71.0%(설문 진행 기준)

(2) 조사내용

구 분	세 부 항 목
국군의 해외파견 관련 법률에 대한 인지	• 국군의 해외파견 형태에 대한 인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인지
UN PKO 이외의 국군의 해외파견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관한 절차 규정 법률의 필요성 여부
다양한 파견활동의 절차 등에 관한 의견	• 다국적군 파견활동에 관한 절차 •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관한 절차 • 해외거주 자국민 보호를 위한 파견활동의 절차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필요성	• 국회의 동의 절차를 포함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3) 응답자 특성

Base=전체	사례수 (명)	비율 (%)
▣ 전 체 ▣	(76)	100.0
전문분야		
	(76)	100
소 속		
대학교수	(46)	61.0
공공기관	(9)	12.0
연구원	(17)	22.0
기타(대학강사 등)	(4)	5.0
학위취득 기간		
5년 이내	(28)	37.0
5년~10년	(18)	24.0
10년~15년	(19)	25.0
15년~20년	(7)	9.0
20년 이상	(4)	5.0

3. 조사 결과 분석

(1)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에 대한 인지

[국군 해외파견활동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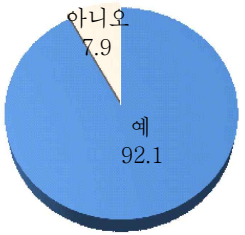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 형태에 대하여 응답자의 약 92%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아래 표의 내용을 안내하고 국군의 해외파견의 형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 ※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 형태
>
>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활동을 말함
> - 다국적군 파견활동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 : 상대 국가가 비분쟁지역에 파견 요청을 하는 있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을 비롯한 국방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경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국적군 파견활동 및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의 경우에는 현재 관련 절차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필요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견하고 있음

응답은 직업적 특성이 교수인지 아닌지 및 박사학위 취득 연한에 따라서 특별한 차이를 가지지 아니하며, 고르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이 이 분야에 대하여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공법학자 집단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Q1 국군 해외파견 활동 인지 여부

		전 체	문1.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국군의 해외파견의 형태로 국제연합평화유지 활동(UN PKO활동),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 개별 파견활동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계
			예	아니오	
전 체		(76)	92.1	7.9	100.0
직업별	교수	(46)	93.5	6.5	100.0
	교수 외	(30)	90.0	10.0	100.0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	10년미만	(46)	93.5	6.5	100.0
	10년이상	(30)	90.0	10.0	100.0

(2)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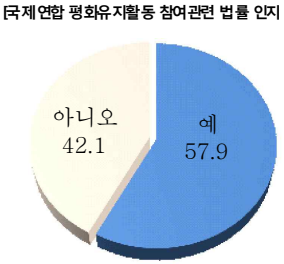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에 관한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의 존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의 경우에는 57.9%가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인지하고 있었고, 교수가 아닌 전문가 그룹은 53.3%가 인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이 10년 이상 된 전문가 그룹에서 73%의 인지율을 보여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이 10년 미만인 전문가 그룹의 47.8%의 인지율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Q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관련 법률 인지 여부

		전 체	문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UN PKO 활동)에 관한 국군의 해외파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계
			예	아니오	
전 체		(76)	57.9	42.1	100.0
직업별	교수	(46)	60.9	39.1	100.0
	교수 외	(30)	53.3	46.7	100.0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	10년미만	(46)	47.8	52.2	100.0
	10년이상	(30)	73.3	26.7	100.0

(3) 파견활동에 관한 절차 규정 법률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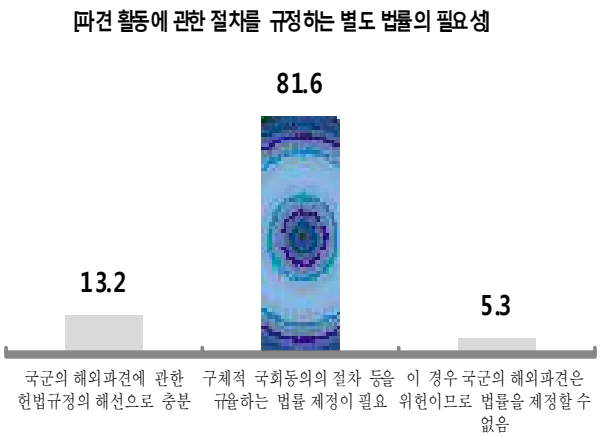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응답 전문가 81.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절차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교수인 전문가 그룹에서는 78.3%가, 교수가 아닌 전문가 그룹에서는 86.7%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르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이 10년 미만인 전문가 그룹은 91.3%가,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이 10년 이상인 전문가 그룹에서는 66.7%가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여, 신진학자가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Q3 파견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 법률의 필요성

		전 체	문3.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헌법규정의 해석으로 충분	구체적 국회 동의의 절차 등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	이 경우 국군의 해외파견은 위헌이므로 법률을 제정할 수 없음	
전 체		(76)	13.2	81.6	5.3	100.0
직업별	교수	(46)	15.2	78.3	6.5	100.0
	교수 외	(30)	10.0	86.7	3.3	100.0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	10년미만	(46)	4.3	91.3	4.3	100.0
	10년이상	(30)	26.7	66.7	6.7	100.0

(4) 다국적군 파견활동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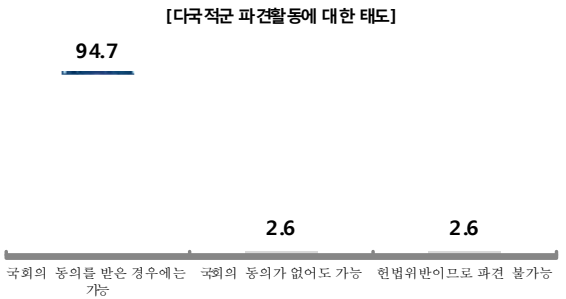

다국적군의 파견활동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한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지, 헌법위반이므로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응답 전문가의 94.7%가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국적군 파견활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가 교수인지 여부 및 박사학위 취득기간에 관계없이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국적군 파견활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진행시에 전문가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국적군 파견활동의 사례로서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2009년 3월) 및 아프간 오쉬노부대(2010년 7월)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Q4 다국적군 파견활동에 대한 태도

		전 체	문4. 다국적군 파견활동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	헌법위반이므로 파견 불가능	
전 체		(76)	94.7	2.6	2.6	100.0
직업별	교수	(46)	93.5	2.2	4.3	100.0
	교수 외	(30)	96.7	3.3	-	100.0
박사학위 취득후 기간	10년미만	(46)	97.8	2.2	-	100.0
	10년이상	(30)	90.0	3.3	6.7	100.0

(5)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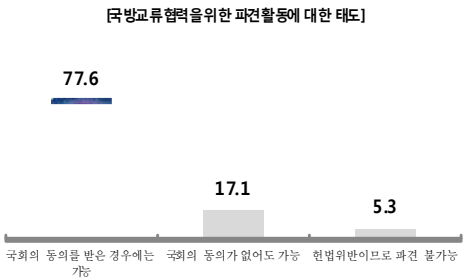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국군의 파견활동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한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지, 헌법위반이므로 파견이 불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의 77.6%가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7.1%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진행시에 전문가 집단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 사례로서 아크부대(2011년 1월)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이 10년 미만인 전문가 그룹에서는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응답이 21.7%로 나타났으며, 교수 이외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23.3%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교수인 전문가 그룹의 13%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여 실무가인 전문가 그룹에서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을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으로 보는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Q5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대한 태도

		전 체	문5.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	헌법위반이므로 파견 불가능	
전 체		(76)	77.6	17.1	5.3	100.0
직업별	교수	(46)	78.3	13.0	8.7	100.0
	교수 외	(30)	76.7	23.3	-	100.0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	10년미만	(46)	73.9	21.7	4.3	100.0
	10년이상	(30)	83.3	10.0	6.7	100.0

(6)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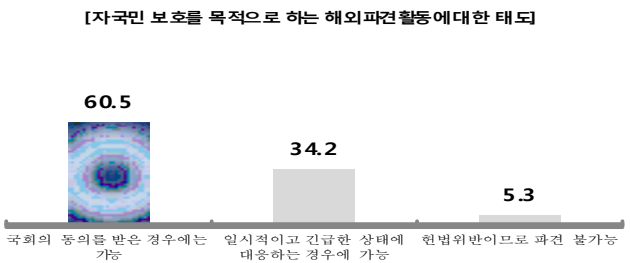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파견활동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한지,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태에 대응하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헌법위반이므로 파견이 불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대하여 응답한 전문가의 60.6%가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하였고, 34.2%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태에 대응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파견활동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태에 대응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응답률(34.2%)이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응답률(17.1%) 보다 높게 나타났다.

Q6 자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태도

		전 체	문6. 해외거주 자국민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태에 대응하는 경우에만 가능	헌법위반이므로 파견 불가능	
전 체		(76)	60.5	34.2	5.3	100.0
직업별	교수	(46)	56.5	37.0	6.5	100.0
	교수 외	(30)	66.7	30.0	3.3	100.0
박사학위 취득 후 기간	10년미만	(46)	58.7	37.0	4.3	100.0
	10년이상	(30)	63.3	30.0	6.7	100.0

(7)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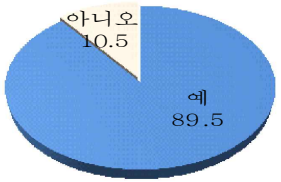

본 연구의 결론으로 제시할「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89.5%가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법률안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진행시 안내되었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수인 전문가의 경우 87%, 교수가 아닌 전문가의 경우 93.3%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실무 전문가들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7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 여부

		전 체	문7. 국회의 동의절차를 포함하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
			예	아니오	
% base		(76)	89.5	10.5	100.0
직업별	교수	(46)	87.0	13.0	100.0
	교수 외	(30)	93.3	6.7	100.0
박사학위 취득후 기간	10년미만	(46)	93.5	6.5	100.0
	10년이상	(30)	83.3	16.7	100.0

4.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공법학자를 대상으로 한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살펴본 바, 국군의 해외파견 형태에 관계없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견하는 경우 다국적군 파견활동에 대해서는 94.7%,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대해서는 77.6%(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 17.1%), 자국민 보호를 위한 파견활동에 대해서는 60.5%(일시적이고 긴급한 경우에 가능 34.2%)로 응답하여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헌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회의 동의를 받은 다양한 형태의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은 우리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응답 전문가 81.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국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법적 보완에 대하여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동의절차를 포함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89.5%가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적인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Ⅲ. 입법방향

1. 해외파견활동의 법적 근거

우리 헌법은 제5조제1항에서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한다는 국제평화주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제60조제2항에서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군이 국제평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것은 헌법에 적합한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근거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헌법에 있어서 국군의 활동은 자기방위전쟁의 경우와 무력행사는 당연한 자위권의 행사로 인정되지만, 침략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무력행사는 금지하는 것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 유지를 위한 국군의 해외파견은 합헌적 행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에 대하여 필수적 국회 동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군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면서 필수적 절차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파견활동을 위한 국군의 파견은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는 범위에 합헌적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적 논의는 헌법규정의 성격이 가지는 추상성과 개방성으로 인하여 구체적 내용에 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국군의

활동은 강제력과 무력을 동반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에서 펼치는 활동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활동은 그 민주적 정당성과 적절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헌법규정의 해석범위에서 별도의 법률로서 관련 사항의 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은 민주적 통제의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10년 제정된 법률이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유엔 PKO 법”이라 한다)이다. 하지만 이 법률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입법방안별 주요 방향

새로운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입법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이미 유엔 PKO 법이 제정된 바, 이 법률을 중심으로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입법방안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① 소폭 개정방안, ② 통합입법 방안, ③ 분리입법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소폭 개정방안은 유엔 PKO 법의 정의규정의 내용에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제교류협력파견활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정도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관할권의 문제 등은 그대로 두고, 활동의 영역만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영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방안이며, 기존 법률의 개정방안이라는 점에서 입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관인 군과 국방부의 역할을 무시하는 관할과 체계를 요구하는 입법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통합입법 방안은 현행 유엔 PKO 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제명과 관할 등을 변경하고, 파견의 원칙과 기준을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추진체계 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존 법률에 대체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에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정책적·법제도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라는 점에서 입법에 많은 시

간과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외교부 관할 입법을 국방부로 전환하는 부처간의 협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의문이 있다.

분리입법 방안은 기존의 유엔 PKO 법은 그대로 두고, 다국적군 평화활동과 국제교류협력활동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율사항을 두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 입법방안은 국방부 중심의 관할권에 대한 혼란을 불식시키고,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의 다양성과 정당성에 관하여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 가장 현실적인 입법방안이 될 것이며, 부처간의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일한 활동에 대하여 다른 법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적 방안인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엔 PKO 법은 그대로 두고 분리입법 방안으로 국방부 소관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만을 검토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이것은 통합입법 방안의 제시 등으로 입법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부처간의 관할권 논쟁 등 본질에 벗어난 논쟁을 피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통합입법 방안에 관한 제정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서 입법의 대안적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통합입법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3. 분리입법방안의 주요 내용

(1) 제 명

국군의 해외에서의 '파견'활동이라는 점에서 '파병'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파견'이라는 의미가 나타나는 법명이 보다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된다. 즉, 헌법 제60조제2항은 '파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국군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파견'활동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 경우 평화활동은 매우 포괄적 용어이며, 평화유지활동은 유엔과 관련된 매우 제한적 용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해외파견활동'으로 통일하여 제명에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해외파견활동은 군이 중심이 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국군'으로 활동의 주체를 명확히 한정하는 제명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할 때, 제정입법의 제명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와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논의를 포괄할 수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고자 한다. 특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제명에 두는 것은 파견활동에 대한 체계적 정비 및 업무지원과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2) 기본원칙

이 법률에서는 헌법적 원칙과 법률상의 원칙 및 참여자에 관한 원칙과 대외적인 국제법적 원칙 등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정의규정에서 개념화한 다양한 활동의 범위를 해외파견활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절 차

해외파견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존의 유엔 PKO 법에서 나타난 절차를 원용하여 참여의 결정-국회의 동의-국군의 파견-파견기간의 연장-파견의 종료-국회보고의 순으로 정하였다. 이는 활동의 시간적 진행과정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다양한 고려를 입법의 내용에서 담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지 원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금지, 교육과 훈련, 수당의 지급, 파견업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도록 하였다.

(5) 정책협의회

해외파견활동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한 관련 부처 협력·조정을 위하여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 협의회에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Ⅳ. 제정안에 대한 검토

1. 목 적

< 목 적 >

제 1 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방교류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입법취지

법령의 총칙규정(總則規定)은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의 원칙적·기본적·총괄적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법령의 일반적 체계를 보면 대개 처음에 그 법령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을 두고, 그 다음에 본칙규정을 두며, 마지막 부분에 부칙규정을 둔다. 이와 같이 총칙규정은 법령의 앞부분에 위치하여 그 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총칙규정인 법률의 목적규정은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한다. 이것은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목적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그 법령의 개별조문의 구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일반 국민이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이나 하위법령 등 모든 법령에는 목적규정을 두도록 한다.

목적규정은 제1조에 둔다. 예외적으로 「민법」·「상법」·「형법」 등과 같이 목적규정을 두지 않는 법령도 있다. 목적규정의 제목은 간명하게 “(목적)”으로 표현한다. 또한, 목적규정은 간결하고 명확하면서도 법령의 입법목적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항·호 또는 목으로 나누어 표현하지 않는다. 목적규정의 표현방식은 크게 ① 수단을 나열한 후 목적을 규정하는 방식(예: 「국회법」 제1조), ② 목적을 명시한 후 수단을 규정하는 방식(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 ③ 직접 목적만 규정하는 방식(예: 「청원법」 제1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목적규정은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약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규정 다음에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한다.

법률에 목적규정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 하위법령에서도 목적규정을 두도록 한다. 하위법령에 두는 목적규정은 상위법인 법률의 목적규정과는 달리 그 하위법령이 상위법인 모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 하위법령의 목적규정은 상위법인 법률과 독립된 별도의 자체적인 목적을 정한 조항이라기보다는 법률을 원활하게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의 목적규정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목적규정에서 상위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표현을 할 때 「이 법 시행에 관하여」, 「시행에 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등 여러 가지 표현방법이 있으나 표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그 시행에 관하여」로 쓰기로 한다.

(2) 구체적 내용

이 법률의 제정 목적은 크게 나누어 ①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 ② 국가의 안전보장에 기여, ③ 국방교류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국군이 해외에 파견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목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군의 해외 파견 및 철수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외파견활동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은 최근의 국제적 분쟁의 다원화 경향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증대 등에 따른 해외파견 요구의 증대현상을 법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은 물론 국가안보와 국방교류협력이라는 국방외교의 다원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법률의 목적규정에 두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즉, 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국군의 파견 및 철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포괄적 사항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 법률에서 파견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은 물론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체계를 갖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일반국민의 우려와 남용의 가능성을 입법적으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은 물론 절차를 완비함으로써 군의 해외파견이 국가 내부적 필요성은 물론 세계적인 평화활동과의 연계성 및 외교활동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헌법적 논의에 있어서 입법적 불비와 해석상의 논쟁을 구체적 입법으로 해결함으로써 위헌논쟁 등 해외파견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는 방안으로 이 법률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군의 해외파견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요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해외파견의 요구를 현재의 헌법규정에 의존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적 태도는 아니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적 대안을 통하여 국군의 미래전략적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유사입법례

해외파견활동과 국제개발 관련 유사입법의 목적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참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별도 제정법률안에 현재의 유엔 PKO 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군만 한정된 파견활동이 아니라 파견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안이 될 것이다. 이에 참여주체를 “국군등”으로 하고 개별 파견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는 것으로 목적규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제적 분쟁의 다원화 경향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의 증대 등에 따른 해외파견 요구의 증대현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며, 해외파견활동의 일원적이고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것이다.

< 목 적 >

제 1 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공무원 및 일반국민(이하 “국군등”이라 한다)의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군등의 해외파견활동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방교류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 의

< 정 의 >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파견활동이란 군이 해외에 파견되어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국적군 파견활동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이하 "국방교류협력파견활동"이라 한다) : 상대 국가가 비분쟁지역에 파견 요청을 하는 있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을 비롯한 비전투 국방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개별 파견요원"이란 해외파견활동을 지원 또는 참여하기 위하여 개인 단위로 해외에 파견된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재해"란 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테러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입법취지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정의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이거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의 의미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없애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다.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설명된 내용대로 사용되거나 사회통념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하나의 용어가 여러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그 법령에서 어떤 의미로 그 용어를 사용하는가를 명확히 해 둠으로써 법령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의규정은 법령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둠으로써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법령 가운데 어떤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가에 관하여는 그 용어가 지니는 의미의 다양성과 그 용어가 법령상 차지하는 법적 효력의 중요성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용어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의규정은 총칙규정의 일부로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법령의 특정한 조항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그 법령의 정의규정은 해석지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규정은 목적규정과 함께 법령규정의 의미를 당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중에서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법령에 정의규정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통념상 일정한 의미가 있는 용어인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하여는 따로 용어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 정의조항에 규정된 용어를 그 법령의 하나나 두개정도의 조문에서만 사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에는 별도로 용어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해당 조항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면 될 것이다.

(2) 구체적 내용

이 법률에서는 "해외파견활동"과 "개별 파견요원", "재해"에 관하여 정의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였다. 이 중 "해외파견활동"은 활동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PKO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과 별도의 파견활동인 '다국적군 파견활동'과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해외파견활동"은 크게 나누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파견활동 및 국방교류협력파견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파견활동은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등 전쟁 또는 분쟁이 발생한 지역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군사적 활동을 말한다. 이 경우, 의료・교육지원이나 건설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의 경우에도 항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염두에 둔 파견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군사적 활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선 군사활동-후 인도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국방교류협력파견활동은 비분쟁지역에 국방외교적 목적의 교류협력을 위한

파견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이나 재난구호 등을 위한 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전투 등의 분쟁적 군사활동은 배제되는 파견활동을 말한다. 즉, 선 교류협력-분쟁 미간여 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table>
<tr><th colspan="3">군의 해외파견활동</th></tr>
<tr><td>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td><td>다국적군 파견활동</td><td>국방교류협력파견활동</td></tr>
<tr><td>「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td><td colspan="2">법률적 근거 없음[「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td></tr>
<tr><td colspan="2">분쟁지역 파견활동</td><td>비분쟁지역 파견활동</td></tr>
<tr><td colspan="2">군사활동</td><td>비군사적 활동</td></tr>
<tr><td colspan="2">분쟁에 적극적 대응</td><td>분쟁에 간여 ×</td></tr>
<tr><td>유엔의 요청에 한정</td><td>유엔 결의 또는 국제사회 지지 또는 결의, 지역안보기구 또는 주도국 요청</td><td>상대국가의 요청
(상호 교류협정을 통한 참여)</td></tr>
<tr><td colspan="3">국회 동의는 필수적 절차</td></tr>
</table>

이상과 같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은 헌법 제5조가 절대적 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침략전쟁”을 위한 파견활동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한정하는 것은 매우 단견적이고 헌법규정에 관한 오해로부터 나온 견해로 볼 수 있다. 또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는 의미 역시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침략전쟁을 제외한 모든 국제교류협력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활동이 된다는 점에서도 해석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접근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에서 이 법률안에 포함하지 않은 파견활동으로 “해외거주 자국민 보호를 위한 파견활동”이 있다. 이 파견활동은 일시적으로 위험에 빠진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적인 정국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군을 해외에 파견하는 것으로 국군의 당연한 권한

이며, 국제법적으로 주권국가에 인정되는 활동이다. 다만, 과거 제국주의적 경험과 군의 해외파견에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하고 주변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이 법률안에서는 별도의 개별적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추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외에 “개별 파견요원”은 군의 해외파견활동과는 별도로 개인적 차원의 지원 또는 참여하는 요원으로서 이에 관한 별도의 입법적 고려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의규정에서 별도로 규율하도록 하였다. 또한, 군의 해외파견활동에 있어서 참여가능한 재해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재해’의 범위를 정의함에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테러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 한정하였다.

(3) 유사입법례

이 법률의 정의규정과 관련한 유사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이란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개별 또는 집단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유지 또는 그 밖의 군사적 활동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파견부대”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참여요원”이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 경찰, 그 밖의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4.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테러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적조(赤潮),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다.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4)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통합법률안의 정의규정은 해외파견활동에 평화유지활동이 포한하는 것을 전제로 구성하였다. 평화유지활동은 유엔 PKO 법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 정 의 >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파견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 :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정 의 >

나. 다국적군 파견활동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이하 "국방교류협력파견활동"이라 한다) : 상대국가가 비분쟁지역에 파견 요청을 하고 있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을 비롯한 비전투 국방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파견부대"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를 말한다.

3. "개별 파견요원"이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 경찰, 그 밖의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4. "재해"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테러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3. 기본원칙

< 기본원칙 >

제 3 조(기본원칙) 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침략적 전쟁부인, 국제법 준수, 국가안전보장 의무준수, 국회 동의 절차 등 대한민국 헌법원칙을 준수하며,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은 이 법과 관련 국제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범위 안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에 필요한 민·관·군 협력, 평화적 군사활동을 위한 제도정비,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법적 지위보장에 관한 제반 조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입법취지

법령의 기본원칙 규정은 법령의 제정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으로 그 법령의 조문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목적규정에서 그 법령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법령은 목적규정과는 별도로 원칙이나 이념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도의 원칙 또는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한 각종 기본법이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법령에서 목적규정과는 따로 기본원칙이나 이념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본원칙 규정은 법령의 기본원리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법령제정의 이념이나 방침을 특히 강조하려는 경우에 규정한다.

기본원칙 규정은 목적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여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목적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규정이므로 목적규정 바로 다음 조문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이념 규정의 제목은 "(기본원칙)", "(기본방향)", "(교육이념)", "(예우의 기본이념)",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으나, 통일을 기하기 위해 "(기본이념)"으로 쓰기로 한다. 기본원칙 규정은 될 수 있으면 주요방향, 정책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의 표현방식은 특별히 정형화된 것은 없지만 목적규정에서 나타내지 못한 제도의 이념이나 원칙 및 기본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특히 강조하려는 것이므로 기본원칙 규정의 내용이 목적규정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비슷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구체적 내용

해외파견활동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은 먼저 헌법원칙의 준수와 파견되는 부대와 개인의 활동원칙을 규율하고,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정부의 조치와 노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형식으로 입법화하였다.

먼저, 헌법원칙은 침략적 전쟁의 부인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과 국제법 존중주의의 원칙 및 국가안전보장 의무준수를 규정하고 절차적 관점에서의 국회동의 등을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 요청하고 있다.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은 국군이 영토방위라는 국내적 활동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면서 해외파견활동은 예외적 군사활동의 일환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상 규율하고 있는 헌법원칙의 준수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입법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선언적 기본원칙과 절차뿐만 아니라 해외에 파견되어 직접 활동하는 파견부대와 파견요원 역시 국내법률은 물론 국제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업무를 준수하고 성실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준수의무와 성실임무수행의 원칙의 준수는 이 법에

따라 활동하는 부대와 요원에 대한 법제적 지원의 근거이기도 하다. 또한 해외파견을 보내는 정부는 제도정비는 물론, 법적 지위보장과 같은 제반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은 군만의 활동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이해를 담고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파견활동에 필요한 민·관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률 규정의 형식으로 규율하도록 하였다.

특히, 정부의 제도정비노력과 제반조치에 관한 노력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점에서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유사입법례

PKO 법에서는 이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 4 조(임무수행의 기본원칙)** 파견부대 및 참여요원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국제연합이 부여하는 권한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4 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 2 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4)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통합법률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은 포괄적 기본원칙은 물론 국가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담는 형식으로 조문화하였다.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과는 별도로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은 물론 갈등최소화의 원칙 등에 관하여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절차법적 성격의 파견법을 보완하여 실체적인 부분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기본원칙 >

제 3 조(기본원칙) ① 국가는 해외파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침략적 전쟁부인, 국제법 준수, 국회 동의 절차 등 대한민국 헌법원칙을 준수하며,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은 이 법과 관련 국제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범위 안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외파견활동에 필요한 민·관·군 협력, 평화적 군사활동을 위한 제도정비,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법적 지위보장에 관한 제반 조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외파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결정과정과 활동과정 및 평가에 대하여 국가기밀 등 공개가 불가능한 전략적·군사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④ 국가는 해외파견활동에 있어서 국가간 협약을 준수하고 현지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에 노력하여야 하며,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안전과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간의 갈등최소화를 위하여도 노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제외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다국적군으로 파견활동을 수행 중인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이 국제연합의 결정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1) 입법취지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법령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법령 상호간 또는 각 법령의 개별규정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상충을 피하고 법령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총칙규정·실체규정 및 부칙규정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는데 사용목적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총칙규정에서는 그 법령과 다른 법령간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사용하고, 실체규정에서는 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으면 다른 법령상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부칙규정에서는 그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다른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총칙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의 적용 및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사항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 법령의 총칙규정에 두되, 총칙규정의 마지막 부분에 둔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의 제목은 원칙적으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표현하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표현한다.

규정의 표현방식으로는 ①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② 그 법령을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③ 일정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하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 ④ 다른 법령의 제·개정시 그 법령의 목적이나 이념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 등이 있다.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항에 대하여 그 법령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고 두는 것이다. 반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그 법령과 다른 법령간의 관계에서 어느 법령이 먼저 적용되는지 등에 관하여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다. 따라서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그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별도의 조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타당하다.

(2) 구체적 내용

이 법률은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그 범위에 있어서 다른 법률보다는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입법적 조치이다. 다만, 해외파견활동에 대하여 이미 유엔 PKO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바, 이 범위에 있어서 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법률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파견된 부대가 이후 임무의 변경과 상황의 변화 등으로 유엔의 결정과 참여요청으로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이 아니라 유엔 PKO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정의 변경으로 적용되는 법률의 변경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추후 유엔 PKO법과 이 법률의 통합적 운영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유사입법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1.4.4>

③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2조・제18조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줄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 대상업무를 확대하거나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 삭제 <2011.4.4.>

(4)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통합 법률은 별도법률에 있어서 유엔 PKO법과의 관계 등을 정하는 것과 달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

5. 해외파견활동 참여의 결정

< 해외파견활동 참여의 결정 >

제 5 조(해외파견활동 참여의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제연합, 다국적군 및 상대국의 국방교류협력 파견요청이 있으면, 부대 및 개별 요원 파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상비부대 등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조사활동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법에서 정한 해외파견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할 것인지 여부, 파견 목적・규모・기간・임무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1) 입법취지 및 그 내용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은 우리 정부의 단독적인 파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요청과 요청에 대한 협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엔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해외파견은 유엔의 결의로 구성된 유엔평화유지군에 유엔이 참여를 요청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응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은 유엔 PKO 법에 자세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와 달리 다국적군 파견활동은 지역안보기구 또는 다국적군을 주도적으로 결성하는 특정국가의 요청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그 근거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이거나, 국제사회의 일반적 지지와 결의가 있다. 국방교류협력은 교류협력의 목적을 특정하여 파견을 요청하는 상대국의 파견요청을 우리 정부가 응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요청은 국제협정이나 교류협력 양해각서 등을 근거로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유엔, 다국적군, 상대국 등에서 해외파견활동의 요청이 접수되면, 이에 대한 이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적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내적 논의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률의 궁극적 제정목적이 될 것이다. 즉, 국내적 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적 사항과 원칙판단을 위한 사항을 입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주무부처의 장관인 국방부장관이 국군의 해외파견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요청사항은 외교적 사항에 해당하지만, 국내적 논의를 위하여는 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방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획은 최종적으로 파견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할 대통령에 대한 판단자료로서의 정보제공은 물론 관련 행정기관과 국회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국방부장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국내의 국군에 대한 정보는 물론 파견될 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현지 정세, 안전상황, 군활동상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정보수집 활동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취합하여 객관적인 조사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와 동의를 받아야 할 국회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비밀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조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최종적인 재가를 받아 구체적인 파견계획을 수립·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파견결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하기 이전에 행정부 내부와 관련 기관간의 파견을 위한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2) 유사입법례

국내적 절차의 진행과 준비는 국방부장관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체를 정부로 하여 해외파견활동의 성격을 규율하고 있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 5 조(평화유지활동 참여의 결정) ① 국제연합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요청하면 외교부장관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상비부대 등의 파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상비부대 등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조사활동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제연합이 요청한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할 것인지 여부, 파견 목적·규모·기간·임무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50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① 국방과학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가 국가 전략무기사업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사업의 종류, 승인 절차 및 시기, 경영상 지배권의 실질적 취득에 대한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통합법률안은 파견에 필요한 상비부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외파견활동 참여 결정을 위한 절차적 부분을 정하도록 하였다. 상비부대의 운영은 교육와 훈련의 체계화는 물론 파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상설적인 운영이 필요한 조직일 것이다. 참여결정은 계획수립 - 의견수렴 - 조

사활동보고서 작성 - 협의 - 심의 - 재가의 절차로서 분리법률과 동일한 절차로 규정하였다.

< 해외파견 상비부대의 설치・운영 >

제 4 조(해외파견 상비부대의 설치・운영) ① 정부는 해외에 신속히 파견되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파견활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해외파견 상비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해외파견활동 참여의 결정 >

제 5 조(해외파견활동 참여의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제연합, 다국적군 및 상대국의 파견요청이 있으면 상비부대 등의 파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파견활동 참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등 필요한 활동을 통하여 민・관・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상비부대 등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조사활동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법에서 정한 해외파견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할 것인지 여부, 파견 목적・규모・기간・임무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6. 국회의 동의

<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국회의 동의 >

제 6 조(해외파견활동에 관한 국회의 동의) 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국회의 동의 >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입법취지 및 그 내용

헌법 제60조제2항은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하여는 필수적 국회동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동의절차와 요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모든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동의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모든 국군의 해외파견이라고 하더라도 외교활동을 위한 무관파견이나 개인적 교육・훈련파견 및 해외군사훈련에 대한 참관 등에 대하여는 국군의 일상적 해외파견활동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의 행정권 관할을 위한 통상적 파견(헌법 제73조 외교사절의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과 통상적인 외교사절의 파견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이 법률에서는 계속적인 부대단위의 파견에 대하여는 의무적 동의사항으로 하고, 개인적 해외파견은 통상적인 외교사절의 파견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구분이 될 것이다.

즉,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은 기본적으로 국군부대의 파견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는 필수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의 제정여부와 상관없이 국회동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헌법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면서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기존의 국회법에 따른 일반적 동의절차를 거치면서 그 내용에 관하여는 정부에서 제출하는 내용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동의안의 제출에 있어서 일방적인 행정부의 결정으로 그 동의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적으로 볼 경우,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대표적인 입법의 불비에 해당하며, 정보제공에 있어서 비대칭성이 보이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엔 PKO법에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항을 참고하여 동의절차와 첨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였다. 또한 기존의 국회 동의절차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처리 규정을 두어 국회의 신속한 동의여부의 결정을 입법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절차 진행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지만, 국제적인 요청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국회가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입법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2) 유사입법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 6 조(국군부대 파견의 국회 동의)** ① 정부가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해외파견활동의 국회 동의에 관한 사항은 절차적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분리법률안과 같은 절차를 요청하고 있다.

<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국회의 동의 >

제 6 조(해외파견활동에 관한 국회의 동의) 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 등을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국회는 정부로부터 제1항의 파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파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회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국군부대의 파견

< 국군부대의 파견 >

제 7 조(국군부대의 파견) ① 정부는 제6조의 동의를 받아 해외파견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국제연합·다국적군 및 상대국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부대의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해외파견활동 파견부대의 형태와 규모를 판단하고 파견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1) 입법취지 및 그 내용

행정부 내부의 절차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는 국군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협의사항과 신속조치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이 국내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대상국가와의 긴말한 협조 역시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미 행정부의 내부절차와 국회의 동의절차 등으로 지체된 일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와 노력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전문적인 권한을 활용하여 세부지침으로서 해외파견활동의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제개정에 어려움이 있는 법령보다는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할 군사적 사항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개략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과 같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의 규율내용을 정당한 입법적 위임을 바탕으로 규범적으로 확립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유사입법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 7 조(국군부대의 파견) ① 정부는 제6조의 동의를 받아 평화유지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국제연합 및 관련국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상비부대 등의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국제협정을 체결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평화유지활동 파견부대의 형태와 규모를 판단하고 파병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남북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일정 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무원의 파견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 8 조(파견근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방역수의사를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시·도 안의 파견은 해당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의 파견을 명령한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는 가축방역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해외파견활동에 있어서 국군등의 파견으로 그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절차적 요건에 관한 사항은 분리법률안과 같은 절차를 요청하고 있다. 즉, 국군부대의 파견으로 한정하고 있는 분리법률과는 달리 통합법률은 국군등의 파견으로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 국군등의 파견 >

제 7 조(국군등의 파견) ① 정부는 제6조의 동의를 받아 해외파견활동에 국군등을 파견하는 경우, 국제연합·다국적군 및 상대국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 등의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협정의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국제협정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해외파견활동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형태와 규모를 판단하고 파견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8. 파견기간 등

< 파견기간 및 파견기간의 연장 >

제 8 조(파견기간 및 파견기간의 연장) ① 국군부대의 파견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파견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파견을 2년의 범위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기간 연장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파견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로 파견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파견연장 동의안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파견기간을 2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경우 정부는 파견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지 정세 및 파견 성과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입법취지 및 그 내용

해외파견활동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1년을 그 최대기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 2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1년(또는 2년)의 기간이 지나면 해외파견활동은 그 임무를 종료하고 귀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다양한 원인으로 파견기간 내에 그 임무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된 파견을 정당한 원인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입법적으로 규율하도록 하였다.

파견기간의 연장은 기존의 파견활동의 연장이라는 관점이지만, 본질적으로 새로 파견하는 것과 절차적으로는 동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국회의 동의절차 역시 파견절차와 동일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간연장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첨부서류의 내용도 파견과 관련한 내용과 동일하게 검토하도록 하였다. 특히, 파견기간이나 연장요청을 2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첨부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유사입법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 8 조(파견기간의 연장)** ①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파견연장 동의안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질병·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통합법률은 연장에 필요한 행정부내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그 외의 기간과 동의절차 등은 분리입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 파견기간 및 파견기간의 연장 >

제 8 조(파견기간 및 파견기간의 연장) ① 국군부대의 파견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파견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파견을 2년의 범위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파견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로 파견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회에 제출하는 파견연장 동의안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파견기간을 2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경우 정부는 파견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지 정세 및 파견 성과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파견의 종료

< 파견의 종료 >

제 9 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을 종료하여야 한다.
1. 파견부대가 파견임무를 완수한 경우
2.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입법취지 및 그 내용

파견은 기간을 정한 제한적 활동이다. 따라서 파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파견을 종료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 파견의 본질적 목적은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계속된 파견유지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은 파견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파견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즉, 파견은 국회에서 동의된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종료하게 되지만, 기간의 만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종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임무완수 등 파견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와 더 이상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조기에 파견을 종료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파견국의 현지사정에 따라 판단되는 종료요건에 해당한다. 물론 이러한 파견의 종료 역시 우리 군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파견을 요청한 유엔이나 다국적 및 파견을 요청한 상대국가와의 협의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우리의 파견 종료를 위한 요건을 명확히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를 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유사입법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 9 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의 파견을 종료할 수 있다.
1.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2.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사회봉사의 종료) ①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료한다.
1. 사회봉사의 집행을 마친 경우
2. 사회봉사 대상자가 벌금을 완납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사회봉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면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복무 종료 통보)** 외교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을 마친 국제협력요원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통합법률안에서는 파견의 종료사유와 국회의 종료요구사유를 하나의 종료요건으로 보고 같은 조문에서 동일하게 규율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두지 않았다.

< 파견의 종료 >

제 9 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을 종료하여야 한다.
1.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이 파견임무를 완수한 경우
2.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상대국의 파견 종료 요청이 있는 경우
4. 국회가 의결을 통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하거나 제9조의 기간연장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10. 파견의 종료요구

< 파견의 종료요구 >

제10조(파견의 종료요구) ①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입법취지 및 그 내용

파견종료에 관한 제9조의 사유는 파견의 목적과 관련하여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당연 종료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반면에, 국회는 동의권자로서 목적달성 등 당연종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이 파견종료요구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며, 동의권자로서 가지는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즉, 동의권을 행사한 국회가 국내외의 국제적·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를 반영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상대국의 파견종료 요청 또는 철수요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국의 전속적 권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연히 파견이 종료되는 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직접 규정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2) 유사입법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0조(파견의 종료 요구)** ①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대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3)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통합법률안에서는 파견의 종료사유와 국회의 종료요구사유를 하나의 종료요건으로 보고 같은 조문에서 동일하게 규율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두지 않았다.

11. 국회 보고

< 국회 보고 >

제11조(국회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와 개인 파견요원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입법취지 및 그 내용

헌법의 규정에 볼 때, 사전적 동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적인 결과보고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물론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행정부의 활동에 관하여 필요하면 국회는 행정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여부와 상관없이 입법적으로 의무적 보고사항을 두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할 것이다. 해외파견활동은 군사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그 결과에 대한 보고의무를 행정부에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유엔 PKO법 역시 이에 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해외파견활동도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입법화하였다.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견부대와 개인 파견요원의 구체적 활동성과와 활동상황은 물론 임무종요 및 철수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회보고는 대행정부 활동에 대한 국회의 권력견제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추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성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회보고는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회의 입법과 예산·조직 등에 대한 설득의 장이면서 대국민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의 소극적 보고가 아니라 성과와 미래적 전망 및 장단점 등을 총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유사입법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회에의 활동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 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남극활동을 종료한 경우 : 종료일부터 2월 이내
2. 남극활동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매년 4월 30일까지(4월 30일 이전에 남극활동을 시작한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②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③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 또는 남극활동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남극활동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외교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해외파견활동은 국회의 동의사항이므로 그 활동에 관하여 사후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분리입법의 경우에는 보고에 관한 근거규정만을 법률에 두도록 하였으나, 보고에 있어서 필요한 사후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군등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국민적 평가와 이해를 구하는 방안으로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하였다.

< 국회 보고 >

제10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해외파견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국회법 에 따른다.

12.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보장

< 불이익 처분의 금지 >

제12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누구든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과 참여하였던 군인에게 해외파견활동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법취지 및 그 내용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모든 국민의 사회적 신분이나 활동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집단적 불이익 처분은 당연히 금지된다. 따라서 해외파견활동과 같은 국가적 활동에 대한 참여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며, 이러한 활동에 따른 적절한 국가적·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지역, 특정전쟁 혹은 전투에 관한 국군의 활동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 등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 전쟁 혹은 전투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사회적 불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 염려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파견활동은 해외에서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불이익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력인정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외파견활동에 따른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 규정을 두어 보호하도록 하였다. 즉, 적절한 보상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청하는 것이며, 참여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정신적·육체적 건강 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점검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2) 유사입법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① 누구든지 참여요원 또는 참여요원이었던 자에게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현역 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다)은 파견기간 중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은 국제평화 안전유지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며,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5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의하여 규명된 사실을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통합법률안은 해외파견활동에 따른 포괄입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견되는 부대와 요원의 법적 지위보장에 관한 사항은 물론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율하였다. 이는 불이익처분 금지라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참여하는 부대와 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 현지에서의 활동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법적 지위 >

제11조(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법적 지위) 국가는 해외파견활동을 위하여 파견되는 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에 대하여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제협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보장 >

제12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보장) ① 누구든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또는 참여하였던 군인등에게 해외파견활동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해외파견활동 개별 파견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은 해외파견활동 개별 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며,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

13.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

제13조(교육 및 훈련) 국방부장관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개인 파견요원의 소양과 자질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법취지 및 그 내용

교육과 훈련은 법제도적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한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는 교육과 훈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양한 법제에서 교육과 훈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해외파견활동은 군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것이지만, 군만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민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군과 민간 및 공공조직과의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필수적인 정책적 사항이다. 또한, 파견활동을 수행하는 부

대와 요원의 교육과 훈련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관련 사항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즉, 해외파견은 다양한 지역과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과 임무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35)]

(2) 유사입법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육 및 훈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소속 공무원이 참여요원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국내외 기관에 위탁 또는 파견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훈련 지원)** ① 정부는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35)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제21조(파병부대 교육훈련)** ① 각 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지령에 기초하여 파병부대에 교육훈련지침을 하달하고 이행상황을 확인·감독한다.
② 파병부대장은 파병부대 간부들을 PKO센터에 파견하여 UN에서 지정한 기본과정 과목 등을 교육받도록 조치하며, PKO센터장은 파병부대의 임무와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과목을 조정하여 교육한다.
③ 파병부대장은 파병부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주특기 훈련, 전술훈련, 우발사태 시 대응조치 훈련 등을 엄출하여 실시한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분리입법은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으나, 통합법률안은 참여하는 부대와 요원의 훈련에 한정된 활동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간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적극적 노력에 관하여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한 교육과 훈련의 참여등을 위한 종합운영시스템의 구축을 법제도의 최종적 귀결로 보고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파견활동에 있어서 군사적 활동과는 별도로 민간지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현지지원활동과 인도적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 민·관·군 협력체제의 구축 >

제13조(민·관·군 협력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파견국·파견부대·개별 파견요원간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해외파견활동 종합운영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소양과 자질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종합운영시스템과 제2항의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간지원활동에의 참여 >

제14조(민간지원활동에의 참여) ①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은 교육·보건·의료·건설 등 파견지역에 필요한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외파견활동에 필요한 민간지원에 대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4. 수당 등의 지급

< 수당 등의 지급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해외파견활동을 하는 군인에게 파견지역의 근무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입법취지 및 그 내용

기준외 보수로서 기본급을 보완해 주는 부가급(附加給)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직업의 성격과 업무 조건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수당 제도를 통해 기본급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성격에 따라 상여수당·가계보전수당·특수지근무수당·특수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당은 모든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의 공무원이 특별히 다른 공무원과 근무조건이나 사정이 달라서 봉급 이외 받는 보수이다. 예를 들면 야근 근무를 하였다든지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든지 또는 부양할 가족수가 많다든지 하는 경우에 받는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따른 수당은 특수지 근무수당이나 특수근무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업무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상체계로서의 수당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를 법률로 규정하였다.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해외파견 근무수당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36]」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

36)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타법개정

다. 개인단위로 파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지급규정은 해외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중수령을 금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2) 유사입법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정부는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에 대하여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 8 조(수당과 여비) 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 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 2 조(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 ①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그 해외파견근무의 기간동안 해외파견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5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분리입법은 임무에 따른 수당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파견활동을 수행하는 부대와 요원에 관한 전반적인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두도록 하였다.

< 근무환경과 복지 >

제15조(근무환경과 복지) 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에게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한 충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파견부대 소속 군인과 개별 파견요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

제15조(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정부는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개인 파견요원의 신변안전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취지 및 그 내용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은 위험임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인 교류협력의 경우에도 군사적인 교육과 훈련이 병행하는 것으로 인적·물적 사고는 물론 우발적인 자연재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파견부대와 군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은 물론 물적·재산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군의 일상적인 사고예방과 재해예방활동은 군사활동과 더불어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에 대한 상시적인 대비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해외파견은 파견되는 부대는 물론 개인에게 있어서 생소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비에 별도의 만전을 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특히, 현지에서의 물적 사고 또는 인적 사상사고는 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일 것이다. 이에 우발사태 발생시 필요한 조치 등 처리절차를 매뉴얼화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현지에서의 우발적 사태는 본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와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군뿐만 아니라 민·관의 모든 채널이 유기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2) 유사입법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5조(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정부는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신변안전 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79조(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①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이하 "선내안전보건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원의 안전·건강 관련 교육훈련 및 위험성 평가 정책
2. 선원의 직무상 사고·상해 및 질병(이하 "직무상 사고등"이라 한다)의 예방 조치
3. 선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선내 프로그램
4. 선내 안전저해요인의 검사·보고와 시정
5. 선내 직무상 사고등의 조사 및 보고
6. 선장과 선내 안전·건강담당자의 직무
7. 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법」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댐 또는 하구둑 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를 저류(貯溜)하거나 취수(取水)하기 위하여 설치한 댐으로서 기초지반부터 댐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다만,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농업용 댐 중 유역면적이 25제곱킬로미터 미만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5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인 댐을 제외한다.
2. 하구둑
3. 하구 부근의 해면에서 하천의 유수를 저류하는 공작물
4. 운하

② 댐등의 설치자는 그 댐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③ 댐등의 설치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분리입법은 사고예방과 재해방지에 관한 최소한의 예방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외파견활동은 군사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내부적인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대외적 환경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므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법률적 근거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은 해외파견활동의 정당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근거가 될 것이며,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모니터링 >

제16조(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모니터링) 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파견활동에 따른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외파견활동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파견활동 기간 동안 파견된 지역과 주변지역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른 군사적·사회적·국제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해외파견활동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외교적·군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6. 정책협의회

< 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

제16조(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해외파견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방부장관이 의장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추진단를 두고, 국방부차관이 실무추진단의 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와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입법취지 및 그 내용

해외파견활동은 하나의 부처가 모든 사항을 규율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국제적인 관할 사항은 외교부가 수행하며, 그 밖에 관련 업무는 관련 부처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점에서 각 부처간의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인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러한 사항을 개별부처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관련 협의회를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고, 업무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도록 하였다. 협의회설치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협의회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2) 유사입법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제16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외교부에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장관이 의장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외교부차관이 실무위원회의 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 5 조의2(로봇산업정책협의회)** 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업무 운영규정[37]」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2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부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2.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적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3.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의 내용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 사이에 법리적 쟁점으로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항

37) 대통령령 제24421호, 2013.3.23, 타법개정

4.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再議) 요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조 및 대책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법령안 주관기관 및 관계 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④ 협의회의 의장은 법제처차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협의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나 1차 협의를 위하여 법령안 주관기관, 관계 기관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거칠 수 있다.

(3)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정책협의회 관련 사항은 일반적인 조직법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법과 분리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규정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도록 하였다

17. 파견업무의 지원 및 관리

< 파견업무의 지원 및 관리 >

제17조(파견업무의 지원 및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파견부대와 개인 파견요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파견부대와 개인 파견요원의 포상·징계·경력평가 등 근무사항과 예산과 조직 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입법취지 및 내용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업무는 파견과 철수라는 일반적 업무 이외에 다양한 지원업무와 관리가 필요한 업무가 있다. 이러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함

으로써 현지에서 파견활동을 수행하는 국군부대와 파견요원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무장관인 국방부장관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업무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파견부대원과 요원이 포상, 징계, 경력평가 등 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도록 법률적으로 강제하였다.

즉, 해외파견활동은 현지의 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사항을 직접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PKO 파병 관련 국방부훈령인「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제6장에서는 파병업무의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환송·환영행사 및 신고', '파병복귀자 귀국보고서 작성', '파병업무 관련 명령의뢰 절차', '홍보활동', '수당지급', '파병근무기장 수여', '면세품 추가구매 혜택 부여', '군 관사 지원', '포상·징계 및 근무평정 등', '경력평가 및 보직 등',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UN PKO 양해각서 체결', 'UN PKO 파병부대 경비보전' 등 다양한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른 해외파견활동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며, 보다 다양한 형태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유사입법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제13조(업무 지원 요청)**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지원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법제업무 지원)**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법령의 운영에 필요한 법제정보를 제공하거나 법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법령안의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령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법제교육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법제교육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21조(업무관리시스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유엔 PKO 활동이 포함된 통합법률(안)의 내용

파견업무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합법률과 분리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률규정의 차이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도록 하였다

18. 부 칙

< 시행일 >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

'부칙'이란 본칙에 부수하여 그 법령의 시행일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과도적 조치, 그리고 법령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한 부분을 말한다.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폐지하는 입법활동을 통하여 추구하려는 내용은 법령 본칙에서 규정되지만, 그 밖에도 법제도가 변동되는 시점을 분명히 하고 구 법률관계에서 신 법률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나 경과적 조치 같은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법령의 주요 내용이 되는 기본제도와는 달리 일정한 기간에만 적용한다든지 특정된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한다든지 또는 관련되는 법령을 개정해 주는 조치로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칙과는 달리 잠정적인 성격을 띠거나 일시적 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본칙을 모두 규정한 다음에 부칙이라는 표제 아래 따로 모아둔다.

부칙에 규정하는 사항들은 ① 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②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③ 법령의 시행에 따른 적용례·특례에 관한 규정, ④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 법률에서는 경과조치, 특례, 다른 법령의 개정 등 별도의 부칙규정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시행일'에 관한 규정만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행정내부적 규율관계를 위한 법률은 하위법령의 준비와 시행을 위한 준비 등을 위하여 3개월, 6개월, 1년 등의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법률은 현재 해외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행이 요청된다는 점에서 3개월의 기간을 두었다.

[부록 1 : 분리법률안]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군의 해외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방교류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파견활동이란 군이 해외에 파견되어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국적군 파견활동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이하 "국방교류협력파견활동"이라 한다) : 상대 국가가 비분쟁지역에 파견 요청을 하는 있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을 비롯한 비전투 국방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개별 파견요원"이란 해외파견활동을 지원 또는 참여하기 위하여 개인 단위로 해외에 파견된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테러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 3 조(기본원칙) 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침략적 전쟁부인, 국제법 준수, 국가안전보장 의무준수, 국회 동의 절차 등 대한민국 헌법원칙을 준수하며,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은 이 법과 관련 국제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범위 안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에 필요한 민·관·군 협력, 평화적 군사활동을 위한 제도정비,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법적 지위보장에 관한 제반 조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은 제외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다국적군으로 파견활동을 수행 중인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이 국제연합의 결정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제 5 조(해외파견활동 참여의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제연합, 다국적군 및 상대국의 국방교류협력 파견요청이 있으면, 부대 및 개별 요원 파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상비부대 등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조사활동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법에서 정한 해외파견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할 것인지 여부, 파견 목적·규모·기간·임무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 6 조(해외파견활동에 관한 국회의 동의) 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 7 조(국군부대의 파견) ① 정부는 제6조의 동의를 받아 해외파견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경우, 국제연합·다국적군 및 상대국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부대의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해외파견활동 파견부대의 형태와 규모를 판단하고 파견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 8 조(파견기간 및 파견기간의 연장) ① 국군부대의 파견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파견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파견을 2년의 범위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기간 연장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파견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로 파견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파견연장 동의안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파견기간을 2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경우 정부는 파견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지 정세 및 파견 성과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을 종료하여야 한다.

1. 파견부대가 파견임무를 완수한 경우
2.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파견의 종료요구) ① 국회는 파견부대의 임무나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의결을 통하여 정부에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국회 보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보장) 누구든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군인과 참여하였던 군인에게 해외파견활동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 국방부장관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개인 파견요원의 소양과 자질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정부는 이 법에서 정한 해외파견활동을 하는 군인에게 파견지역의 근무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고예방 및 재해방지) 정부는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개인 파견요원의 신변안전보호 및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대책과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해외파견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방부장관이 의장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추진단을 두고, 국방부차관이 실무추진단의 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와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파견업무의 지원 및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파견부대와 개인 파견요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파견부대와 개인 파견요원의 포상·징계·경력평가 등 근무사항과 예산과 조직 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2 : 통합법률안]

「국군등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 1 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공무원 및 일반국민(이하 "국군등"이라 한다)의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 및 철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군등의 해외파견활동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평화의 유지와 조성,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방교류협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파견활동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이하 "평화유지활동"이라 한다) :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 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 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나. 다국적군 파견활동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이하 "국방교류협력파견활동"이라 한다) : 상대 국가가 비분쟁지역에 파견 요청을 하고 있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을 비롯한 비전투 국방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파견부대"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를 말한다.

3. "개별 파견요원"이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된 군인(파견부대에 속한 군인은 제외한다), 경찰, 그 밖의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말한다.
4.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테러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 3 조(기본원칙) ① 국가는 해외파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침략적 전쟁부인, 국제법 준수, 국회 동의 절차 등 대한민국 헌법원칙을 준수하며,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은 이 법과 관련 국제법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범위 안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외파견활동에 필요한 민·관·군 협력, 평화적 군사활동을 위한 제도정비,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법적 지위보장에 관한 제반 조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외파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결정과정과 활동과정 및 평가에 대하여 국가기밀 등 공개가 불가능한 전략적·군사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④ 국가는 해외파견활동에 있어서 국가간 협약을 준수하고 현지 활동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에 노력하여야 하며,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안전과 건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간의 갈등최소화를 위하여도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해외파견 상비부대의 설치·운영) ① 정부는 해외에 신속히 파견되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파견활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해외파견 상비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조(해외파견활동 참여의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국제연합, 다국적군 및 상대국의 파견요청이 있으면 상비부대 등의 파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파견활동 참여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등 필요한 활동을 통하여 민·관·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상비부대 등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이하 "조사활동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법에서 정한 해외파견활동에 국군부대를 파견할 것인지 여부, 파견 목적·규모·기간·임무 등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 6 조(해외파견활동에 관한 국회의 동의) 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등을 해외에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사활동보고서
2. 파견지
3. 국군부대 파견의 필요성
4. 파견부대의 규모
5. 파견기간
6. 파견부대의 임무
7. 그 밖에 국군부대 파견과 관련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국회는 정부로부터 제1항의 파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파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회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국군등의 파견) ① 정부는 제6조의 동의를 받아 해외파견활동에 국군등을 파견하는 경우, 국제연합·다국적군 및 상대국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 등의 파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협정의 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국제협정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해외파견활동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형태와 규모를 판단하고 파견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 8 조(파견기간 및 파견기간의 연장) ① 국군부대의 파견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파견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파견을 2년의 범위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파견업무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로 파견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회에 제출하는 파견연장 동의안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파견기간을 2년의 범위로 연장하는 경우 정부는 파견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지 정세 및 파견 성과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파견의 종료)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파견을 종료하여야 한다.

1.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이 파견임무를 완수한 경우
2.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상대국의 파견 종료 요청이 있는 경우
4. 국회가 의결을 통하여 파견의 종료를 요구하거나 제9조의 기간연장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10조(국회 보고) 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해외파견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은 「국회법」에 따른다.

제11조(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법적 지위) 국가는 해외파견활동을 위하여 파견되는 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에 대하여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제협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보장) ① 누구든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또는 참여하였던 군인등에게 해외파견활동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해외파견활동 개별 파견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은 해외파견활동 개별 파견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며,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

제13조(민·관·군 협력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파견국·파견부대·개별 파견요원간의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해외파견활동 종합운영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할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의 소양과 자질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종합운영시스템과 제2항의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민간지원활동에의 참여) ①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은 교육·보건·의료·건설 등 파견지역에 필요한 지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외파견활동에 필요한 민간지원에 대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환경과 복지) 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에게 파견지역의 근무 환경과 수행 임무를 고려한 충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는 파견부대 소속 군인과 개별 파견요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모니터링) ①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파견활동에 따른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외파견활동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파견활동 기간 동안 파견된 지역과 주변지역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른 군사적·사회적·국제적 환경변화 등에 따른 해외파견활동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외교적·군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해외파견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국방부장관이 의장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추진단를 두고, 국방부차관이 실무추진단의 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와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파견업무의 지원 및 관리) ① 국방부장관은 파견부대와 개인 파견요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파견부대와 개인 파견요원의 포상·징계·경력평가 등 근무사항과 예산과 조직 등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 3 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외파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파견부대와 개별 파견요원은 이 법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

[부록 3 : 일본 파병 관련 법률]

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2002년 6월 18일 법률 제79호)

최종개정 : 2006년 12월 22일 법률 11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인도적인 국제구원활동 및 국제적인 선거감시활동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협력을 하기 위하여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계획 및 국제평화 협력업무 실시요령정책의 절차, 국제평화 협력대의 설치 등에 대해 정하는 것에 의해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 체제를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활동에 대한 물자 협력을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제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의 기본원칙) ① 정부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 물자 협력, 이것들에 대한 국외의 자(者)의 협력 등(이하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 등」이라고 한다.)의 조화와 동시에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창의와 식견의 활용에 의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인도적인 국제 구원 활동 및 국제적 선거감시 활동에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 등은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 등에 있어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내각을 대표해 행정 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 등에 관해 국제평화 협력본부장에게 협력한다.

제 3 조(정의)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의 정의는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국제연합의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실시하는 결의에 근거하여 무력 분쟁의 당사자(이하 「분쟁 당사자」라고 한다.) 간의 무력분쟁 재발 방지에 관한 합의 준수의 확보, 무력 분쟁 종료 후에 행해지는 민주적인 수단에 의한 통치 조직의 설립 원조 및 그 외에 분쟁에 대처하고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연합의 통괄 아래에 행해지는 활동이다. 무력 분쟁의 정지 및 분쟁정지의 유지하는 것의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해당 활동을 하는 지역이 속한 국가 및 분쟁 당사자의 해당 활동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무력 분쟁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활동을 하는 지역이 속한 국가의 해당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고 한다.)의 요청에 근거해 참가하는 둘 이상의 국가 및 국제연합에 의해 어느 분쟁 당사자에게도 치우치는 일이 없이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
2. **인도적인 국제 구원 활동** 국제연합의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혹은 경제사회이사회가 실시하는 결의 또는 별표 1에 속하는 국제기관의 요청에 의해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분쟁(이하 단지 「분쟁」이라고 한다.)에 의해서 피해를 받거나 혹은 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 그 외의 사람(이하 「재해민」이라고 한다.)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분쟁에 의해서 생긴 피해의 복구를 위해서 인도적 정신에 근거해 행해지는 활동이며, 해당 활동을 하는 지역이 속하는 나라의 해당 활동에 대한 동의가 있고, 또한 해당 활동을 하는 지역이 속한 국가가 분쟁 당사자인 경우에는 무력 분쟁의 정지 및 분쟁정지를 유지하는 것에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국제연합 그 외의 국제기관 또는 국제연합 가맹국 그 외의 나라국가(다음 호 및 제4호에서 「국제연합 등」이라고 한다.)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으로서 실시되는 활동을 제외)을 말한다.

2의 2. **국제적인 선거감시활동** 국제연합의 총회 혹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실시하는 결의 또는 별표 2의 국제기관이 행하는 요청에 근거하여 분쟁에 의해서 혼란이 일어난 지역에서 민주적인 수단에 의한 통치 조직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 또는 투표의 공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하는 활동이며, 해당 활동을 하는 지역이 속한 국가가 해당 활동에 대한 동의와 해당 활동을 하는 지역이 속한 국가가 분쟁 당사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력 분쟁의 정지 및 분쟁의 정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분쟁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국제연합 등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으로서 실시되는 활동을 제외)을 말한다.

3. **국제평화 협력업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 실시되는 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것, 인도적인 국제구원활동을 위해 실시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예에서 인도적인 국제 구원 활동을 위해서 실시되는 업무로 다음의 7)부터 17)까지의 사항 및 국제적인 선거감시활동을 위해서 실시되는 업무로 다음의 7) 및 17)(이러한 업무에 각각 부가된 업무를 포함. 이하와 같음)에 해당하는 업무로써 해외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1) 무력 분쟁 정지의 준수 상황의 감시 또는 분쟁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군대의 재배치 혹은 철퇴 혹은 무장해제 이행의 감시
   2) 중립 지대 그 외의 무력 분쟁의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지역에서의 주둔 및 순회
   3) 차량 그 외의 운반 수단 또는 통행인에 의한 무기(무기의 부품을 포함. 4)도 같음)의 반입 또는 반출의 유무의 검사 또는 확인
   4) 방폐된 무기의 수집, 보관 또는 처분
   5) 분쟁 당사자가 실시하는 정전선 그 외 이것과 비슷한 경계선의 설정의 원조
   6) 분쟁 당사자 사이의 포로 교환의 원조
   7) 의회의 의원 선거, 주민 투표 그 외 이것과 비슷한 선거 혹은 투표의 공정한 집행의 감시 또는 관리
   8) 경찰 행정 사무에 관한 조언 혹은 지도 또는 경찰 행정 사무의 감시

9) 8)의 내용 외에 행정 사무에 관한 조언 또는 지도
10) 의료(방역상의 조치를 포함)
11) 재해민의 수색 혹은 구출 또는 귀환의 원조
12) 재해민에 대한 식량, 의료, 의약품 그 외의 생활 관련 물자의 배포
13) 재해민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14) 분쟁에 의해 피해를 받은 시설 또는 설비, 재해민의 생활상 필요한 것의 복구 또는 정비를 위한 조치
15) 분쟁에 의해 오염, 그 외의 피해를 받은 자연 환경의 복구를 위한 조치
16) 1)부터 15)까지의 내용 외에 수송, 보관(비축을 포함), 통신, 건설 또는 기계 기구의 설치, 검사 혹은 수리
17) 1)부터 16)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업무

4. **물자 협력** 다음의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연합 등에 대해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2) 인도적인 국제 구원 활동(별표 3에 의해 국제기관에 의해서 실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하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동호에서 규정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도 같음)
3) 국제적인 선거감시활동

5. **해외** 우리나라 이외의 영역(공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파견처** 평화협력업무를 하는 외국(공해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관계 행정기관** 다음의 기관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각부 및 내각부설치법(평성11년 법률 제89호)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 및 국가행정조직법(쇼와23년 법률 제120호) 제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
2) 내각부설치법 제40조 및 제56조 및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의 3에 규정하는 특별한 기관

제 2 장 국제평화 협력본부

제 4 조(설치 및 소관사무) ① 내각부에 국제평화 협력본부(이하 「본부」라고 함)를 둔다.
② 본부는 다음의 사무를 주관한다.
1. 국제평화 협력업무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고 함) 안의 작성에 관한 것
2. 국제평화 협력업무 실시요령(이하 「실시요령」이라고 함)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것
3. 전호의 변경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파견국에서 실시될 필요가 있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실시한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효과의 측정 및 분석 및 파견국에서의 국제연합 직원 그 외 사람과의 연락에 관한 것
4. 국제평화협력대(이하 「협력대」라고 함)의 운용에 관한 것
5.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에의 요청, 수송의 위탁 및 국가 이외의 사람에 대한 협력의 요청에 관한 것
6. 물자 협력에 관한 것.
7.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등에 관한 조사(제3호로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및 지식의 보급에 관한 것.
8. 전 각 호의 내용 외, 법령의 규정에 의해 본부에 속한 사무

제 5 조(조직) ① 본부의 장은 국제평화 협력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고 함)으로서 내각총리대신이 맡는다.
② 본부장은 본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본부에 국제평화 협력부본부장(이하에서 「부본부장」이라고 함)을 두며 내각 관방 장관이 맡는다.
④ 부본부장은 본부장의 직무를 돕는다.
⑤ 본부에 국제평화 협력본부원(이하에서 「본부원」이라고 함)을 둔다.

⑥ 본부원은 내각법(쇼와22년 법률 제5호)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미리 지정된 국무대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내각부설치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명담당대신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⑦ 본부원은 본부장에 대해 본부의 사무와 관련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⑧ 본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실시계획마다 기간을 정하고, 스스로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해외에 있어 전조 제2항 제3호의 사무를 실시하는 조직으로서 협력대를 둘 수 있다.

⑨ 본부는 본부의 사무(협력대가 실시하는 것을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⑩ 사무국에 사무국장 그 외의 직원을 둔다.

⑪ 사무국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리한다.

⑫ 전 각항에 정하는 것 외에, 본부의 조직에 관계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국제평화 협력업무

제 6 조(실시계획) ① 내각총리대신은 우리나라가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동의가 있을 때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 및 실시계획 안에 대해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 실시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자 및 해당 활동을 하는 지역이 속한 국가의 해당 업무의 실시에 대한 동의
2. 인도적인 국제 구원 활동을 위해서 실시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활동을 하는 지역이 속한 국가의 해당 업무의 실시에 대한 동의
3. 국제적인 선거감시활동을 위해서 실시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활동을 하는 지역이 속한 국가의 해당 업무의 실시에 대한 동의

② 실시계획에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에 관한 기본방침
2. 협력대의 설치 그 외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종류 및 내용
   나. 파견국 및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 기간
   다. 협력대의 규모 및 구성 및 장비
   라. 해상보안청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
      1) 해상보안청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종류 및 내용
      2)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하는 해상보안청의 직원 규모 및 구성, 장비
   마. 자위대의 부대 등(자위대법(쇼와29년 법률 제165호)) 제8조에 규정된 부대 등을 말함)이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
      1) 자위대의 부대 등이 행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종류 및 내용
      2)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행하는 자위대의 부대 등의 규모 및 구성원 장비
   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해상보안청장관 또는 방위대신에 위탁할 수 있는 수송의 범위
   사. 관계행정기관의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아. 그 외의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에 관한 주요사항

③ 외무대신은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해 제1항의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1호에서 제2호의 2까지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장의 규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 실시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와 관련되는 장비는 사무총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한도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해상보안청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행해지는 국제평화 협력업무는 제3조 제3호 7)부터 16)까지의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호 17)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며, 해상보안청법(쇼와23년 법률 제28호) 제25조의 취지에 비추어 해상보안청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중에서 해상보안청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서 실시계획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자위대의 부대 등이 실시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는 제3조 제3호 1)부터 6)까지의 업무, 동호 10)부터 16)까지의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호 17)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무이며, 자위대의 부대 등이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중에서 자위대의 주된 임무의 수행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서 실시계획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자위대의 부대 등이 실시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이며 제3조 제3호 1)부터 6)까지 또는 이러한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호 17)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있어서 내각총리대신은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위대 부대 등의 해외 파견 개시 전에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평화유지대에 참가할 때, 기본 다섯 개의 원칙(제3조 제1호,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13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제24조의 규정의 취지를 말함) 및 이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 또는 중의원이 해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위대 부대 등의 해외 파견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국회에서 지체없이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내각총리대신으로부터 국회의 승인이 요구된 경우에는 먼저 개회된 의원(議院)에서 내각총리대신이 국회의 승인을 요구한 후, 국회의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이후에 개회된 의원(議院)에서 먼저 개회된 의원(議院)으로부터 의안의 송부가 있은 후 국회의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각각 의결하도록 노력하지 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불승인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동항의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⑩ 제7항의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는 날을 지나 계속 실시하려고 할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해당일의 30일 전부터 해당일까지의 사이에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계속해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 부의하고,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 또는 중의원이 해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국회에서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정부는 전항의 경우에서 불승인의 의결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제7항의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⑫ 위 2항의 규정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제7항의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계속한 후, 2년을 초과하여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계속해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 준용한다.

⑬ 제1항(각호를 제외) 및 제3항의 규정은 실시계획의 변경(다음의 경우에 실시해야 할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해외 파견 종료와 관련되는 변경을 포함)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항 중「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동의가 있을 때」및 제3항 중「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것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로 적용한다.

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 실시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합의 혹은 동의 또는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의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해당 활동이 어느 분쟁 당사자에게도 치우치는 일 없이 실시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명도적인 국제 구원 활동을 위해서 실시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대해서는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동의 혹은 합의 또는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동의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제적인 선거감시활동을 위해서 실시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대해서는 제3조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동의 혹은 합의 또는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동의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7 조(국회에 대한 보고) 내각총리대신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각각 해당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었을 때 해당 결정 또는 변경과 관련되는 실시계획의 내용
2. 실시계획에 정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가 종료했을 때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의 결과
3. 실시계획에 정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는 기간과 관련되는 변경이 있었을 때 해당 변경전의 기간에 있어서의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의 상황

제 8 조(실시요령) ① 본부장은 실시계획에 따라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 및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정하는 실시요령의 작성 및 필요에 따라 이것을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1.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해야 할 지역 및 기간
2. 전호의 지역 및 기간마다의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종류 및 내용
3. 제1호의 지역 및 기간마다의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의 방법(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사용되는 장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제1호의 지역 및 기간마다의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해야 할 자에 관한 사항
5. 파견국의 관계 당국 및 주민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6. 제6조 제13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해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실시해야 할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중단에 관한 사항
7. 그 외 본부장이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를 위해서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② 실시요령의 작성 및 변경에 있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으로서 실시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관해서는 전항 제6호의 사항에 관계되어 본부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총장 또는 파견국에 대해 사무총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의 지시에 적합하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하는 협력대의 대원에 대해 실시요령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9 조(국제평화 협력업무등의 실시) ① 협력대는 실시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한다.

② 협력대의 대원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제4조 제2항 제3호의 사무에 종사하며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하는 현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동호의 사무가 적절히 실시되는데 있어서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정보 및 자료의 수집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해상보안청 장관은 실시계획에 정해진 제6조 제5항의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대해 본부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해상보안청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해상보안청의 직원에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위대신은 실시계획에 정해진 제6조 제6항의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대해 본부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자위대의 부대 등에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전2항의 규정에 근거해 국제평화 협력업무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해상보안청의 직원 또는 전항의 자위대의 부대 등에 소속된 자위대원(자위대법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대원을 말함. 이하 같음)은 각각 실시계획 및 실시요령에 따라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

⑥ 협력대는 외무대신이 지정하는 재외 공관과 밀접하게 연락을 유지한다.

⑦ 외무대신이 지정하는 재외 공관장은 외무대신의 명을 받아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실시한다.

제10조(협력대의 대원의 임면) 본부장은 협력대의 대원(이하 「대원」이라고 함)의 임면을 실시한다.

제11조(대원의 채용) ① 본부장은 제3조 제3호 7)부터 16)까지의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호17)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지망하는 자 중에서 전형에 의해 임기를 정하고 대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있어 관계 행정기관 혹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민간의 단체의 협력을 얻고 넓게 인재의 확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관계 행정기관의 직원의 협력대에의 파견) ① 본부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실시계획에 따라 국제평화 협력업무로서 협력대가 행하는 것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능력 등을 가지는 직원(국가 공무원법(쇼와 22년 법률 제120호)) 제2조제3항 각호((제16호를 제외)의 자를 제외)를 협력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호 1)부터 6)까지의 업무 및 이러한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호 17)의 정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대해서는 자위대원 이외의 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소장 사무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 대하고 동항의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을 기간을 정해 협력대에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파견된 직원 중 자위대원 이외의 사람은 종전의 관직을 보유한 채로 동항의 기간을 임기로서 대원에게 임용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파견된 자위대원은 동항의 기간을 임기로서 대원에게 임용하고 대원의 신분 및 자위대원의 신분을 통합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관직을 보유한 채로 대원에 임용되는 사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대원의 신분 및 자위대원의 신분을 통합하는 자는 본부장의 지휘 감독하에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한다.

⑥ 본부장은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방위대신에 의해 파견된 대원(이하 이 조항에 대해 「자위대 파견 대원」이라고 함)에 대해 그 파견의 필요가 없어졌을 경우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위대 파견 대원의 대원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자위대원은 자위대에 복귀하는 것으로 한다.

⑦ 자위대 파견 대원은 자위대원의 신분을 잃었을 때는 동시에 대원의 신분을 잃는 것으로 한다.

⑧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대원의 신분 및 자위대원의 신분을 합쳐 가지게 되는 사람에 대한 급여 등(제16조에 규정하는 국제평화 협력 수당 이외의 급여, 재해 보상 및 퇴직 수당 및 공제 조합의 제도를 말한다.)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자위대에만 소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⑨ 제4항으로부터 전항까지 정하는 것의 외, 동항에 규정하는 사람의 신분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3조(관계 직원의 협력대에의 파견) ① 해상보안청 장관은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동항의 해상보안청의 직원에게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게 할 때는 해당 직원을 기간을 정해 협력대에게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 파견된 해상보안청의 직원은 종전의 관직을 보유한 채로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하여 임용되어 대원으로서 제4조 제2항 제3호로 내거는 사무에 종사한다.

② 방위대신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해 자위대의 부대 등에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게 할 때는 해당 자위대의 부대 등에 소속하는 자위대원을 기간을 정해 협력대에게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파견된 자위대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서 대원에게 임용 되어 자위대원의 신분 및 대원의 신분을 통합하게 되는 것으로 대원으로서 제4조 제2항 제3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 전항에 정하는 것의 외에 동항의 규정에 의해 자위대원의 신분 및 대원의 신분을 병합하여 보유하는 자의 신분 취급에 대해서는 전조 제6항으로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 제외)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대원에 대해서는 대원이 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10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영리기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조항에 대해 「영리기업」이라고 함)의 임원, 고문 혹은 평의원(이하 이 조항에 대해 「임원등」이라고 함)의 직에의 취임 혹은 스스로 영리 기업을 경영하고 또는 보수를 얻고 영리 기업 이외의 사업의 단체의 임원 등의 취임 혹은 사업에 종사 혹은 사무를 실시하고 있을 경우에 대해도 동항 및 동법 제10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연수) 대원은 본부장이 정하는 것에 의해 행해지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연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제16조(국제평화 협력수당) ①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하는 파견국의 근무 환경 및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특징에 비추어 국제평화 협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국제평화 협력수당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시에 인사원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제17조(복제등) ① 대원의 복제는 정령으로 정한다.

② 대원에게는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피복 지급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제18조(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총수의 상한)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총수는 2천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9조(대원의 정원) 대원의 정원은 실시계획에 따라서 행해지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정원으로 개개의 협력대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수송의 위탁) ① 본부장은 실시계획에 근거해 해상보안청 장관 또는 방위대신에 대해 제3조 제3호 11)에서 규정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를 위한 선박 혹은 항공기에 의한 재해민의 수송 또는 동호 10)부터 15)까지 규정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실시를 위한 선박 혹은 항공기에 의한 물품의 수송(파견국의 국내의 지역간 및 1의 파견국으로 인접하는 다른 파견국과의 사이에 행해지는 재해민의 수송 또는 물품의 수송을 제외)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해상보안청 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있었을 경우에는 해상보안청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 대하고, 해당 위탁을 받아 및 이것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방위대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자위대의 주된 임무의 수행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서 해당 위탁을 받아 및 이것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① 본부장은 협력대가 실시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 및 그 외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소관 사무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 있어 동항의 협력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소형 무기의 보유 및 대여) 본부는 대원의 안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소형 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제23조(소형 무기의 관리) ① 본부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력대가 파견국에 대해 실시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대원을 종사시키는데 있어서 현지의 치안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원이 파견국에 체재하는 동안, 전조의 소형 무기를 제6조 제2항 제2호 3)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에 정하는 장비를 해당 대원에게 대여할 수 있다.

② 소형 무기를 관리할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본부의 직원 중에서 본부장에 의해 지정된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대원에게 대여하기 위해 소형 무기를 보관할 수 있다.

③ 소형 무기의 대여의 기준, 관리 등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4조(무기의 사용) 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형 무기의 대여를 받아 파견국에 있어서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대원은 자기 또는 자기와 함께 현장에 소재하는 다른 대원 혹은 그 직무에 수반하여 자기의 관리 하에 들어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태에 있어 합리적으로 필요라고 판단되는 때에 한해 해당 소형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파견국에서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해상 보안관 또는 해상 보안관보(이하 이 조항에 대해 「해상 보안관등」이라고 한다.)는 자기 또는 자기와 함께 현장에 소재하는 다른 해상보안청의 직원, 대원 혹은 그 직무에 수반해 자기의 관리 하에 들어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태에 있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제6조 제2항 제2호(2) ②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에 정하는 장비인 제22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소형 무기로 해당 해상 보안관등이 휴대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파견국에 있어서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위관은 자기 또는 자기와 함께 현장에 소재하는 다른 자위대원, 대원 혹은 그 직무에 수반하여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방위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태에 응해 합리적으로 필요라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 제6조 제2항 제2호 5) ②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계획에 정하는 장비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 무기 또는 무기의 사용은 해당 현장에 상관이 있을 때는 그 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위난이 임박하여 그 명령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해당 현장에 있는 상관은 통제가 부족한 소형 무기 또는 무기의 사용에 의해 오히려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위험 또는 사태의 혼란을 부르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소형 무기 또는 무기의 사용이 이러한 규정 및 다음 방향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⑥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형 무기 또는 무기의 사용 시에 형법(명치40년 법률 제45호)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⑦ 해상보안청법 제210조의 규정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파견국에 대해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해상 보안관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⑧ 자위대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파견국에 대해 국제평화 협력업무에 종사하는 자위관에 대해서는 자위대원 이외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⑨ 제1항의 규정은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국제평화 협력업무의 중단(이하 이 조항에 대해 「업무의 중단」이라고 함.)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와 관련되는 대원에 대해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업무의 중단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와 관련되는 해상 보안관등에 대해서 제3항 및 전항의 규정은 업무의 중단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해당 국제평화 협력업무와 관련되는 자위관에 있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 무기 또는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제6항의 규정은 이 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형 무기 또는 무기의 사용에 대해 준용한다.

제 4 장 물자 협력

제25조(물자 협력) ① 정부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인도적인 국제 구원 활동 또는 국제적인 선거감시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자 협력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물자 협력에 대해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외무대신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인도적인 국제 구원 활동 또는 국제적인 선거감시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해 물자 협력에 대해 내각회의의 결정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물자 협력을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해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 대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소장 사무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 대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 대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장 잡 칙

제26조(민간의 협력 등) ① 본부장은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의해 국제 평화 협력업무를 충분히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물자 협력에 관계되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을 얻고 물품의 양도, 대출 또는 역무의 제공에 대해 국외의 사람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협력을 구했던 국외의 자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이 해당 협력에 의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에 관해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7조(정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의 외,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수속 그 외 이 법률의 시행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3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삭제

제 3 조(재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경과했을 경우에 이 법률의 실시 상황에 있어 이 법률 실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평성 10년 6월12일 법률 제102호)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해 1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평성11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제 1 조(시행기일) ① 이 법률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평성11년 법률 8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은 당해 각호가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제14조 제3항, 제23조,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 공포일

제 2 조(직원의 신분 인계) 이 법률의 시행시에 종전의 총리부, 법무성,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또는 자치성(이하 이 조에 대해 「종전의 부성」이라고 한다.)의 직원(국가행정조직법(소화23년 법률 제120호) 제8조의 심의회 등의 회장 또는 위원장 및 위원, 중앙방재회의의 위원, 일본공업표준 조사회의 회장 및 위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인 자는 별도로 령을 받지 않는 한,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이 법률의 시행 후의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 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 산업성, 국 교통성 혹은 환경성(이하 이 조에 대해 '신부성」이라고 한다.) 또는 이에 설치된 부국 혹은 기관 가운데 이 법률의 시행 때 실제로 해당 직원이 속한 종전의 부성 또는 이에 설치된 부국 혹은 기관의 상당한 신부성 또는 이에 설치된 부국 혹은 기관으로서 정령으로 정해 그에 상당한 직원이 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별도로 정한 경과조치) 제2조부터 전 조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수반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부 칙 (평성11년 7월 16일 법률 제160호)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은 평성13년 1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평성13년 12월 14일 법률 제157호)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평성18년 12월 22일 법률 제118호)

제 1 조(시행 기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고 3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 (제3조 관계)

(1) 국제연합
(2) 국제연합의 총회에 의해 설립된 기구 또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 다음의 사항 그 외의 정령에서 정하는 것
  1)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2) 국제연합 팔레스타인난민구제사무기구

  3) 국제연합 아동기금
  4) 국제연합 자원봉사계획
  5) 국제연합 개발계회
  6) 국제연합 환경계획
  7) 세계식량계획
  8)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9) 세계보건기구
(3) 국제이주기구

별표 제2 (제3조 관계)

(1) 국제연합
(2) 국제연합 총회에 의해 설립된 기구 또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써 국제연합개발계획 그 정령등에서 정하는 것
(3) 국제적인 선거감시활동에 있어 실적 또는 전문능력을 가진 국제연합헌장 제52조에 규정된 지역기구로써 정령에서 정하는 것

별표 제3 (제3조 관계)

(1) 국제연합의 총회에 의해 설립된 기구 도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써 다음의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것
  1)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2) 국제연합 팔레스타인난민구제사무기구
  3) 국제연합 아동기금
  4) 국제연합 자원봉사계획
  5) 국제연합 개발계회
  6) 국제연합 환경계획
  7) 세계식량계획
  8)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9) 세계보건기구
(2) 국제이주기구

Ⅱ. 주변사태에 즈음하여 우리나라가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1999년)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국에 대한 직접적 무력공격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는 사태 등 일본국 주변지역에서의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이하 "주변사태"라 한다)에 대응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그 실시의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고 일본과 미국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이하 "일미안보 조약"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운용에 기여하며 일본의 평화 및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주변사태 대응의 기본원칙) ① 정부는 주변사태 시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후방지역 지원,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 기타 주변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하 "대응조치"라 한다)를 실시하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

② 대응조치의 실시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대응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내각을 대표하여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응조치에 관하여 상호협력 하도록 한다.

제 3 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후방지역지원: 주변사태시에 일미안전보장조약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 편의의 제공, 기타 지원조치로써 후방지역에서 일본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 주변사태에서 발생한 전투행위(국제 무력분쟁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인명 살상 또는 물건의 파괴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후방지역에서 조난자에 대하여, 그 수색 또는 구조활동(구조자의 수송 포함)으로서 일본이 후방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후방지역: 일본 영역 및 현재 전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그 행위가 이루어질 일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본국 주변의 공해(해양법에 관한 유엔조약에서 규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상공의 범위를 말한다.
4. 관계 행정기관: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앙의 행정기관 및 동법 제8조의3에서 규정하는 특별기관으로서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후방지역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자위대에 속하는 물품의 제공 및 자위대에 의한 용역의 제공(제3항후단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③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은 자위대의 부대 등(자위대법 제8조에 규정하는 부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을 하는 자위대의 부대 등에서 그 실시에 수반하여 당해 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미군 부대에 대하여 후방지역 지원으로서 행하는 자위대에 속하는 물품제공 및 자위대에 의한 용역의 제공은 별표 2와 같다.

제 4 조(기본계획) ① 내각총리대신은 주변사태시에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 중의 어느 하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조치의 실시 및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안에 의거하여 각의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1. 전조제2항의 후방지역지원
2. 전호에 열거하는 것 이외에 관계행정기관이 후방지역 지원으로서 실시하는 조치로서 특히 내각이 관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3.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

② 기본계획에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방침
2.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하는 후방지역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당해 후방지역 지원에 관계되는 기본적 사항
나. 당해 후방지역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다. 당해 후방지역 지원을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당해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당해 후방지역 지원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3.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당해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에 관계되는 기본적 사항
나. 당해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당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당해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의 실시에 수반되는 전조 제3항 후단의 후방지역 지원의 실시에 관한 사항(당해 후방지역 지원을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당해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기타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4. 전2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자위대가 실시하는 대응조치 중 중요한 것의 종류 및 내용과 그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5. 전3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관계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대응조치 중 특히 내각이 관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조치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6. 대응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이외의 자에 대하여 협력을 구하거나 협력을 의뢰하는 경우에 그 협력의 종류 및 내용과 그 협력에 관한 중요사항

7. 대응조치의 실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준용한다.

제 5 조(국회의 승인) ① 기본계획에 정해진 자위대의 부대 등이 실시하는 후방지역 지원 또는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은 이러한 대응조치의 실시 전에 그의 실시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당해 후방지역지원 또는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후방지역 지원 또는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신속히 이러한 대응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국회의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전항의 경우에 불승인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신속히 당해 후방지역 지원 또는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 6 조(자위대에 의한 후방지역 지원으로서의 물품 및 용역의 제공) ① 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제2항의 후방지역지원으로서의 자위대에 속하는 물품의 제공을 실시하도록 한다.
② 방위청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제2항의 후방지역지원으로서의 자위대에 의한 용역제공에 관하여 실시요령을 정하고 방위청 본청의 기관 또는 자위대의 부대 등에 그 실시를 명하도록 한다.
③ 방위청장관은 전항의 실시요령에서 당해 후방지역 지원을 실시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실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한다.
④ 방위청장관은 실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률 또는 기본계획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당 구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활동의 중단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항의 후방지역 지원 중 공해 또는 그 상공에서의 수송의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 부대 등의 장 또는 지정받은 자는 당해 수송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의 근방에서 전투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경우 또는 부근의 상황에 비추어 전투행위가 이루어질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송의 실시를 일시 중지하여 당해 전투행위에 의한 위험을 피하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기다리도록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은 동항의 실시요령의 변경(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요령을 축소하는 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7 조(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의 실시 등) ① 방위청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에 관하여 실시요령을 정하고 이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의 부대 등에 그 실시를 명하도록 한다.

② 방위청장관은 전항의 실시요령에서 당해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구역(이하 이조에서 “실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한다.
③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전투참가자 이외의 조난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구조하도록 한다.
④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시구역에 인접하는 외국의 영해에 있는 조난자를 인정한 때에는 당해 외국이 동의를 얻어 당해 조난자를 구조할 수 있다. 단, 당해 해역에서 이미 전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당해 활동기간을 통하여 전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전조제4항의 규정은 실시구역의 지정 변경 및 활동중단에 관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은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의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 부대 등의 장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실시요령의 변경(전항에서 준용하는 전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구역을 축소하는 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⑦ 전조의 규정은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의 실시에 수반되는 제3조제3항 후단의 후방지역 지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8 조(관계 행정기관에 의한 대응조치의 실시) 전2조에 정하는 것 외에 방위청장관 및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 9 조(국가 이외의 자에 의한 협력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의 장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권한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이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해 협력을 요구받거나 또는 협력을 의뢰받은 국가 이외의 자가 그 협력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제10조(국회에 대한 보고) 내각총리대신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2. 기본계획에 정하는 대응조치가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

제11조(무기의 사용) ① 제6조제2항(제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후방지역 지원으로서의 자위대의 용역제공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의 부대 등의 지휘관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자기 또는 자기와 함께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태에 맞게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후방지역 수색 및 구조활동의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의 부대 등의 지휘관은 조난자 구조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자기 또는 자기와 함께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태에 맞게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사용에 있어서는 형법 제36조 또는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타인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정령에로의 위임)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치 기타 이 법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3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이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자위대법의 일부 개정) 자위대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9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

제100조의10(후방지역 지원 등) ① 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주변사태 시에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위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후방지역지원으로서의 물품의 제공(전조제1항의 적용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주변사태시에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위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방위청 본청의 기관 및 부대 등에 후방지역 지원으로서의 용역의 제공(전조제2항의 적용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부대 등에 후방지역 수색구조활동을 행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2.

Ⅲ.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공격 등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유엔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외국 국가들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및 관련된 유엔의 결의 등에 기초한 인도적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이하 “테러공격”이라 한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결의 제1368호에서 국제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인정된 것을 근거로 하고, 아울러 동 안보리결의 제1267호, 제1333호 기타 동 안보리 결의가 국제 테러리즘의 행위를 비난하고 유엔의 모든 가맹국에 대하여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본이 국제 테러리즘의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테러 공격에 의해 초래되고 있는 위협의 제거에 노력함으로써 유엔헌장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미국 기타 외국의 군대, 기타 이와 유사한 조직(이하 “諸 외국의 군대”라 한다)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그 실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유엔의 총회, 안전보장이사회나 경제사회이사회가 실시하는 결의 또는 유엔·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된 기구나 유엔의 전문기구 또는 국제기구(이하 “유엔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거하고 일본이 인도적 정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치, 그 실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 조(기본원칙) ① 정부는 이 법률에 의한 협력지원활동, 수색구조활동, 이재민구조활동, 기타 필요한 조치(이하 “대응조치”라 한다)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써 국제 테러리즘의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일본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기여하여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

② 대응조치의 실시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③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일본 영해 및 현재 전투행위(국제적인 무력 분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명의 살상 또는 물건의 파괴행위를 말한다)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지역에서 실시되는 활동기간 내에 전투행위가 없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다음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1. 공해(해양법에 관한 유엔조약에 규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및 그 상공
2. 외국의 영역(해당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대응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내각을 대표하여 행정각부를 지휘·감독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응조치의 실시와 관련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 3 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협력지원활동 : 제 외국의 군대 등에 대한 물품 및 역무의 제공, 편의제공, 기타 조치로 일본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색구조활동 : 제 외국의 군대 등의 활동 시에 이루어진 전투행위에 의해 조난을 당한 전투참가자에 대하여 수색 또는 구조를 실시하는 활동(구조한 자의 수송을 포함한다)으로서 일본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재민구조활동 : 테러공격과 관련하여 유엔의 총회, 안전보장이사회나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 또는 유엔 등이 요청하는 바에 의거하고,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주민과 기타(이하 "이재민"이라 한다)의 구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식량, 의류, 의약품 기타 생활관련 물자의 수송, 의료, 기타 인도적 정신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일본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관계 행정기관 : 다음에 열거하는 기관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각부 및 내각부설치법(1999년 법률 제89호)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 및 국가행정조직법(1948년 법률 제120호)제3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
   나. 재각부설치법 제40조, 제56조 및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의3에 규정하는 특별한 기관

② 협력지원활동으로 실시하는 자위대 물품의 제공 및 자위대에 의한 역무의 제공(제3항 후단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수색구조활동은 자위대 부대 등[자위대법(1945년 법률 제165호) 제8조에 규정하는 부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수색구조활동을 하는 자위대의 부대 등에서 그 실시에 수반하여 해당 활동에 상당하는 활동을 하는 제 외국의 군대 등의 부대에 대하여 협력지원활동으로 행하는 자위대 물품의 제공 및 자위대에 의한 역무의 제공은 별표2에 따른다.

제 4 조(기본계획) ① 내각총리대신은 다음에 열거하는 대응조치의 어느 하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대응조치의 실시 및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계획의 안에 대하여 각의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2항의 협력지원활동
2. 전호에 열거한 것 이외에 관계 행정기관이 협력지원활동으로 실시하는 조치로서 특히 내각이 관여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3. 수색구조활동
4. 자위대에 의한 이재민 구원활동
5. 전호에 열거하는 것 이외에 관계 행정기관이 이재민구원활동으로 실시하는 조치로서 특히 내각이 관여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② 기본계획에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방침
2.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하는 협력지원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해당 협력지원활동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
   나. 해당 협력지원활동의 종류 및 내용
   다. 해당 협력지원활동을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라. 해당 협력지원활동을 자위대가 외국의 영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활동을 외국의 영역에서 실시하는 자위대의 부대 등의 규모, 구성 및 장비와 파견기간
   마. 관계 행정기관이 그 사무 또는 사업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물품 이외의 물품을 조달하여 제 외국의 군대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바. 기타 해당 협력지원활동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3.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해당 수색구조활동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
   나. 해당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해당 수색구조활동의 실시에 따른 전조 제3항 후단의 협력지원활동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해당 협력지원활동을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해당 수색구조활동을 자위대가 외국의 영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활동을 외국의 영역에서 실시하는 자위대의 부대 등의 규모, 구성 및 장비와 파견기간
   마. 기타 해당 수색구조활동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4. 전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열거하는 이재민 구조활동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가. 해당 이재민 구조활동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

   나. 해당 이재민 구조활동의 종류 및 내용
   다. 해당 이재민 구조활동을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라. 해당 이재민 구조활동을 자위대가 외국의 영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 활동을 외국의 영역에서 실시하는 자위대의 부대 등의 규모, 구성 및 장비와 파견기간
   마. 관계 행정기관이 그 사무 또는 사업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물품 이외의 물품을 조달해 유엔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실시에 관련된 중요사항
   바. 기타 해당 이재민 구조활동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5. 전 3호에 열거하는 것 이외에 자위대가 실시하는 대응조치 중 중요한 것의 종류, 내용 및 그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6. 제2호 내지 제5호에 열거하는 것 이외에 관계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대응조치 중 특히 내각이 관여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의 실시에 관한 중요사항
7. 대응조치의 실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연락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대응조치를 외국의 영역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외국과 협의하여 실시할 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제 5 조(자위대에 의한 협력지원활동으로서 물품 및 역무 제공의 실시) ① 내각총리대신은 기본계획에 정해진 자위대의 부대 등이 실시하는 협력지원활동, 수색구조활동 또는 이재민 구조활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응조치의 개시일(방위청장관이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대응조치의 실시를 자위대의 부대 등에 명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러한 대응조치의 실시에 관한 국회의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가 폐회중일 경우 또는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국회에서 승인을 구해야 한다.

② 정부는 전항의 경우에 승인하지 않는다는 의결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해당 협력지원활동, 수색구조활동 또는 이재민구조활동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 6 조(자위대에 의한 협력지원활동으로서 물품 및 역무 제공의 실시) ① 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제2항의 협력지원활동으로서의 자위대에 속하는 물품을 제공한다.

② 방위청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3조제2항의 협력지원활동으로서 자위대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대하여 실시요강을 정하고, 이것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방위청 본청의 기관 또는 자위대의 부대 등에 그 실시를 명하도록 한다.

③ 방위청장관은 전항의 실시요강에서 해당 협력지원활동을 실시하는 지역(이하 이조에서는 "실시구역"이라 한다)을 정하도록 한다.

④ 방위청장관은 실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률 또는 기본계획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거기에서 실시되고 있는 활동의 중단을 명하여야 한다.

⑤ 제3조제2항의 협력지원활동 중 공해나 그 상공 또는 외국의 영역에서의 활동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의 부대 등의 장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해당 협력지원활동을 실시하는 장소의 근방에서 전투행위가 벌어지게 된 경우 또는 부근의 상황 등에 비추어 전투행위가 벌어질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지원활동의 실시를 일시 중지하거나 피난하게 하여 해당 전투행위에 의한 위험을 회피하면서 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기다리도록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은 동항의 실시요강의 변경(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구역을 축소하는 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7 조(수색구조활동의 실시) ① 방위청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수색구조활동의 실시요강을 정하고 이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의 부대 등에 그 실시를 명하도록 한다.

② 방위청장관은 전항의 실시요강에서 해당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할 구역(이하 이 조에서는 "실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도록 한다.

③ 수색구조활동을 실시할 경우에 전투참가자 이외의 조난자가 있을 때에는 구조하도록 한다.

④ 제8조제4항의 규정은 실시구역의 지정 변경 및 활동 중단에 대해서, 동조 제5항의 규정은 수색구조활동의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의 부대 등의 장 또는 그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실시요강의 변경(전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구역을 축소하는 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⑥ 제6조의 규정은 수색구조활동의 실시에 따른 제3조제4항 후단의 협력지원활동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8 조(자위대에 의한 이재민 구조활동의 실시) ① 방위청장관른 기본계획에 따라 자위대에 의한 이재민 구조활동의 실시요강을 정하고 이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의 부대 등에 그 실시를 명하도록 한다.

② 방위청장관은 전항의 실시요강에서 해당 이재민 구조활동을 실시할 구역(이하 이조에서 "실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③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실시구역의 지정 변경 및 활동 중단에 대하여, 제8조제5항의 규정은 이재민 구조활동의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의 부대 등의 장 또는 그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실시요강의 변경(전항에서 준용하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구역을 축소하는 변경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 9 조(관계 행정기관에 의한 대응조치의 실시) 전3조에 정하는 것 이외에 방위청장관 및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및 기본계획에 따라 협력지원활동, 이재민 구조활동 기타 대응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10조(물품의 무상대여 및 양도) 내각총리대신 및 각부의 장관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탄약을 포함한 무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 외국의 군대 또는 유엔 등으로부터 활동용으로 제공하도록 해당 물품이 무상대여 또는 양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신고가 있은 경우에 해당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관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해당 신고에 관련되는 물품을 해당 제 외국의 군대 또는 유엔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내각총리대신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
2. 기본계획에 정하는 대응조치가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

제12조(무기의 사용) ① 협력지원활동, 수색구조활동 또는 이재민 구조활동의 실시를 명령받은 자위대의 부대 등의 지휘관은 자기 또는 자기와 함께 현장에 소재하는 다를 자위대원이나 그 직무 실시 시에 자기의 관리 하에 있는 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방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사용은 현장에 상관이 있을 때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 또는 사태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무기의 사용이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사용 시에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36조 또는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정령으로의 위임)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한 절차 기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자위대법의 일부 개정) 자위대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중 제31항을 제33항으로 하고, 제17항부터 제30항까지를 2항씩 뒤로 밀고 제16항 다음에 다음의 2항을 추가한다.

17. 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 등에 대응하여 실시되는 유엔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 외국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및 유엔결의 등에 근거한 인도적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 효력을 발휘할 동안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위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협력지원활동으로서 물품 제공을 실시할 수 있다.
18. 장관은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등에 대응하여 실시되는 유엔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 외국의 활동에 대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조치 및 유엔결의 등에 근거한 인도적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 효력을 발휘할 동안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위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방위청 본청의 기관 및 부대 등에 협력지원활동으로서 역무의 제공을, 부대 등에 수색구조활동 또는 이재민구조활동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 3 조 이 법률은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날보다 전에 대응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신속히 폐지하도록 한다.

제 4 조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는 날 이라도 대응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전항의 규정은 동항(이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효력을 연장한 후 정해진 기간을 경과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별표 1

별표 2

Ⅳ. 이라크에서의 인도적 부흥지원활동 및 안전확보지원 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37호(평성5년(1993년) 8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이라크 특별 사태(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678호, 제687호, 제1,441호 및 이와 관련된 동 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연합회원국으로 이라크에서 발생한 무력행사 및 이것에 관한 일련의 사태를 말한다. 이하 같음)에 있어서 국가의 조속한 재건을 위해 이라크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 민주적인 수단에 의한 통치 조직의 설립 등을 위한 이라크 국민에 의한 자주적인 노력을 지원 및 촉진하려는 국제 사회의 대응에 관해 우리나라가 이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1,483호를 바탕으로 인도적 복구 지원 활동 및 안전 확보 지원 활동을 하고, 이라크의 국가 재건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원칙) ① 정부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인도적 복구 지원 활동 또는 안전 확보 지원 활동(이하 “대응조치”라 한다.)을 적절하고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전조에 규정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우리나라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이라크의 국가의 재건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평화 및 안전 확보에 힘쓴다.

② 대응조치의 실시는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영역 및 실제로 전투행위(국제적 무력분쟁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람을 살상하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동일)가 일어나지 않으며 또한 그곳에서 실시하는 활동기간을 통해 전투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지역에서 실시한다.

1. 외국의 영역(해당 대응조치가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 해당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이라크에 있어서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83호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국제연합 총회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라크에서 행정을 하는 기관의 동의에 따를 수 있다.)
2. 공해(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에서 규정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 제8조 제5항 및 제54조 제1항과 같음) 및 그 상공

④ 내각총리대신은 대응조치의 실시에 있어서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내각을 대표하고 행정각부를 지휘 감독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응조치의 실시에 관해 내각총리대신 및 방위청장관에 협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정의 등) ① 이 법률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각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인도적 복구지원활동** : 이라크 국민에 대해 의료 기타 인도적 지원의 실시 혹은 이라크 재건을 지원하는 것을 국제연합회원국에 요청하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483호 또는 이에 관련된 정령으로 정하는 국제연합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해 인도적 정신에 따라 이라크 특별사태로 피해를 입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이라크 주민과 그 외의 자(이하 “재해민”이라고 함)를 구조하거나 혹은 이라크 특별사태로 인해 생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또는 이라크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안전확보지원활동** : 이라크 국내의 안전 및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공헌하는 것을 국제연합회원국에 대해 요청하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제1,483호 또는 이에 관련된 정령으로 정하는 국제연합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기초해 국제연합 회원국이 실시하는 이라크 국내의 안전 및 안정을 회복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조치를 한다.

3. **관계 행정기관** : 다음에 제시하는 기관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각부 및 내각부설치법(평성11년(1999년) 법률 제89호)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기관 및 국가 행정 조직 법(소화23년(1948년) 법률 제12호) 제3조 제 2항에 규정하는 기관
   나. 내각부설치법 제4조, 제56조 및 국가행정조직법 제8조의 3에서 규정하는 특수한 기관
4. **인도적 복구 관련 국제기관** :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와 그 외 국제연합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설립된 기관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관 또는 우리나라가 체결된 조약 외에 국제적 약속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관으로서 인도적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② 인도적 복구 지원 활동으로서 실시되는 업무는 다음에 제시하는 것(이들 업무에 각각 부대하는 업무를 포함)으로 한다.

1. 의료
2. 재해민의 귀환의 원조, 재해민에 대한 식량, 의료, 의약품 기타 생활 관련 물자의 배포 또는 재해민 수용 시설의 설치
3. 재해민의 생활 혹은 이라크 재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의 복구 또는 정비 또는 이라크 특별사태에 의해 오염 기타 피해를 받은 자연 환경의 복구
4. 행정 업무에 관한 조언 또는 지도
5. 전 각호에 열거한 것 외에 인도적 정신을 바탕으로 재해민을 구호하거나 혹은 이라크 특별 사태로 인해서 생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또는 이라크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운송, 보관(비축을 포함), 통신, 건설, 수리 또는 정비, 보급이나 소독

③ 안전 확보 지원 활동으로서 실시되는 업무는 국제연합 회원국이 실시하는 이라크 국내의 안전 및 안정을 회복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실시하는 의료, 운송, 보관(비축을 포함), 통신, 건설, 수리 또는 정비, 보급이나 소독(이러한 업무에 각각 부대하는 업무를 포함)으로 한다.

제 2 장 대응조치등

제 4 조(기본계획) ① 내각총리대신은 대응조치로 어떤 것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대응조치를 실시하는 것 및 해당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의 방안에 대해 각의의 결정을 요구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 방침
2. 대응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에 게재한 사항
   가. 해당 대응조치에 관한 기본적 사항
   나. 해당 대응조치의 종류 및 내용
   다. 해당 대응조치를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 및 해당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라. 해당 대응조치를 자위대가 외국의 영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응조치를 외국의 영역에서 실시하는 자위대의 부대 등(자위대 법(소화29년(1954년) 법률 제165호) 제8조에서 규정하는 부대 등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규모 및 구성 및 장비 및 파견 기간
   마. 국제연합, 인도적 복구 관계 국제기관 또는 국제연합회원국(제18조에서 "국제연합 등"이라 함.)에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그 업무나 사업에 사용되는 또는 제공하고 있던 물품 이외의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에 관한 중요 사항
   바. 기타 당해 대응조치의 실시에 관한 중요 사항
3. 대응조치의 실시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연락 조정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은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준용한다.

④ 대응조치를 외국의 영역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이라크에 있어서는 제2조 제3항 제1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국제연합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라크에서 행정을 실시하는 기관을 포함)및 인도적 복구 관계 국제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시하는 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제 5 조(국회에의 보고) 내각총리대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있을 때는 그 내용
2.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조치가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제 6 조(국회의 승인) ① 내각총리대신은 기본계획에 규정된 자위대 부대 등이 실시하는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해당 대응조치를 시작한 날(방위청 장관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대응조치의 실시를 자위대의 부대 등에 명했던 날을 말함.)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에 부의하여 해당 대응조치의 실시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 또는 중의원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후 처음 소집되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그 승인을 요구해야 한다.

② 정부는,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불승인의 의결이 있을 때는 신속히 해당 대응조치를 종료시켜야 한다.

제 7 조(본부에 의한 대응조치의 실시) ① 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로 실시되는 업무로서 물품을 제공(다음 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 물품의 제공을 제외)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로 실시되는 업무의 역무의 제공(다음 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을 제외) 한다. 이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이라크 부흥 지원 직원(일반직에 속한 국가 공무원 중 대응조치에 종사하는 내각부 본부(이하 “본부”라고 함.)의 직원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 실시를 명한다.

③ 위 제2항에 정하는 것 이외에 본부에 의한 대응조치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8 조(자위대에 의한 대응조치의 실시) ① 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로 실시되는 업무로서 물품의 제공(자위대에 속하는 물품의 제공에 한한다.)을 하는 것으로 한다.

② 방위청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로 실시되는 업무의 역무의 제공(자위대에 의한 역무의 제공에 한한다.)에 대해 실시 요강을 정하고, 이에 대해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의 부대 등에 그 실시를 명한다.

③ 방위청 장관은 전항의 실시 요강에서 대응조치를 실시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실시 구역”이라 함.)을 지정한다.

④ 방위청 장관은 실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 법률 또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그곳에서 실시되는 활동 중단을 명하여야 한다.

⑤ 대응조치 중 공해와 그 상공 또는 외국의 영역에서의 활동을 지시받은 자위대의 부대 등의 장이나 그 지정을 하는 자는 해당 활동을 실시하는 위치의 근방에서 전투 행위가 예측되는 경우 또는 부근의 상황 등에 따라 전투 행위를 하는 것이 예측될 경우, 해당 활동을 일시 정지하거나 피난 등을 하여 다해 전투행위에 의한 위험을 피하면서 전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기다린다.

⑥ 자위대의 부대 등이 대응조치로 실시하는 업무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 무기(탄약을 포함. 제18조와 동일)의 제공
2. 전투작전 행동을 위해 발진 준비 중인 항공기에 대한 주유 및 정비

⑦ 자위대의 부대 등은 외국의 영역에서 대응조치를 실시하면서 외무대신이 지정하는 재외 공관과 밀접하게 연락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⑧ 외무대신이 지정하는 재외공관장은 외무대신의 명을 받아 자위대에 의한 대응조치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한다.

⑨ 제2항의 규정은 동항의 실시 요강 변경(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 지역을 축소할 변경 내용은 제외한다.)에 대해 준용한다.

제 9 조(고려사항) 내각총리대신과 방위청장관은 대응조치의 실시에 있어서는 그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에 힘쓰는 동시에 이라크 부흥 지원 직원 및 자위대의 부대 등의 안전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이라크 부흥 지원 직원의 채용) ① 내각총리대신은 대응조치에 종사할 직원에 관하여 대응조치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전형에 의해 임기를 정하여 이라크 부흥 지원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 혹은 지방공공단체나 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해 널리 인재 확보에 힘쓴다.

제11조(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의 특례) 행정기관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소화44년(1969년) 법률 제33호)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되는 이라크 부흥 지원 직원의 정원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1조 제1항 및 제2조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2조(관계행정기관의 직원의 파견) ① 내각총리대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능력 등을 가진 직원(국가 공무원 법(소화22년(1947년) 법률 제12호) 제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을 본부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소관 사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동항의 직원에 해당하는 직원을 기간을 정해 본부에 파견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파견된 직원은 종전의 관직을 보유한 채, 동항의 기간을 임기로 이라크 부흥 지원 직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의 관직을 보유한 채 이라크 부흥 지원 직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내각총리대신의 지휘 감독 하에 대응조치에 종사한다.

제13조(국가공무원법의 적용예외)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이라크 부흥 지원 직원에 대해서는 이라크 부흥 지원 직원이 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리기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에서 “영리 기업”이라 함.)의 임원, 고문 혹은 평의원(이하에서 “임원 등”이라 함.)의 전문직, 혹은 스스로 영리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보수를 받고 영리기업 이외의 사업단체의 임원 등의 전문직 혹은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항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이라크 인도적 부흥 지원 수당) ① 우리나라 이외의 영역(공해를 포함)에서 대응조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대응조치가 이뤄지는 지역의 근무 환경 및 대응조치의 특질에 비추어 이라크 인도적 복구 지원 등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이라크 인도적 복구 지원 등 수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정령의 제정 혹은 개・폐시에는 인사원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제15조(국가공무원 재해보상법등의 적용) 이라크 인도적 복구 지원 등 수당이 지급되는 자에 관한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소화 26년(1951년) 법률 제191호) 제4조 제2항 및 방위청직원의급여등에관한법률(소화27년(1952년) 법률 제266호)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이러한 규정 중 '... 및 국제평화 협력수당」이란 '... 국제평화 협력수당 및 이라크 인도적 복구 지원 등 수당」으로 한다.

제16조(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① 내각총리대신과 방위청장관은 대응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방법과 그 외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는 그 소관 사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동항의 협력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무기의 사용) ① 대응조치의 실시를 명받은 자위대 부대 등의 자위관은 자신 또는 자신과 함께 현장에 소재하는 다른 자위대원(자위대법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대원을 말함.), 이라크 부흥 지원 직원 또는 그 직무에 수반하여 자신의 관리 하에 들어온 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제4조 제2항 제2호 2의 규정에 의해 기본계획에 정하는 장비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사용은 해당 현장에 상관이 있을 때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 또는 위난이 하여 그 명령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현장에 있는 상관은 통제를 잃은 무기의 사용은 오히려 생명 혹은 신체에 대한 위험 또는 사태의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당 무기의 사용이 동항 및 다음 조항의 규정에 따라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보하는 견지에서 필요한 명령을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사용 시에는 형법(명치4년(1871년) 법률 제45호) 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제 3 장 잡 칙

제18조(물품의 양도 및 무상 대부) 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본부 또는 자위대에 속한 물품(무기를 제외)에 대해 국제연합 등에서 그 활동에 사용되는 차원에서 해당 물품의 양도 또는 무상 대부를 요구하는 취지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활동의 원활한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소관 사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해당 신청에 관련된 물품을 해당 국제연합 등에 대한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 또는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다.

제19조(민간의 협력 등) ① 내각총리대신과 방위청장관은 앞 장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 대응조치를 충분히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력을 얻어 물품의 양도, 대부 또는 역무의 제공에 대해 국가 이외의 자에게 협력을 구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이 요구된 국가 이외의 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불과 함께 그 자가 해당 협력에 의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에 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한다.

제20조(그 외의 조치) 정부는 앞장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이라크 특별사태에 대해 국가의 조속한 재건을 위해 이라크에서의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 민주적인 수단에 의한 통치 조직의 설립 등을 위한 이라크 국민에 의한 자주적인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도록 힘쓴다.

제21조(정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절차 기타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이 법률의 실효 등)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4년을 경과한 날에 효력을 잃다. 다만, 그 날 이전에 대응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이르렀을 때는 조속히 폐지한다.

제 3 조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4년을 경과하는 날 이후에도 대응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로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날부터 기산하여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제 4 조 전조의 규정은 동조(이 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효력을 연장한 후 그 정한 기간을 경과하려는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 5 조(자위대법의 일부개정) 자위대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중 제33항을 제35항으로, 제19항에서 제32항까지를 두개의 조항씩 내려 변경하고(각각 19항-32항을 21-34항으로 변경한다는 뜻), 제18항의 다음에 다음 두 개의 조항을 추가한다.

19. 내각총리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이라크에서의 인도적 복구 지원 활동 및 안전 확보 지원 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평성15년(2003년) 법률 제137호)이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위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응조치로서 물품의 제공을 실시할 수 있다.
20. 장관은 이라크에서의 인도적 복구 지원 활동 및 안전 확보 지원 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효력을 가지는 동안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위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대 등에 대응조치로 역무의 제공을 할 수 있다.

제 6 조(내각부설치법의 일부개정) 내각부설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 제4항 중 「앞의 3항」을 「앞의 각항」으로 고치고, 동항을 동조 제5항으로, 동조 제3항의 다음에 다음 한 개의 항을 추가한다.

4. 내각부는 제3조 제2항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제4조 제3항 각호 및 앞의 3항에 실린 사무 외에 이라크에서의 인도적 복구 지원 활동 및 안전 확보 지원 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평성15년(2003년) 법률 제137호)이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 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응조치(자위대가 실시하는 것을 제외)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내각총리・총무・법무・외무・재무・문부과학・후생노동・농림수산・경제산업・국토교통・환경대신 서명)

[부록 4 : 독일의 해외파병 의회절차법]

해외파병에 관한 결정시 의회의 관여사항에 관한 법률

(Parlamentsbeteiligungsgesetz)

2005년 3월 제정

제 1 조 기본원칙(Grundsatz)

(1) 본 법률은 독일병력을 해외로 무장투입(Einsatz bewaffnetr deutscher Streitkräfte)할 경우 독일연방의회의 관여(Beteiligung)형식과 범위를 정한 것이다. 그에 관해 기본법 제115a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2) 기본법이 효력을 미치는 지역 외에 독일병력의 투입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제 2 조 개념정의(Begriffsbestimmung)

(1) 독일병력의 무장투입은 독일연방군이 무장집단에 포함(Einbeziehung)되었거나, 무장집단에 포함될 것이 예상되었을 때 제기된다.

(2) 준비조치와 계획은 본 법률에서 의미하는 투입이 아니다. 준비조치와 계획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는 병력의 인도적 지원서비스 및 제공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인도적 지원병력의 무장은 다만 자위목적(Selbstverteidigung)에서만 이뤄지며, 무장집단에 포함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 3 조 제안안(Antrag)

(1) 연방정부는 투입이 시작되기 전(前) 적시에 병력투입을 위한 동의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연방정부의 제안안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만 한다.

- 투입임무(Einsatzauftrag)
- 투입지역(Einsatzgebiet)

- 투입의 법적 근거
- 투입 군인의 수
- 투입되는 병력의 능력(Fähigkeit)
- 계획한 투입기간
- 예상비용 및 재정

(3) 연방의회는 이 제안안에 동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안안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 4 조 동의절차의 간소화

(1) 경미한 강도(Intensität)와 효과(Tragweite)를 주는 투입이 있을 경우 간소화 된 절차에 따라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예상되는 경미한 강도와 효과를 주는 투입의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독일연방정부의 대통령은 교섭단체의 대표, 대외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안안을 전달하고, 이들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대표자 가운데 어느 한명이 수락한 경우 독일연방의회공보로서 독일연방의회 모든 의원들에게 제안안을 배포하는 것이 허용된다. 교섭단체에 공보를 배포한 후 7일 이내, 또는 연방의회 의원 100이상이 5일 이내에 이를 다룰 것(Befassung)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독일연방의회가 제안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면 거기서 결정해야만 한다.

(2) 다만 경미한 강도와 효과에 의한 투입은 투입된 군인의 수가 적고, 여타 제반사항에 기한 투입을 인식가능할 정도의 작은 의미를 갖으며, 전쟁참여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3) 규정상 경미한 강도와 효과를 주는 투입은 다음의 경우에 제안될 수 있다.

- 자위목적의 무장한 정찰대에 관한 사항
- 동맹국 병력내 교환협정에 따라 근무하게 될 개별 군인에 관한 사항
- UN, NATO 또는 EU 또는 UN-임무달성 및 이용을 위한 기타 조직의 투입 범위 내에서 개별 군인에 관한 사항

제 5 조 사후 승인(Nachträgliche Zustimmung)

(1) 투입을 미룰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투입은 연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특별한 위험지역의 인명구조를 위한 투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연방의회의 공식 처리에 의할 경우 구조할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한한다.

(2) 독일연방의회는 투입 시작 전 그리고 투입기간 동안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받아야 한다.

(3) 투입에 관한 동의안은 지체없이 사후 제출되어야 한다(Nachholen). 연방의회가 동의안을 거부한 경우, 투입은 종료되어야 한다.

제 6 조 보고의무(Unterrichtungspflicht)

(1)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게 규칙적으로 투입진행 그리고 투입지역의 변화(Entwicklung)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2) 제4조 1항의 경우(동의절차의 간소화) 연방정부는 관할위원회와 그 대표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투입연장

(1) 제4조에 따른 절차는 또한 내용적 변경이 없는 한 동의결정에 의한 연장시에도 적용된다.

(2) 연방정부가 투입의 연장을 제안한 경우에는, 연방의회공보로서 제안안을 배포한 후 2번의 회의(Sitzungstage)가 진행되었을 때까지 그 투입은 인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의 간소화 절차에 따른 제안안이 제기되면, 제4조 1항 4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기간내에 연방의회가 처리를 요청한다면, 다음 처리를 위한 개회가 있는 주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기간형성에 대한 동 규정 제1문과 2문은 그대로 유지된다.

제 8 조 철회권(Rückholrecht)

연방의회는 무장병력의 투입에 대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 9 조 효력

본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록 5 : 설문조사]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설문조사

ID			

안녕하세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실 ooo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주관으로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사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그 동안에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활동 이외의 국군의 해외파견 활동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서 다국적군 파견 및 국방협력차원의 파견 등에 있어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국회 동의 및 법률상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안) 마련에 참고하기 위하여 공법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향후 관련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2013년 5월 한국법제연구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 131

인구통계사항

선문 1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1) 교수
2) 공공기관 재직
3) 연구원
4) 기타( )

선문 2 박사학위취득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1) 5년 이내
2) 5년에서 10년 사이
3) 10년에서 15년 사이
4) 15년에서 20년 사이
5) 20년 이상

조사 질문

※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군의 해외파견 형태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 하에 국제연합의 재정부담으로 특정 국가(또는 지역)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 이행 지원, 정전감시, 치안 및 안정 유지, 선거지원, 인도적 구호, 복구·재건 및 개발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활동을 말함
- 다국적군 파견활동 :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결의에 근거하여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분쟁해결, 평화정착, 재건지원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 : 상대 국가가 비분쟁지역에 파견 요청을 하는 있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교육훈련,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을 비롯한 국방교류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경우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국적군 파견활동 및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의 경우에는 현재 관련 절차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은 없으며 필요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 파견하고 있음

문 1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국군의 해외파견의 형태로 국제연합평화유지 활동(UN PKO활동),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 개별 파견활동 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 2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UN PKO활동)에 관한 국군의 해외파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 3 다국적군 파견활동,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헌법규정의 해석으로 충분
2) 구체적 국회 동의의 절차 등을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
3) 이 경우 국군의 해외파견은 위헌이므로 법률을 제정할 수 없음

* 참 고

대한민국헌법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 5 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문 4 다국적군 파견활동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2)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
3) 헌법위반이므로 파견 불가능

※ 다국적군 파견활동 사례
-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2009년 3월)
- 아프간 오쉬노부대(2010년 7월)

문 5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2)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
3) 헌법위반이므로 파견 불가능

※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활동 사례
- 아크부대(2011년 1월)

문 6 해외거주 자국민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2)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태에 대응하는 경우에만 가능
3) 헌법위반이므로 파견 불가능

문 7 국회의 동의절차를 포함하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